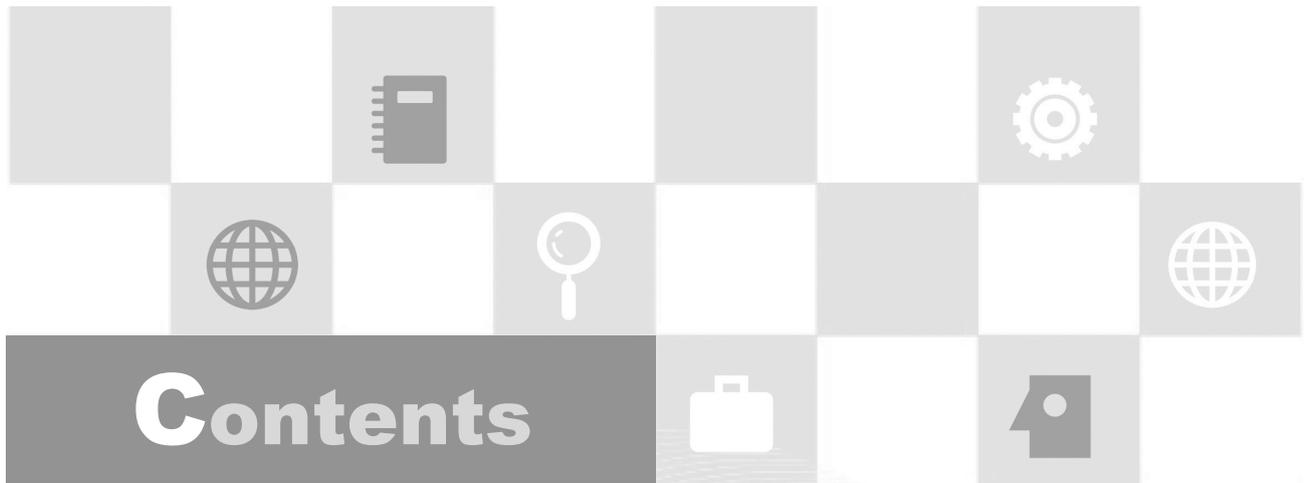


---

#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대학)

---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대학)

✓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대학) ..... 5

[붙임1]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  
세부 산출기준(안) ..... 17

[붙임2] 대학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서식 작성 지침 ..... 63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대학)**



I. 간접비 제도 개요 .....	9
II. 간접비 비율 산출 대상기관 및 산출기준 .....	11
1. 대상기관 .....	11
2. 산출기준 .....	11
III. 향후계획 .....	14
IV. 기    타 .....	15
[붙임1] 2019년도 대학 간접비 비율 세부산출기준(안) .....	17
[붙임2] 대학 국가 R&D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서식 작성 지침 .....	63



## I. 간접비 제도 개요

### ■ 간접비 정의

-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소요되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 간접비 사용용도

- 인력지원비(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력성과급)
- 연구지원비(기관공통지원경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등)
- 성과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 간접비 산출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 추진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2년마다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하여 고시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에 대해서는 2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공동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간접비산출위원회를 통해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및 적용 대상기관 확정

제13조(간접비산출위원회) ①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간접비산출위원회를 둔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간접비 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 ■ 추진경과

- '95. 연구과제중심제도(PBS : Project Based System) 도입 후, 정부출연(연) 중심으로 실소요 간접경비\* 지원제도 운영
  - \* 지원인력인건비, 기관공통지원경비
  - ※ '95년 이전은 총 연구비의 10% 이내 계상, 대학은 '94년부터 연구과제 중앙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간접비와 연계하여 지원
- '01. 출연(연)에 대한 간접경비 계상기준 설정·고시 근거 마련(공동관리규정 개정)
- '05. 간접비 고시 대상기관을 특정(연), 대학 및 비영리법인까지 확대
- '08.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 간접비 연계 근거 마련(공동관리규정 개정)
  - ※ 실태조사 등급별 간접비 비율 일괄적용(A: 20%, B: 15%, C: 10%, D: 5%)
- '12. 간접비 산출주기를 2년으로 연장(공동관리규정 개정)
- '13. 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 및 고시('14~'15년 적용)
- '14. 국가R&D사업의 대학 간접비 제도개선(국과심 운영위, 12월)
  - ※ 실태조사 등급에 따른 일괄적용 방식 → 실소요 원가계산 방식
- '15. 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 및 고시('16~'17년 적용)
- '16. 출연(연) 및 대학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개선(작업반 운영, 1~11월)
- '18. 출연(연) 및 대학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서식 작성 지침 마련(4~8월)

#### 〈 간접비 계상기준 산출 및 고시 절차 〉

추진단계	추진주체	세부 추진사항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마련	간접비산출위원회	■ 간접비 비율 산출 대상기관, 세부 산출기준 확정
간접비산출소위원회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학연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
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TEP)	■ 기관별 간접비 실사율 및 가감률 산출
기관별 간접비 비율 확정	간접비산출위원회	■ 기관별 간접비 실사율 및 가감률 심의
기관별 간접비 비율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확정 및 관보고시

## II. 간접비 비율 산출 대상기관 및 산출기준

### 1 대상기관

#### ■ 대학

- 「2018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 참여한 「고등교육법」 및 개별법령에 따른 대학

※ 2018년도 연구비관리체계평가 미참여 대학 및 간접비 비율 산출결과 5% 이하 대학은 각각 5% 적용

※ 2018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를 신청하였으나 자체평가 점수가 0점인 대학은 간접비 비율 산출 대상에서 제외

- 향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40점 미만은 원가산출 대상에서 제외

### 2 산출기준

#### ■ 대학

- 간접비비율 산출 직전 2개 회계연도 간접비 실지출율을 원가산출식에 따라 실사 (A+B) 후 상한기준을 적용하여 기본 간접비 비율을 산출

$$\diamond \text{ 대학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식} = A + B$$

$$\blacksquare A \text{ (연구지원부문)} = \frac{\text{연구지원부문 인건비} + \text{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 \text{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text{연간연구비}}$$

$$\blacksquare B \text{ (공통지원부문)} = \frac{(\text{공통지원부문 인건비} + \text{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times \text{연구수익비율}}{\text{연간연구비}}$$

※ 대학운영 비용을 ① 연구지원부문(A), ② 교육지원부문, ③ 연구와 교육이 혼합된 공통지원부문(B)으로 구분하고, 이 중 연구와 관련된 간접비 비율 산출

- 연구지원부문(A)

- 연구지원부서의 인건비 및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12.4)」 운영계산서 중 간접비 사업비 항목의 연구관리운영비\* 반영

\* 연구지원비(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등) 및 성과 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학교회계\*의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중 논문게재료, 학술활동지원비 및 연구실안전관리비를 연구진흥경비로 반영

\* 국립대학은 대학회계, 법인전환 국립대학은 법인회계, 사립대학은 교비회계

● 공통지원부문(B)

- 연구와 교육을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서의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산출하여 연구수익 비율\* 적용

\* 연구수익비율 = 연구수익 / (연구수익 + 교육수익)

- 연구수익비율의 연구수익과 교육수익은 결산서 기준으로 산출하되, R&D계수 적용사업은 R&D계수에 따라 각각 반영

● (상한기준)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후 상한 기준 적용

실사율	40%이상	35%이상	30%이상	28%이상	28%미만
적용비율	31%	30%	29%	28%	실사율

■ 가·감률 기준 (공통)

● 기관별 기본 간접비 비율 산출 후, 가감률 기준에 따라 적용

- 「18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등급별 가감률 기준

등급	S	A	B	C	D~E
적용 비율	+2%p	+1%p	0%p	-1%p	-2%p

- '17~'18년 발생한 국가R&D사업 참여제한 기간 및 건수에 따른 감률 기준(최대 -5%p)

참여 제한 기간	적용 기준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가중치	감률	가중치	감률	가중치	감률	가중치	감률	가중치	감률
1년	0.2%	0.5	0.10%p	0.8	0.16%p	1.2	0.24%p	1.5	0.30%p	1.8	0.36%p
2년	0.4%	0.5	0.20%p	0.8	0.32%p	1.2	0.48%p	1.5	0.60%p	1.8	0.72%p
3년	0.6%	0.5	0.30%p	0.8	0.48%p	1.2	0.72%p	1.5	0.90%p	1.8	1.08%p
4년	0.8%	0.5	0.40%p	0.8	0.64%p	1.2	0.96%p	1.5	1.20%p	1.8	1.44%p
5년 이상	1.0%	0.5	0.50%	0.8	0.80%	1.2	1.20%	1.5	1.50%	1.8	1.80%

※ 1년 미만 참여제한은 감률기준에서 제외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NTIS 제재정보(이공계 분야) 기준)

※ 참여제한에 따른 감률이 5% 이상이더라도 최대 5%만 감률 적용

- 간접비 산출시 부당자료 제출로 간접비가 조정되었음이 적발·통보된 경우, 건수에 따른 감률 기준(최대 -3%p)

적발건수	적용기준	가중치	감률
1건	3%p	0.6	1.8%p
2건	3%p	0.7	2.1%p
3건	3%p	0.8	2.4%p
4건	3%p	0.9	2.7%p
5건 이상	3%p	1.0	3.0%p

◇ 최종 간접비 비율 산출식 = [A + B](원가산출) ± C(가감률)

- 간접비 원가산출 후(대학은 상한기준 적용 이후) 가감률 적용

※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 산출은 직전 2개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함에 따라 회계연도별 원가계산하여 산출하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원가산출 간접비 비율을 산출함  
(예시) 2017회계연도 원가산출 비율 34.5%, 2018회계연도 원가산출 비율 35.6%

- 1) 2019년 간접비 최종 원가산출 비율 :  $[(34.5\%+35.6\%)]/2 = 35.05\%$
- 2) 대학 상한기준 적용 : 30%
- 3) 2019년 최종 간접비 고시비율 : 30% ± 가감률

### Ⅲ. 향후 계획

- '19년도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설명회('18.10월~11월)
- '19년도 대학별 간접비 비율 산출자료 제출('18.11월, '19.8월)
  - '17 회계연도 대학별 간접비 비율 산출자료 제출('18.11월)
  - '18 회계연도 대학별 간접비 비율 산출자료 제출('19.8월)
- '19년도 간접비산출소위원회 구성('18.11월)
- 대학 간접비 비율 산출('19.1월~11월)
- '19년도 대학분야 연구기관 간접비 비율 고시('19.12월)

## IV. 기 타

### ■ 간접비 원가산출 관련 제출자료 및 제출기한

#### ● 대학

##### ■ 제출자료

- ① 제출공문 전산파일(PDF)
- ② 대학별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양식 전산파일(Excel)
- ③ 2017, 2018 회계연도 결산서 전산파일(Excel)  
(\* 대학별 회계구분 : 대학회계, 법인회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등)
- ④ 2017, 2018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전산파일(PDF)
- ⑤ 기타 소명자료 및 관련 전산파일(Excel 또는 PDF)

##### ■ 제출기한

- ① 2017 회계년도 간접비 비율 산출 제출자료 : 2018. 11월 30일 (금) 18시까지
- ② 2018 회계년도 간접비 비율 산출 제출자료 : 2019. 8월 30일 (금) 18시까지

###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 (제출방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K2Base시스템에 업로드

※ [www.k2base.re.kr](http://www.k2base.re.kr) 접속 → 우측 상단의 메뉴 '커뮤니티' 클릭 → '간접비산출소위원회' 클릭 → 대학 게시판의 '기관별 폴더'에 자료 업로드

- K2Base 가입 후 기관별 담당자 정보(이름, 연락처, 희망 ID)를 하단 메일로 송부 시 커뮤니티 가입 가능 및 상세 이용 방법 전달 예정

#### ● (문의처) KISTEP 구명희 연구위원, 이은별 연구원 (02-589-2230 / eblee@kistep.re.kr)

[붙임1] 2019년도 대학 간접비 비율 세부산출기준(안)

[붙임2] 대학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서식 작성 지침





---

# 2019년도 대학 간접비 비율 세부산출기준(안)

---



## 1

## 간접비 비율 세부 산출 및 검증기준(안)

1. 대상 : 「2018년도 연구비관리체계평가」 참여 대학
2. 원가산출 기준 : 간접비 산출 직전 2개 회계연도 결산서
  - 2018년 이후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은 직전 2개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간접비 산출
  - 2017회계연도(2017.3.1.~2018.2.28.) 결산서를 기준으로 원가산출 및 2018회계연도(2018.3.1.~2019.2.28.) 결산서를 기준으로 원가산출하여 각각의 회계연도별 결산서를 기초로 산출된 간접비 비율을 단순 산술평균함을 말함
3. 원가산출 방법
  - 대학운영 비용을 1) 연구지원부문(A), 2) 교육지원부문, 3) 연구와 교육이 혼합된 공통지원부문(B)으로 구분하고, 이 중 연구와 관련된 간접비 비율 산출

■ 대학 간접비 비율 원가 산출식 = A + B ■

$$\begin{aligned} \blacksquare A(\text{연구지원부문}) &= \frac{\textcircled{1} \text{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 \textcircled{2} \text{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 \textcircled{3} \text{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textcircled{7} \text{ 연간연구비}} \\ \blacksquare B(\text{공통지원부문}) &= \frac{(\textcircled{4} \text{ 공통지원부문 인건비} + \textcircled{5} \text{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times \textcircled{6} \text{ 연구수익비율}}{\textcircled{7} \text{ 연간연구비}} \end{aligned}$$

- (\*) 학교회계는 대학회계(국공립대학), 교비회계(사립대학) 및 법인회계(법인전환국립대학)로 구분됨
- 기본 간접비 비율은 대학 간접비 비율 원가 산출식에 따라 간접비 비율 산출 후 대학 간접비 원가산출 상한기준 적용
  - 연구비관리체계평가 미 참여 대학, 연구비관리체계평가에 참여한 대학 중 원가계산 미 산출 및 원가계산 결과 실사율 5% 이하 대학은 5% 적용

## 4. 세부산출기준

### ① 연구지원부문 및 공통지원부문의 인건비 기준 (①, ④)

(1) 연구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 및 교육지원부문 해당부서 구분

1) 연구지원부문 해당부서

가. 정의 :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부서\*만을 지원하는 부서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부문만을 전업으로 지원하는 연구지원 전담부서

\* 연구부서 : 산학협력단 사업부서, △△연구소, OO연구센터, XX 연구단

나. 예시부서 : 산학협력단 지원부서,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 지원부서, 대학 부설 연구소 지원부서

다. 분류기준

● 산학협력단 지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산학협력단 자체임용직원\* 및 대학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산학협력단 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조교 등의 기타직원 및 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으로 정산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연구행정지원인력 포함

- 산학협력단 지원부서 담당인력은 최근연도 대학 알리미에 공시된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에 반영된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학알리미 공시인원과 실제 근무 인원과의 차이는 별도 자료 제출

• 산학협력단 지원부서는 산학협력단 연구기획, 연구관리, 산업체연계, 산학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창업보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부서를 말함

• 산학협력단 지원부서 구분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기준으로 분류하여 해당업무 담당자 인건비(산단 운영계산서상 “간접비사업비”로 회계처리 분)만 인정

- 산학협력단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대학 소속직원은 대학 전체 국가R&D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학만 적용되며, 10억원 미만인 대학의 경우 공통지원부문으로 분류

- 산학협력단 소속 대학 파견직원은 파견자의 실제 근무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가 R&D실적이 연간과제수 5건 이상이고 연간 연구비 총액 3억원 이상인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공통지원부문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교육지원부문으로 분류

## 산학협력단 업무 및 인력구성

### 〈산학협력단 지원부서 범위〉

- 연구기획 : 산학협력·연구에 관한 기획, 산학협력·연구의 진흥, 각종 통계 및 성과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
- 연구관리 : 연구비/연구과제 관리, 교원 연구 수행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 산학협력단 내 연구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 산업체연계 : 산학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창업보육 등 산학협력단 내 산업체 연계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자
- 산학연계 : 산업자문(기술자문, 기업컨설팅), 교육운영(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 과정, 현장실습지원 등), 설비자산(연구 및 실험·실습시설·장비)운동을 수행하는 직원
- 기술이전·사업화 : 특허관리(출원, 등록, 유지 관련 행정관리 업무), 기술정보관리, 연구자 상담, 기업상담(지재권 협상·계약 기술마케팅), 기술지주회사 및 학교기업 설립·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학생, 기술지주회사 및 학교기업 소속 직원 제외)
- 창업보육 : 창업보육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 기타 :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산학협력단 직원(국책사업단 또는 지방비사업단 소속의 연구원 및 직원은 제외)

### 〈산학협력단 고용주체별 인력 구분〉

- 겸직교원 : 산학협력단에 겸직으로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산학협력단장, 부서장,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 대학 소속직원 : 대학 총장 명의로 임명된 직원(겸직교원 제외) 중 산학협력단 전담인력으로 발령받은 직원
- 산학협력단 자체임용직원 :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임명되어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는 직원(겸직교원 제외)
- 산학협력단 소속 대학 파견직원 :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임명되어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실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 〈산학협력단 고용형태별 인력 구분〉

- 정규직 : 총장 및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발령을 받은 직원으로 정규직으로 고용된 직원
- 계약직 : 총장 및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발령을 받은 직원으로 계약직으로 고용된 직원
  - 무기계약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지만 임금이나 복지수준은 정규직과 같거나 그보다 못한 수준에 유지되고 있는 직원(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총 근무기간 2년 초과한 자로서 매년 연봉계약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 기간제계약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서 계약 기간이 2년 이하인 직원
- 기타직원 : 산학협력단 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조교 등의 직원

(출처: 교육부 및 대학공시정보센터의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

- 대학 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의 지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부속연구기관별 국가R&D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연구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국가R&D실적은 있으나 연간 연구비 총액이 1억원 미만의 대학 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의 지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공통지원부문 분류
  - 국가R&D실적이 없는 대학 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의 지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교육지원부문으로 분류
- ※ 대학 부설 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 해당 대학의 유무 확인은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상 「13-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자료 이용
- (\*) 대학알리미 '대학별검색' 중 목록보기 '교육여건\_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자료 이용하며, 대학알리미에 공시되지 않은 연구소는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의 범위에서 제외

#### 라. 국가R&D실적 판단

- 국가R&D실적 판단기준은 연구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 및 교육지원부문 해당부서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해당 대학의 실제 국가R&D 수행 규모와는 상이함
  - 국가R&D실적은 과학기술분야 및 사회인문분야 등을 포함한 정부수탁사업의 연구과제 수 및 연구비 총액이며, 최근연도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연구비수혜실적(중앙정부 연구과제수 및 연구비)\* 활용을 원칙으로 함
  - (\*) 대학알리미 연구비수혜실적은 중앙정부, 교내연구비,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민간, 외국 및 대응자금 연구비로 구분됨
- 대학 전체,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지원인력에 대한 공통지원부문 해당여부
  - 교원의 소속기준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최근연도 대학알리미 공시 연구비수혜실적을 이용하여 판단
- 대학 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 지원부서 연구지원부문 해당여부는 대학 자체 통계기준 분류에 따른 연구비수혜실적을 별도로 확인하여 판단
  - 교원의 소속기준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최근연도 대학알리미 공시 연구비수혜실적 원시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학 자체적으로 부속연구기관별로 재분류하며, 교원의 부속 연구기관 중복등록도 가능

**국가R&D실적 판단기준 참고사항**

- 최근연도 대학알리미 공시 연구비수혜실적은 원가산출대상 당해연도에 공시된 자료로, 대학 알리미에 공시된 연구비수혜실적과 원가산출대상 연간 연구비와 차이가 발생함에 유의
  - 대학알리미 연구비수혜실적 : 학과별 전임교원의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 산출
  - 간접비 원가산출기간 : 직전연도 3월 1일부터 당해연도 2월말까지 결산서 기준 산출
- 대학 전체,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지원인력 국가R&D 실적
  - 최근연도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만을 이용하여 연구과제수 및 연간 연구비 총액 조건을 판단
  -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이외 별도의 대학 자체 통계기준으로 재 산출된 자료를 근거로 국가 R&D 실적 판단은 불허(예를 들어 연구책임자가 전임교원이외인 경우에는 국가R&D실적 판단 대상에서 제외됨)
- 대학 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 국가R&D실적
  - 최근연도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연구비수혜실적 원시데이터를 기초로 부속연구기관별로 재 분류된 대학 자체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함
  -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교원의 소속 학과 및 부속연구기관 겸직으로 인한 중복 집계 가능)
  - 연구협약서 상 부속연구기관이 명시된 경우 명시 기준으로 산출
  - 연구과제 전산 입력시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정보에 과제실적 귀속연구소를 선택하는 등 대학 자체기준 통계기준을 이용하여 실적 집계 가능
- 국책사업단 또는 지방비사업단 소속 직원의 경우 부속연구기관의 직원으로 인정
  - 국책사업단 또는 지방비사업단 :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R&D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기간 설치·운영되는 사업단
- 대학알리미 연구비 수혜실적은 교내/ 교외(중앙정부/ 지자체/ 외국/ 민간)로 구분
  - 교내 : 대학자체(교내)에서 지원한 연구비
  - 중앙정부 : 중앙정부(지자체 제외) 및 각 부처 산하 기관에서 지원한 연구비
  -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기관에서 지원한 연구비
  - 외국 : 외국정부, 민간 관계없이 외국에서 지원한 연구비
  - 민간 : 정부 이외의 민간 사업체, 연구소 등에서 지원한 연구비

마.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활용

- 국가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최근연도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활용하며, 간접비 산출기간의 공시자료 이용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시기(자료기준일)
항목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가. 연구비 수혜 실적	8월(직전 1.1~12.31)
	12-자-2.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 현황	6월(당해연도 4.1)
항목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8월(당해연도 4.1)

-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는 연구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 및 교육지원부문 해당부서 구분을 위한 판단기준으로만 활용

■ (적용 사례 예시) 2019년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적용 ■

- 1) 2017년도 연구비 수혜실적의 자료기준일은 2017.1.1. ~ 2017.12.31.이며, 대학알리미에는 2018년 8월 중 공시  
2018년도 연구비 수혜실적의 자료기준일은 2018.1.1. ~ 2018.12.31.이며, 대학알리미에는 2019년 8월 중 공시
  - 2) 2017년도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과 대학 부설연구소 현황은 2018.4.1.을 자료 기준일로 하며, 대학알리미에는 2018년 6월과 8월 중 공시  
2018년도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과 대학 부설연구소 현황은 2019.4.1.을 자료 기준일로 하며, 대학알리미에는 2019년 6월과 8월 중 공시
- (적용기준) 한국연구재단 조사시스템(KRI)을 통해 기 제출된 공시 전 대학 자체 공시자료 데이터를 기초로 2019년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적용하며, 자료 검증시에는 공시된 2018 및 2019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활용

2) 공통지원부문 해당부서

가. 정의 : 교육부서 및 연구부서를 함께 지원하는 공통지원부서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부문과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육부문을 동시에 지원하는 공통지원부서

나. 예시부서

-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로써 회계팀, 구매팀, 시설팀, 중앙도서관, 중앙전산원, 중앙기기센터
- 국가R&D 과제와 관련하여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실

다. 분류기준

- 대학 전체 국가R&D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대학의 산학협력단 전담 인력으로 발령받은 대학 소속직원(겸직교원 제외)
- 대학 전체 국가R&D실적이 없으나 민간R&D실적 등이 있는 대학의 대학 파견 산학협력단 전담인력도 공통지원부서로 분류

- 국가R&D실적을 보유한 대학 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 중 국가R&D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이 1억원 미만인 지원부서 인력
    - 국가R&D실적이 없는 대학 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 지원부서 인력은 교육지원부서로 분류
  - 대학 전체 국가R&D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학의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 인력
    - 대학 전체 국가R&D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대학의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 행정지원인력은 교육지원부서로 분류
    -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와 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업무 기준으로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 여부 판단
  - 국가R&D실적 연구과제수가 5건 이상이고 연간 연구비 총액이 3억원 이상인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행정지원인력(조교 포함), 산학협력단 소속 대학 파견직원
    - 국가R&D실적 연구과제수 혹은 연간 연구비 총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지원부서로 분류
    - 교양과목 교육을 위한 학부대학 행정지원인력은 전체를 교육지원부서로 분류
- ※ 의과대학 소속 XX교실은 최근연도 대학 알리미 공시자료 상 교원소속기준으로 분류된 의과대학으로 합산 공시된 연구비수혜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분화된 자료로 구분하여 분류할 필요 없음

###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 참고사항

####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 담당업무〉

- 회계팀 : 대학의 수입 및 지출 등을 관리
- 구매팀 : 대학의 각종 물품계약 및 구매, 검수, 집행 등을 관리
- 시설팀 : 대학의 시설 유지보수 등을 관리(관재업무 포함)
- 중앙도서관 : 대학의 도서관 업무를 수행
- 중앙전산원 : 대학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관리
- 중앙기기센터 : 대학의 연구기기 등 취득·운용(기계공작실 포함)

#### 〈참고사항〉

-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는 해당부서 인원의 별도 업무분장을 확인할 필요는 없으나, 명백히 교육지원만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면 동 직원 인건비는 제외
-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별 업무
  - 교무, 인사, 기획, 예산, 홍보, 학사운영, 학생지원, 입학, 총무, 국제교류, 평가 등 업무
  - 총무업무는 교직원 인사, 교육, 후생복지, 노동단체, 각종 행사에 관한 업무로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에서 제외
  - 시설관리업무는 대학회계에서 용역비로 지출됨에 따라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에서 제외

### 3) 교육지원부문 해당부서

- (정의) 연구지원부문 및 공통지원부문 해당부서로 인정되는 부서 이외의 부서

#### 국가R&D실적 판단 사례

##### (사례)

○○대학은 교학 행정팀 직원들이 산학협력단 업무를 겸직하며 연구기획, 계약, 관리, 집행, 결산을 수행하고 있으며

- 지원인력 인건비는 대학 교비 재원으로만 지급
- 산학협력단 업무 겸직에 따른 수당 및 성과급 등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미지급
-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상 간접비 재원으로 지출된 공통지원인력 인건비 없음
- 산학협력단 자체임용직원은 없음

##### (원가산출 적용)

○○대학은 특수성으로 인해 산학협력단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다면

- 해당 대학소속 직원(겸직인원)의 인건비는 대학 전체의 해당연도 국가R&D실적 연간 연구비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해당 대학소속 직원(겸직인원)의 인건비는 대학 전체의 해당연도 국가R&D실적 연간 연구비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단과대학 및 대학원별 국가R&D 실적 연구과제수가 5건 이상이고 연간 연구비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지원인력을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하나,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육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산학협력단장은 통상 겸직교수가 담당하므로 교원인건비에 해당되어 불인정

## (2) 인건비 산출 기준

### 1) 간접비 산출대상 지원인력인건비

가. 인정범위 : 결산서상 인건비로 회계처리한 금액 인정

- 국공립대학은 대학회계 재정운영표상 직원인건비, 일용임금, 퇴직급여, 법정 고용부담금 및 교육·연구·학생지도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금액 중 공무원 신분이 아닌 대학회계직원(계약직원 포함)에 대한 인건비
  - 국공립대학 구성원은 대학 소속 공무원(공무원인 교수, 공무원직원, 공무원조교), 대학 회계직원(공무원신분이 아닌 조교 포함) 및 기타 계약직원(임시직 포함)으로 분류
  - 국립대학회계·재정법에 따라 대학 소속 공무원(공무원인 교수 제외), 대학회계직원 및 기타계약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도 인건비로 분류

- 국립대학법인은 법인회계 운영계산서상 직원인건비로 회계처리한 인건비
- 사립대학은 교비회계 운영계산서상 조교인건비 및 직원보수로 회계처리한 인건비
  - 교비회계 운영계산서상 교원보수로 분류되는 단과대학 소속 학과, 학부, 의과대학 소속 XX교실 등에서 근무하는 조교 인건비는 인건비 분류기준에 포함
- 산학협력단은 운영계산서상 간접비사업비 중 인력지원비(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로 회계처리한 인건비
  -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에서 간접비사업비 중 기관공통지원경비 및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인건비(퇴직급여 및 법률에 의해 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관련 부담금인 4대보험 해당액 포함)는 인건비 분류기준에서 제외

나. 공통 불인정범위

- 연구과제 참여인력 인건비는 간접비 원가산출대상에서 제외
  - 산학협력단 지원인력 중 결산서상 사업단(ACE사업단 등) 혹은 창업보육센터 직접비로 회계처리된 인건비
  -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의 퇴직급여 및 4대보험 기관부담분 직접비 미계상분을 간접비 재원으로 지급한 경우
  - 연구과제 참여 대학원생 등에게 지급한 장학금
  - 교원(전업강사, 비전업강사,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포함) 인건비
  - 산학협력단 간접비 재원으로 지출한 연구전임교원 및 리서치펠로우에 대한 인건비
- 기타 인건비 중 간접비 원가산출대상에서 제외
  - 산학협력단에 파견된 대학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보직수당 및 겸직수당
  - 학교기업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 연구지원 또는 공통지원부문 해당부서 인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금 또는 명예퇴직수당
  -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회계 직원에 대한 퇴직금 부족액을 회계연도말 집행한 인건비

### 인건비 인정범위 판단 참고사항

- 대학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에서 연구지원부문 인건비와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인정
- 교수, 원어민강사 등 직접비 성격의 인건비는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대상에서 제외하며, 산학협력단장 등 교원에 대한 보직수당 및 직책수당도 제외
- 산학협력단 인력지원비에서 국책사업 준비 T/F팀의 교수 및 학생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직접비에 해당됨에 따라 공통지원부문 혹은 연구지원부문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음
- 국립대학 대학회계에서 지출된 지원인력 인건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대학회계직원 및 기타 계약지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지원부서 분류기준 판단(수입대체경비 또는 국가및지자체지원금 재원 구분 불필요)
- 사립대학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지원인력 인건비는 해당 지원부서의 연구지원부문 및 공통지원부문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판단(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 재원 구분 불필요)
- 회계연도 중 부서이동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무기간별로 집계하되, 결산일 기준으로 업무 담당자별 인건비를 산출하는 경우에도 허용

## 2) 간접비 산출대상 기타비용

### 가. 연구개발능력성과급

- 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력성과급으로 대학 자체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 경우 인건비로 인정
    -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분류(지원인력 인건비이므로 국가R&D 간접비수익 재원 구분 없음)
    - 국가R&D(중앙정부 연구과제) 간접비수익 재원으로 연구자(교원)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분류
- \*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국가R&D(중앙정부 연구과제)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민간수탁과제 간접비 재원은 해당되지 않음

### 나. 산학협력보상금

- 지식재산권비용 중 산학협력보상금은 대학 자체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 알리미에 공시된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에 반영된 지원부서 인원에게 지급시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분류
  - 단, 연구자(교원)에게 지급한 산학협력보상금은 제외

### (3) 인건비 확인방법

#### 가. 해당부서 구분 확인

- 연구지원부문 및 공통지원부문 해당여부 검토를 위해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에 따라 작성된 연구비 수혜실적 자료 및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 자료 제출 확인
  - 대학 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 지원부서 인건비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 자체 통계기준에 따른 연구비수혜실적을 각 연구과제명과 연간 연구비 내역을 별도 제출 확인
  - 대학 전체,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실 지원부서는 대학 알리미에 공시된 연구비 수혜 실적 자료로 판단(대학알리미 공시된 연구과제명과 연간 연구비내역이 포함된 연구비수혜실적 전산자료 제출)

#### 나. 인건비 산출 확인

- 인건비 산출 확인 관련 공통사항
  - 교육지원부문에 대한 상세내역 제출 생략 가능
  - 인건비 금액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경리팀의 확인증 등)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검증담당자의 검증 확인절차로 같음하며 별도 자료 미제출
- 인건비 산출 확인을 위한 결산서 활용방안
  - 국공립대학은 대학회계 재정운영표 상 관·항·목 분류에 따른 인건비 등과 부서별 연구지원부문, 교육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을 구분한 금액간의 검증 확인(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및 관련 서류 확인
  - 사립대학은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상 관·항·목 분류에 따른 직원보수 등과 부서별 연구지원부문, 교육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을 구분한 금액간의 검증 확인(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및 관련 서류 확인
  - 산학협력단 회계의 인건비는 운영계산서상 간접비사업비 중 인력지원비(인건비 항목)와 차이 발생 시 소명자료 확인
    - 간접비사업비 중 인력지원비와 차이 발생 시 반드시 소명 필요

### 회계별 인건비 분류

#### 국립대학 재정운영표 상 인건비

- 직원인건비: 공무원직원, 공무원조교, 대학회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일용임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퇴직급여: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시 발생하는 비용
- 법정고용부담금: 법률에 의해 대학이 부담하여야 할 고용관련 부담금(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국립대학회계·재정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교직원(공무원인 교수 제외)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비용)

#### 사립대학 재정운영표 상 인건비

- 조교인건비: 유급조교(장학조교는 제외)에게 지급하는 급여·상여금·각종 수당·법정부담금 및 퇴직금
- 직원보수: 직원급여(직원의 정액 급여), 직원상여금, 직원각종수당(정액수당·정근수당·식대보조비 등 직원의 각종 수당), 직원법정부담금(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등), 임시직인건비(임시직 직원의 급여·상여 및 각종 수당), 노임(일용 인부의 노임), 직원퇴직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외의 퇴직금)

####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간접비사업비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인건비: 간접비 재원으로 지급되는 지원인력급여, 지원인력상여금, 지원인력제수당(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지원인력법정부담금(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부담금), 지원인력퇴직급여(퇴직금 지급액 또는 퇴직적립금(퇴직연금)), 일용임금
-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력성과급(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 10% 범위 내에서 계상)

## ②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 (1)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②

- 산학협력단 회계 운영계산서 상 간접비사업비 중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 지원비를 결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불인정항목을 제외하고 연구관리운영비로 인정
  - 연구지원비 : 1) 기관 공통지원경비, 2)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3) 연구실안전관리비, 4) 연구보안관리비, 5) 연구윤리활동비, 6) 대학연구활동지원금, 7) 대학 기반 시설 및 장비 운영비
  - 성과활용지원비 : 8) 과학문화활동비, 9)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산학협력단 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지원 관련 집행비용(학교행사지원, 학생활동지원 등) 및 학교기업에서 발생하는 관리운영비는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불인정항목에 해당되며,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회계처리금액 중 공통 불인정항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공통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산학협력단 연구관리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교육활동 관련 집행비용(학교행사지원, 학생활동지원 등)</li> <li>- 학교기업에서 발생하는 관리운영비</li> <li>- 간접비 재원으로 지출한 연구대응자금 및 교내 연구보조비</li> <li>- 장려금 혹은 인센티브 집행액(신임교수 정착금/장려금, 장/단기 국내외 연수, 동아리 혹은 그룹 연구지원금, 저술활동장려금, 장려금성 혹은 정액지급 논문게재료, 공모과 제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지원금)</li> <li>- 업무추진비 및 경조사비 성격의 비용 집행액</li> <li>- 지원인력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성 경비(법정부담금 등)</li> <li>- 연구직접비 해당 비용 (연구과제와 관련 있는 전문가 자문수수료 및 세미나 강사료는 불인정대상이나, 기관 또는 사업단의 운영을 위한 공통 위원회 및 공통 세미나 관련 수수료는 인정대상임)</li> <li>- 배상금, 위약금, 변상금 등</li> <li>- 대학소속 교·직원 보직 및 검직수당</li> <li>- 산학협력단에서 학교회계로 대가성 없이 지원한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액(대학 자원관리 시스템 대학 부담금 불인정)</li> </ul>

1) 기관 공통지원경비

- (정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자산화된 금액 포함)

2)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정의)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자산화된 금액 포함)
  - 기관공통지원경비 상세내역과 동일한 세목으로 구성되며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어 구분 경리

## 기관공통 지원경비 및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참고사항

- 하기 사례는 예시적 사례이며, 기관공통 지원경비 및 사업단/연구단 운영비로 집행될 수는 있으나 세부 집행내역이 불인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

### I. 기관공통 지원경비 및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항목

1. 산학협력진흥비: 국제협력비, 교육훈련비, 홍보비, 행사비 등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진흥에 소요되는 경비
2. 일반수용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산학협력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3. 공공요금및제세: 전기료, 도시가스료, 상·하수도료,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과 각종 제세 비용
4. 시설장비유지비: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연구시설장비유지비, 공통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지급임차료)
5. 기타운영비: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중 상기에서 열거되지 않은 모든 비용(자원인력 복리증진비용, 여비교통비, 지급보험료, 용역비)

### II. 공공요금 인정기준

1. 산학협력단과 연구소 등 연구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요금 중 전기료, 도시가스료, 상·하수도료, 열 에너지료에 대하여 대학에서 선 집행 혹은 총괄집행하고 공공요금 보전목적으로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으로 부담비용을 청구할 것
2. 산학협력단 예산(간접비 사업비 중 기관공통지원경비 또는 대학연구활동지원경비)에 반영하고 동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할 것
3. 공공요금은 월별 또는 분기별 집행일 것
  - 월별 집행 혹은 분기별 집행은 전년도 원가배분자료를 근거로 개산하며, 최종월 정산을 실시해야 함
  - 대학은 공공요금 산출내역을 포함한 청구문서를 산학협력단에 발송하여야 함
4. 공공요금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회계처리 할 것
  - ㉠ 개별 건물별로 사용량이 계량 가능하여, 대학에 총괄 청구된 금액을 청구기준으로 건물별로 배분
  - ㉡ 대학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육부장관에 보고한 자료(\*)를 활용하여 ㉠에서 건물별로 배분한 금액을 해당 건물의 연구시설비율로 배분

(\*)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 재정정보 집계·검증·분석 및 공시에 의거 '대학 교육시설 교육용 기본재산 보유 현황(교지·교사 확보율)' 자료를 활용함

〈대학재정정보시스템상 대학 교육용 건물 현황 자료 요약〉

구분	고유 번호	건물명	건축 면적	연 면적	교사 면적	교육기본 시설	지원 시설	연구 시설	부속 시설	기타시설
가동										
나동										
다동										

- ㉔ ㉔에서 배분한 금액을 대학의 총괄납부주기에 맞추어 산학협력단에서 비용 집행
- ㉕ 대학에서는 ㉔의 금액을 대학에서 기 집행(또는 집행예정)인 비용항목에서 차감

〈공공요금 배분 사례〉

구분	대학재정정보시스템 활용			한전 청구		자체측정		배분금액	
	연면적(㎡) (A)	연구시설(㎡) (B)	연구시설 비율 (C=A/B)	전기 사용량 (kwh)(D)	청구요금 (E)	전기사용량 (kwh)(F)	전기사용 비율 (G=F/D)	건물별 배분요금 (H=E*G)	연구활동 배분금액 (I=C*H)
가동	10,000	0	0.0%	179,000	20,000,000	45,000	25.1%	5,027,933	-
나동	20,000	5,000	25.0%			134,000	74.9%	14,972,067	3,743,017

III. 공공요금 불인정기준

- ① 비용배분을 건물별 연구면적비율을 사용하지 않고 캠퍼스 전체 면적비율을 사용하는 경우
- ② 배분된 비용을 학교에 총괄납부주기와 연계하지 않고 반기, 기말 등 일괄 정산하는 경우
- ③ 산학협력단에서 비용처리한 금액을 대학회계에서는 산학협력단전입금 등으로 수입처리하는 경우

※ (경과규정) 상기 공공요금 인정기준 및 불인정기준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이용한 간접비 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함

3) 연구실 안전관리비

- (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자산화된 금액 포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및 건강검진
  -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 연구활동 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 (산출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금액 중 산학협력단 회계 운영계산서 상 간접비사업비 계상 금액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예시

- 보험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상내용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보험료
- 교육·훈련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비용,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비용(정기, 신규채용, 연구내용 변경시), 연구실 안전수칙·교육교재·안전관련 도서·학술지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의 구입·제작 비용 및 그 홍보·전파 등의 비용, 연구실 안전 관련 행사비 및 포상비
- 건강검진비: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비: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비용(다만,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시설공사 및 개조비용 등은 제외), 연구실안전환경을 위한 시설·설비의 재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 보호장비 구입비: 연구실험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의 각종 개인 보호구 및 각종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구급의약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보호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개인용 작업복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검사비: 안전점검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점검측정장비 구입 비용,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진단측정장비구입 비용
-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 지적사항(점검·진단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및 개선대책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 연구실 안전교육과 관련된 안전전문가 초빙 시 소요되는 강사료와 전문가 활용 및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 및 분석 비용
- 수수료: 실험실 지정폐기물 및 실험실 폐수 처리에 따른 연구실 안전을 위한 제반 수수료 및 그에 따른 소요 비용
- 여비 및 회의비: 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와 연구실 책임자 등이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출장 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 설비 안전검사비: 위험기계·기구 및 실험설비의 안전검사 비용
-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분석 비용 및 사고조사에 필요한 출장비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비용: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따른 전문가 활용 등 소요비용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일반적 성격의 안전관리비 제외 -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시설공사 및 개조비용 제외

4) 연구보안관리비

- (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자산화된 금액 포함)
  - 실무적용: 보안장비 구입비, 보안교육관련 비용, 연구노트 작성과 관련된 제 비용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일반 보안업체 비용 제외

5) 연구윤리활동비

- (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 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일반적 성격 비용 제외

6)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정의)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 실험실 운영 지원비: 직접비에서 해소하기 힘든 실험실 운영을 위한 경비지원(시약, 재료비, 수용비 및 수수료)
  - 학술대회 지원비: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국외 여비 포함), 패널·사회자 등 활용비, 학술대회 개최경비, 학술지 발간경비
  - 논문게재료: 논문교정료, 저서출판비, 논문별 인쇄본 구입비

###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세목 예시

- 연구용 도서구입비: 전자정보(Web-DB, e-Journal, e-book) 구입비, 학술정보용 도서 구입비,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 중앙도서관에서 구입한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 구입비용도 산학협력단 예산에 반영되어 지출되고 산학협력단 회계상 간접비사업비로 회계처리된 금액은 인정항목에 포함
- 실험실 운영지원비: 시약·재료 구입비, 연구장비 사용료, 전산처리 관련 재료 및 전산 소모품

### 학술활동 지원비 예시 사례

- 외빈 초청여비: 연구 및 학술활동 관련 외빈 초청에 따른 여비
- 학술대회비용: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제경비(인건비, 전문가활용비, 강사·연사료, 식대, 식음료비, 간식비 포함),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제경비, 학술행사를 위한 외국인 초청 제경비
- 학술지 발간경비: 공고 및 홍보비, 원고료, 심사료, 편집자 인건비, 학술지 발행 관련 비용(인쇄비, 전자출판 및 시스템구축비, 배송비 등)
- 논문게재 관련비용: 논문게재료, 외국어논문 교열비용
- 기타: 학회회비(종신회비 제외), 학술도서 저술 및 출판관련 비용(수당, 지원금 성격의 인건비 제외), 기타 학술활동에 필요한 비용  
 ※ 상기 학술활동 지원비는 산학협력단 예산에 반영되어 지출되고 산학협력단 회계상 간접비사업비로 회계처리된 금액은 전액 인정되며, 학교회계 예산에 반영되어 지출된 금액은 학술대회비용(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지원비, 참가 제경비) 및 논문게재 관련 비용만 제한적으로 인정됨에 유의

###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실험실 운영 지원비 중 인건비, 보험료, 업무추진비 등 경상지출 - 자체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하는 학술활동지원비 ※ 정액 지급대상 중 정액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 후 지급한 학술활동 지원비는 인정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학회 연회비)

### 7)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 (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및 장비 유지 보수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 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운영비는 시설 및 장비의 수선비용 등 순수 운영에 따른 비용에 한해 인정

###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직접비 성격에 해당하는 비용 ※ 장비구입비, 시제품 제작경비 등 직접비 성격의 비용은 불인정

8) 과학문화활동비

- (정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 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특정인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집행된 홍보물품 집행액

9)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정의) 해당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자산화된 금액 포함)
  -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기술창업 출연 출자금

(2)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③)

- 학교회계(국공립대학은 대학회계, 사립대학은 교비회계)에서 연구진흥경비로 지출된 논문게재료, 학술활동지원비, 연구실안전관리비에 한하여 아래 기술된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학교회계에서 지출된 대학연구활동지원금은 제외

1) 논문게재료

- (정의) 논문교정(번역 및 교열 포함), 저서출판, 논문별 인쇄본 구입 실경비 지급액
  - 실경비 발생 적격증빙을 갖추었으나 해당 대학 자체규정에 따라 정액 한도 내에서 정산절차 수행 후 지급하는 논문게재료 포함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논문게재료	-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논문 게재건수에 따라 교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성격의 정액 논문게재료 - 학위과정 논문 지도비

2) 학술활동지원비

● (정의)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지원비,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발표(사회자, 좌장, 토론자 포함)를 위한 참가 실경비 지급액

- 학술대회 개최 지원비는 해당 대학의 학과 및 연구기관이 주관이 되어 해당 대학 교내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대한 지원금으로 실경비만 인정
- 학술대회 관련 국외출장여비는 해당 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 논문토론자, 좌장을 목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지급한 실경비만 인정하고, 단순 연수목적의 국외 출장여비는 불인정
  - ※ 국제저명학술지(A&HCI, SSCI, SCI(E), SCOPUS급)를 보유한 학회 및 기관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국제학술대회 경우에는 사회자, 조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위원자격 참가의 경우에도 국외 출장여비로 인정
- 학술대회 관련 국내출장여비는 학술대회 참여 목적 구분 없이 지급한 실경비를 인정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학술활동 지원비	- 해당 대학 자체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하는 학술활동지원비 ※ 정액 지급대상 중 정액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 후 지급한 학술활동 지원비는 인정 - 연구자(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회의·세미나 참가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시 단순 연수목적의 국외 출장여비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학회 연회비) - 소규모 세미나 및 전문가 초청 강연 개최 지원비

3) 연구실안전관리비

● (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자산화된 금액 포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및 건강검진
-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연구활동 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 (산출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금액 중 대학회계 혹은 교비회계 예산에서 지출한 금액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일반적 성격의 안전관리비 제외 -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시설공사 및 개조비용 제외

(3)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확인방법

-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는 계정과목, 지출일자, 지출금액 및 적요(사용목적 등 기재) 등이 포함된 상세 집행내역 전산(excel형식)파일 제출 확인

3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5)

(1) 정의 및 산출방법

- (정의) 연구와 교육을 공통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회계\*에서 지출되는 관리운영비
  - \* 국립대학은 대학회계, 사립대학은 교비회계, 법인전환국립대학은 법인회계를 말함
- (산출방법) 결산서에 학교운영비 혹은 관리운영비 계정과목으로 반영된 비용 중 불인정항목을 제외한 금액

(2) 국립대학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 (인정범위) 「국립대학회계 결산 기본지침」 별표 제2호 서식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명세표 상 학교운영비 등에서 아래의 불인정항목을 제외한 금액
  - 적용대상: 대학 전체 국가R&D 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 10억원 이상
  - 대학 전체 국가R&D 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비용 성격이 강한 관리운영비(공공요금 및 각종세금, 수선유지비)만 인정
  - 학교회계(대학회계 혹은 법인회계) 학교운영비 또는 관리운영비 중에서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로 보아 연구지원부문 원가 산출에 반영된 금액은 불인정

항목구분	인정항목	불인정항목
행정관리 운영비	<인건비> - 복리후생비 항목(퇴직급여는 제외하며 기타복리후생비만 인정) <학교운영비> - 일반수용비 항목 - 공공요금 및 각종세금 항목 - 교육훈련비 및 행사비 항목 - 기타 학교운영비 항목	<학교운영비> - 급량비 항목 - 재료비 항목 - 연구용역비 및 개발비 항목 - 이자비용 항목 <법인회계 추가항목> - 운영비 항목 전체, 일반관리비 항목 중 기타 일반관리비
시설관리 운영비	<학교운영비> - 수선유지비 항목 - 용역비 항목	<법인회계 추가항목> - 시설관리비 항목 중 기타 시설관리비

● 법인전환 국립대학과 중앙행정기관이 전액 정부출연으로 설립한 특수목적 사립대학은 사립대학 공통지원 관리운영비 인정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를 참고하여 인정항목을 산출하되 국가 및 지자체지원금과 수입대체경비 재원은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에서 제외함

● 국립대학 대학회계에서 지출되는 학교운영비 중 세출예산 재원이 수입대체경비 혹은 국가 및 지자체지원금인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

\* 학교운영비 중 수입대체경비 혹은 국가 및 지자체지원금 재원을 구분하는 방법은 재정운영표상 학교운영비에서 세입세출결산서상 사업별 구분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집행액과 국가 및 지자체지원금 집행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계산

(3) 사립대학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 (인정범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상 관리·운영비로 분류되는 행정관리운영비 및 시설관리운영비 중에서 아래의 불인정항목을 제외한 금액

- 적용대상: 대학 전체 국가R&D 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 10억원 이상
- 대학 전체 국가R&D 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비용 성격이 강한 관리운영비(난방비, 전기·수도료, 통신비, 건축물관리비, 장비관리비)만 인정
- 학교회계(교비회계) 관리운영비 중에서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로 보아 연구지원부문 원가 산출에 반영된 금액은 불인정

항목구분	인정항목	불인정항목
행정관리 운영비	-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인쇄·출판비, 난방비, 전기·수도료, 통신비, 각종세금·공과금, 지급수수료 -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일반용역비	- 차량유지비 - 업무추진비, 홍보비, 회의비, 행사비, 선교비, 기타운영비
시설관리 운영비	- 건축물관리비, 장비관리비, 시설용역비, 보험료, 리스·임차료	- 조경관리비, 박물관관리비, 기타시설 관리비

- 사립대학 교비회계에서 지출되는 관리운영비 중 전입금 및 수입대체경비 재원인 비등록금 회계 관리운영비는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에서 제외하되, 비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가 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사립대학에 한해 비등록회계 관리운영비를 공통지원 부문 관리운영비로 의제가능

(4)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확인방법

- 국립대학의 대학회계는 국가 및 지자체지원금 및 수입대체경비가 별도로 구분 기재된 세출결산서(관, 항, 목 구분) 및 「국립대학회계 결산 기본지침」에 따른 재정운영표 계정 과목(관, 항, 목 반드시 구분)을 기준으로 인정항목의 금액 확인
- 사립대학의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를 구분 기재한 운영계산서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인정항목의 금액 확인
-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항목 분류는 결산서상 분류기준에 의함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검증방법**

- 국립대학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국립대학회계 결산 기본지침」에 따른 재정 운영표 계정과목 명세서(관, 항, 목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출재원별 구분에 따라 구분 후 국가및지자체지원금 및 수입대체경비 재원은 우선적으로 차감 후 잔여 금액에 대해 계정 과목별로는 불인정항목만을 차감하는 형식임
- 사립대학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운영계산서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불인정항목만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함
-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검증과 같이 세부상세내역서(지출일, 계정과목, 적요 등)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는 재정운영표 및 운영계산서상 결산금액을 입력한 후 불인정항목을 조정하여 원가산출대상 확정하는 방식으로 입력

#### 4 연구수익비율 (⑥)

##### (1) 정의

- (정의) 연구수익비율은 연구수익과 교육수익의 합계에서 연구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 연구수익 :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연구활동과 관련된 수익
  - 교육수익 :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수익

$$\text{※ 연구수익비율} = \frac{\text{연구수익}}{\text{(연구수익 + 교육수익)}}$$

##### (2) 국(공)립대학 연구수익비율

###### ● 교육수익

- (정의) 대학회계\* 재정운영표 및 산학협력단회계 운영계산서상 교육활동과 관련된 수익의 총계

\* 일반국립대학은 대학회계, 법인전환 국립대학은 법인회계를 의미(이하 동일)

- (인정항목) 「국립대학회계 결산 기본지침」 별표 제2호 서식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명세표상 교육활동수익(입학금수익, 수업료수익, 계절학기수강료수익)\*,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별표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상 산학협력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지원금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 및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중에서 평생교육기관 등의 수업료는 교육수익에 포함하지 않음

- (불인정항목) 대학회계 재정운영표 상 교육활동수익이 재원인 교내장학금\*, 교육부대 수익(수수료 등)은 교육수익 산출시 제외

\* 교내장학금 산출 시 근로장학금은 차감하되, 차감할 근로장학금 금액을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장학금 수혜 현황' 중 교내-근로장학금 금액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금액 산출도 허용

###### ● 연구수익

- (정의) 대학회계 재정운영표 및 산학협력단회계 운영계산서 상 연구활동과 관련된 수익의 총계
- (인정항목)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산학협력수익 중 연구수익, 지원금수익 중 연구수익,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연구수익 및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연구수익
- (불인정항목) 기타 산학협력수익과 기타 지원금수익은 연구수익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으로 불인정

※ 산학협력단 결산서상 계정과목별 연구수익 및 교육수익 사업별 상세내역은 전산파일 확인(별지 제2-2호 서식 참조)

(3) 사립대학 연구수익비율

● 교육수익

- (정의) 대학(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결산서의 운영계산서 상 교육활동과 관련된 수익의 총계
- (인정항목)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상 등록금수입(입학금, 수업료)\*,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별표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상 산학협력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지원금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 및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 수강료수입 중에서 비등록금회계에서 발생하는 단기수강료는 교육수익에 포함하지 않음

- (불인정항목) 대학회계 운영계산서 상 등록금회계가 재원인 교내장학금\*, 교육부대수익(수수료 등)은 교육수익 산출시 제외

\* 교내장학금 산출 시 근로장학금은 차감하되, 차감할 근로장학금 금액을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장학금 수혜 현황' 중 교내-근로장학금 금액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금액 산출도 허용

● 연구수익

- (정의) 대학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결산서의 운영계산서상 연구활동과 관련된 수익의 총계
- (인정항목) 대학회계의 연구기부금 수입 및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상 산학협력수익 중 연구수익, 지원금수익 중 연구수익,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연구수익 및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연구수익
- (불인정항목) 기타 산학협력수익과 기타 지원금수익은 연구수익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으로 불인정

※ 산학협력단 결산서상 계정과목별 연구수익 및 교육수익 사업별 상세내역은 전산파일 확인(별지 제2-2호 서식 참조)

**대학의 교육활동수익 구분**

**국공립대학의 교육활동수익**

- 입학금수익: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대학의 학부과정, 대학원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
- 수업료수익: 대학의 정규교과과정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업료 명목으로 수취하는 금액과 감면장학금을 포함한 금액(총액인식)
- 계절학기수강료수익: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학생으로부터 수취한 수강료 금액
- 평생교육기관 등의 수업료: 평생교육기관등의수업료수익(평생교육원 등에서 개설한 강좌 또는 과정에 등록한 수강생으로부터 교육용역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한 수업료 금액), 최고경영자과정등의수업료수익(비학위과정인 최고경영자과정 등에 등록한 수강생으로부터 수취한 수업료 및 기타납입금액)

**사립대학의 교육활동수익**

- 등록금수입(입학금): 대학/대학원 신입생(편입생 포함)으로부터 받는 입학금
- 등록금수입(수업료): 대학생/대학원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계절학기 수업료 포함)
- 단기수강료: 특별강좌·평생교육강좌개설 등의 단기교육수강료(계절학기 수업료 제외)

(4) R&D계수 적용사업의 연구수익 및 교육수익 계상기준(국·사립대학 공통)

- (R&D계수 적용사업 예시) BK21플러스사업(0.5),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0.5),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사업(ACE)(0.5),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0.5), 지방대학육성사업(0.5),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0.25)

※ 괄호는 사업별 R&D계수이나 간접비수익이 전혀 없는 대상 사업의 경우 0%로 적용됨

- R&D계수 적용사업이란 사업특성상 연구사업과 교육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으로써 기획재정부 예산분류 R&D계수를 활용하여 R&D계수를 적용한 연구사업과 비R&D계수를 적용한 교육사업으로 구분 반영
- 단, R&D계수 적용사업 중 간접비수익이 전혀 없는 대상 사업은 교육수익으로 분류하며, 상기 예시된 사업 이외의 인력양성사업(HRD)는 교육수익 분류

- (연구/교육수익 산정) 사업별 R&D계수에 따라 연구수익과 교육수익에 각각 반영

- 대학별 교육수익 또는 연구수익에 반영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을 교육수익 또는 연구수익에서 제외하고 R&D 계수에 따라 재분배

※ (예시) R&D계수가 0.5인 사업은 총 연구비 중 연구수익 50%, 교육수익 50%로 각각 반영하고, 0.25인 사업은 연구수익 25% 반영

- 대학회계 재정운영표 또는 운영계산서에 반영된 R&D계수 적용사업 관련 수익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을 R&D계수에 따라 교육수익 및 연구수익에 재분배함
- 산학협력단회계 운영계산서에서 연구수익 또는 교육운영수익 외의 수익 계정과목(예: 기타산학협력수익 등)에 반영된 R&D계수 적용사업 관련 수익이 있는 경우 R&D계수에 따라 교육수익 및 연구수익에 재분배함

■ (적용 사례 예시)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 (R&D계수 0.5) ■

- 1) 전체금액을 연구수익에 계상했을 경우  
교육수익 해당액(100%×50%)을 연구수익에서 제외하고 교육수익에 포함
- 2) 전체금액을 교육수익에 계상했을 경우  
연구수익 해당액(100%×50%)을 교육수익에서 제외하고 연구수익에 포함
- 3) 연구수익(40%)과 교육수익(60%)에 동시 계상했을 경우
  - 연구수익에서 교육수익 해당액(20%=40%×50%)을 제외하고 교육수익에 포함
  - 교육수익에서 연구수익 해당액(30%=60%×50%)을 제외하고 연구수익에 포함
- 4) 전체금액을 대학회계 운영계산서 반영 혹은 산학협력단회계 운영계산서에서 연구수익 또는 교육운영수익 외의 수익 계정과목(예: 기타산학협력수익 등)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연구수익에서 연구수익 해당액(100%×50%)을 연구수익에 포함
  - 교육수익에서 교육수익 해당액(100%×50%)을 교육수익에 포함

## 5] 연간연구비 (7)

### (1) 연간연구비 산정기준

- (정의) 산학협력단의 운영계산서상의 연구수익과 대응되는 비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상 연구개발용역 성격의 금액
- (인정항목) 대학회계의 연구기부금 수입 및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상 산학협력비 중 산학협력연구비,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
  - 산학협력연구비 또는 지원금사업 연구비 비목에서 연구장비·재료비 등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연구장비 자산화 금액을 연간연구비에 포함
  - R&D계수 적용사업 비목에서 연구장비·재료비 등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R&D계수에 따라 연구수익으로 분배되는 금액을 연간연구비에 포함
  - 연간연구비는 개별 대학이 지출한 연간 연구비 총액 기입(간접비사업비 제외)

### (2) R&D계수 적용사업의 연간연구비 계상기준

- R&D계수에 따라 연구수익에 포함되는 R&D계수 적용사업의 경우 연간 연구비에 반영
  - R&D계수 적용사업이 연간연구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R&D계수에 따라 연간연구비에서 차감 반영
  - R&D계수 적용사업이 연간연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R&D계수에 따라 연간 연구비에 반영

※ (예시) R&D계수가 0.5인 R&D계수 적용사업은 총 사업비의 50%, 0.25인 R&D계수 적용사업은 총 사업비의 25%를 각각 연간연구비에 반영

#### R&D계수 적용사업 연간연구비 적용방법

- 연간연구비 산출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R&D계수 적용사업도 간접사업비를 제외한 직접비만으로 R&D계수에 따라 재분배하여야 하나 검증절차 간소화 및 실무편의를 위해 간편 적용 허용
- 간편 적용방법: 연간연구비의 가산항목은 교육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 해당액을, 차감항목은 연구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 해당액을 기재
- 해당 대학에서 관련 R&D계수 적용사업 관련 직접연구비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적용 가능

## 5. 조정기준

※ 간접비 비율 조정절차

- 대학별 간접비 원가산출 후 간접비 비율을 조정하여 최종 비율 확정
- (① 상한기준 적용 ⇒ ②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적용 ⇒ ③ 참여제한 적용⇒ ④ 부당자료 제출 적용)

### 1) 간접비 원가산출 결과 대학별 실사율에 상한기준 적용

실사율	40%이상	35%이상	30%이상	28%이상	28%미만
적용비율	31%	30%	29%	28%	실사율

### 2) 2018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등급별 가감률 반영

등급	S	A	B	C	D ~ E
비율	+2%p	+1%p	0%p	-1%p	-2%p

### 3) '17~'18년 발생한 국가R&D사업 참여제한 기간 및 건수에 따라 감률 적용(최대 -5%p)

참여 제한 기간	적용 기준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가중치	감률	가중치	감률	가중치	감률	가중치	감률	가중치	감률
1년	0.2%	0.5	0.10%p	0.8	0.16%p	1.2	0.24%p	1.5	0.30%p	1.8	0.36%p
2년	0.4%	0.5	0.20%p	0.8	0.32%p	1.2	0.48%p	1.5	0.60%p	1.8	0.72%p
3년	0.6%	0.5	0.30%p	0.8	0.48%p	1.2	0.72%p	1.5	0.90%p	1.8	1.08%p
4년	0.8%	0.5	0.40%p	0.8	0.64%p	1.2	0.96%p	1.5	1.20%p	1.8	1.44%p
5년 이상	1.0%	0.5	0.50%	0.8	0.80%	1.2	1.20%	1.5	1.50%	1.8	1.80%

※ 1년 미만 참여제한은 감률기준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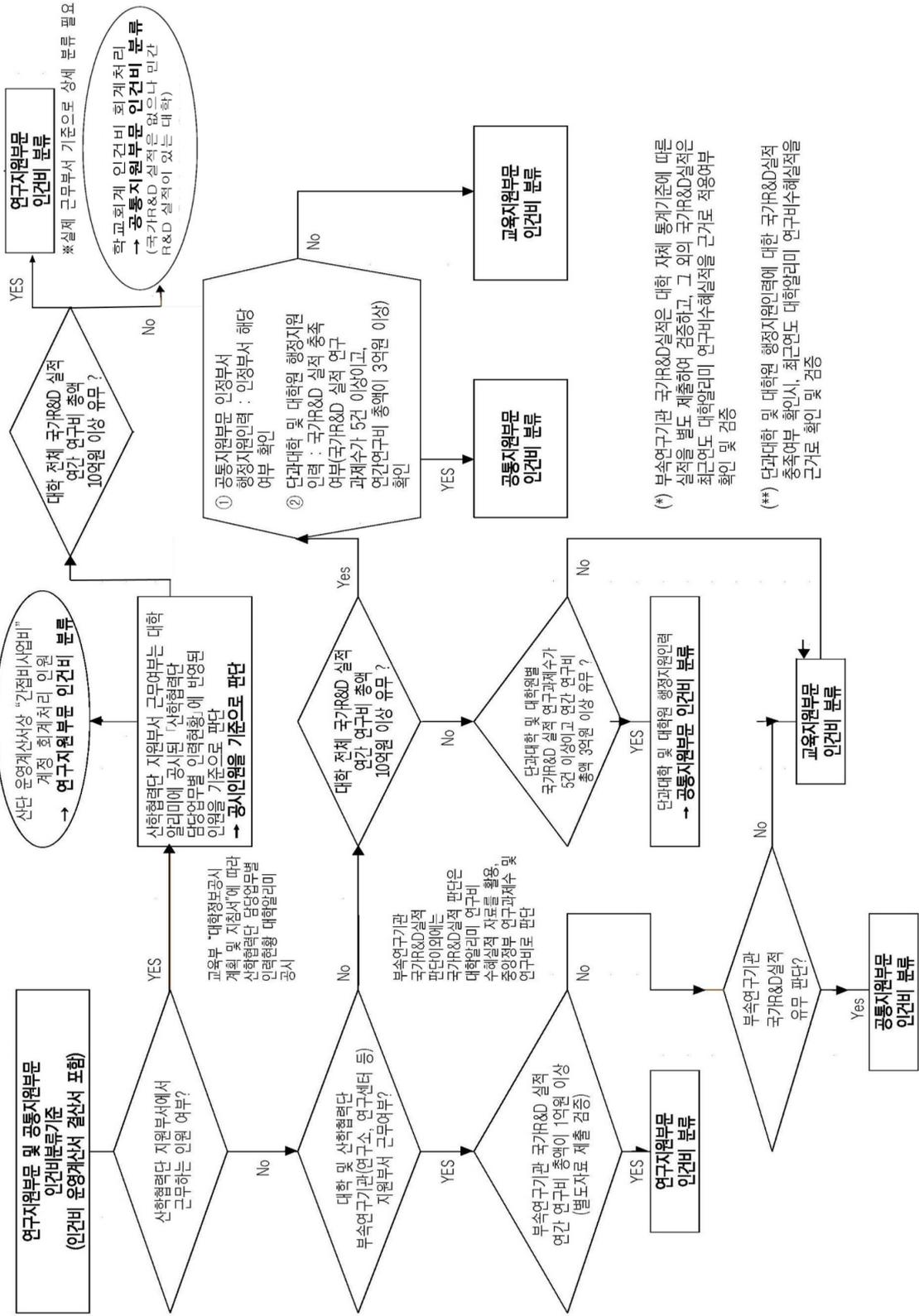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NTIS 제재정보(이공계 분야) 기준)

※ 참여제한에 따른 기관 전체의 감률 합계가 5% 이상이더라도 최대 5%만 적용

### 4) 간접비 산출시 부당자료 제출로 간접비가 조정되었음이 적발·통보될 경우 건수에 따른 감률 적용(최대 -3%p)

적발건수	적용기준	가중치	감률
1건	3%p	0.6	1.8%p
2건	3%p	0.7	2.1%p
3건	3%p	0.8	2.4%p
4건	3%p	0.9	2.7%p
5건 이상	3%p	1.0	3.0%p

별첨. 인건비 분류기준 순서도



(\*) 부속연구기관 국가R&D 실적은 대학 자체 통계기준에 따른 실적은 별도 제출하여 검증하고, 그 외의 국가R&D 실적은 최연연도 대학알림지 연구비수혜실적을 근거로 적용여부 확인 및 검증

(\*\*)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지원인력에 대한 국가R&D 실적 총족여부 확인시, 최연연도 대학알림지 연구비수혜실적을 근거로 확인 및 검증

별지 제1호 서식

### 201X년도 국립대학(법인전환 포함)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양식(○차 제출)

○ 대학명 :

1-1 간접비 및 간접비 실사율

(금액단위 : 원, 비율: %)

구분	I		II		III	IV	V
	연구지원부문 간접비		공통지원부문 (연구·교육) 간접비		⑤연구 수익비율	⑥연간 연구비	간접비 실사율  ⑦= [[①+②)/⑥]+ [(③+④)×⑤/⑥]
	①연구 지원부문 인건비	②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③공통 지원부문 인건비	④공통 지원부문 관리 운영비			
산출액 (비율)							

(\*) 이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1-2 연구지원부문 인건비(①)

(단위 : 원)

구분		학교 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계	비고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급여				
	법정부담금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 인식분 포함)				
	연구개발능력성과급				
계					

1-3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학교(대학/법인)회계 연구진흥경비(②)

(단위 : 원)

항목구분	계정과목명	결산서 금액(a)	조정 금액(b)	조정후 금액(a-b)	비고(*)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대학연구활동지원금				
	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가산)연구관리운영비 자산화금액				
	소계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학교회계 집행 논문게재료				
	학교회계 집행 학술활동지원비				
	학교회계 집행 연구실안전관리비				
소계					
계					

(\*) 상세내역 전산(excel형식)파일로 별도 제출

1-4 공통지원부문 인건비(③)

(단위 : 원)

구분		학교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계	비고
공통지원부문 인건비	급여				
	법정부담금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 인식분 포함)				
	연구개발능력성과급				
	계				

1-5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④)

(단위 : 원)

구분 (학교회계 재정운영표)	학교회계(대학회계, 법인회계)			구분 (학교회계 재정운영표)	학교회계(대학회계, 법인회계)		
	재정운영표 결산서 금액(A)	조정 금액(B)	조정후 금액 (A-B)		재정운영표 결산서 금액(A)	조정 금액(B)	조정후 금액 (A-B)
I. 학교회계 행정관리운영비				II. 학교회계 시설관리운영비			
일반수용비				수선유지비			
공공요금 및 각종세금				용역비			
교육훈련비 및 행사비				소계(2)			
기타학교운영비							
복리후생비							
소계(1)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계(1+2)							

(\*) 법인회계 적용 국립대학은 사립대학 양식을 준용하여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산출

1-6 연구수익비율의 계산 기준(⑤)

(단위 : 원)

연구수익(A)	교육수익(B)	계(C=A+B)	연구수익비율(%) (D=A/C)

1-7 연간연구비(⑥)

(단위 : 원)

구분	계정과목명	연구비 금액	비고
산학협력단 회계	산학협력비 중 산학협력연구비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		
	가산)산학협력연구비 및 연구비 중 연구장비 자산화금액		
	가산)교육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1-2-1 참조
	차감)연구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1-2-1 참조
	가산)기타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1-2-1 참조
	소계		
학교회계	연구기부금		
연간연구비 계			

(\*) R&D계수 적용사업 : BK21플러스사업,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 지방대학육성사업,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별지 제1-1호 서식

### 인건비 산출내역(○차 제출)

- 작 성 일 : 201X년 월 일
- 작 성 자 : (인)
- 확 인 자 : (인)
- 소속기관 : (직인)

#### 1-1-1 학교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상세구분	부서	국가 R&D 실적 판단	급여	법정부담금	퇴직급여	연구개발능력 성과급 등	인건비 계
연구 지원 부문	대학소속 산학협력단 전담인력	연구기획팀						
		연구관리팀						
		소 계						
	대학 부속연구 기관 (연구소 등)	○○연구소						
		○○연구센터						
		소 계						
학교회계 연구지원부문 합계								
공통 지원 부문	대학소속 산학협력단 전담인력	연구기획팀						
		연구관리팀						
		소 계						
	대학 부속연구 기관 (연구소 등)	○○연구소						
		○○연구센터						
			소 계					
	공통지원 인정부서	회계팀						
		구매팀						
		소 계						
	단대 및 대학원 등 행정지원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소 계								
학교회계 공통지원부문 합계								
교육지원부문	교육지원부서							
합 계								

※ 참고

- 국가R&D실적 판단은 대학 알리미 공시자료 등 활용하여 연구과제수 및 연구비 총액 기재(예, 5건/3.5억)
- 부서명은 소속 부서의 최소단위(과, 팀 등)까지 구분하고 반드시 기재하며, 교육지원부문은 일괄기재 가능
- 대학 알리미 공시자료 상세내역 전산(excel형식)파일 별도 제출

1-1-2 산학협력단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상세구분	부서	국가 R&D실적 판단	급여	법정부담금	퇴직급여	연구개발 능력 성과급 등	인건비 계
연구 지원 부문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	연구기획팀	/					
		연구관리팀	/					
		연구행정전담인력	/					
		소 계						
산학협력단 부속연구 기관 (연구소 등)	○○연구소							
	○○연구센터							
	소 계							
산단회계	연구지원부문 합계							
공통 지원 부문	산학협력단 소속 대학 파견직원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소 계						
	산학협력단 부속연구 기관 (연구소 등)	○○연구소						
○○연구센터								
소 계								
산단회계	공통지원부문 합계							
교육지원부문	교육지원부서							
합 계								

※ 참고

- 국가R&D실적 판단은 대학 알리미 공시자료 등 활용하여 연구과제수 및 연구비 총액 기재(예, 5건/3.5억)
- 부서명은 소속 부서의 최소단위(과, 팀 등)까지 구분하고 반드시 기재하며, 교육지원부문은 일괄기재 가능

1-1-3 재정운영표 및 운영계산서와의 검증

(단위 : 원)

회계구분	관구분	항·목 구분	연구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	교육지원부문	계	비고
대학 회계	인적비용	직원인건비					
		일용임금					
		퇴직급여					
		법정고용부담금					
	교육·연구·학생지도비용						
	대학회계 합계						
산학 협력단 회계	간접비사업 인력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력 성과급					
		산학협력단회계 합계					

※ 계정과목 구분은 국립대학별 재정운영표상 관·항·목 분류기준에 따름

1-1-4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

(단위 : 명)

소속구분	연구기획	연구관리	산학연계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보육	기타	합계
대학소속 직원							
산단자체 직원							

※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구분은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에 따름

별지 제1-2호 서식

### 연구수익비율 산출내역(○차 제출)

- 작성일 : 201X년 월 일
- 작성자 : (인)
- 확인자 : (인)
- 소속기관 : (직인)

#### 1-2-1 연구수익 산출내역

(단위 : 원)

회계구분	계정과목	연구수익 금액	비고
학교회계 (대학/법인회계)	연구기부금 수입		
	학교회계 연구수익 계		
산학협력단 회계	산학협력수익 중 연구수익		
	지원금수익 중 연구수익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연구수익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연구수익		
	가산) 교육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하단1-2-3 ②㉔ 상세내역 참조
	차감) 연구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하단1-2-3 ①㉔ 상세내역 참조
	가산) 기타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하단1-2-3 ③㉔ 상세내역 참조
	산학협력단회계 연구수익 계		
	연구수익 합계		

#### 1-2-2 교육수익 산출내역

(단위 : 원)

회계구분	계정과목	교육수익 금액	비고
학교회계 (대학/법인회계)	입학금수익		
	수업료수익		
	계절학기수강료수익		
	차감) 교내장학금		근로장학금 제외
	학교회계 교육수익 계		
산학협력단 회계	산학협력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지원금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가산) 연구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하단1-2-3 ①㉔ 상세내역 참조
	차감) 교육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하단1-2-3 ②㉔ 상세내역 참조
	가산) 기타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하단1-2-3 ③㉔ 상세내역 참조
	산학협력단회계 교육수익 계		
	교육수익 합계		

1-2-3 R&D계수 적용사업 분류 세부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R&D계수 적용사업	㉠연구/교육 수익금액	㉢R&D 계수	㉡연구 수익금액 (㉠*㉢)	㉣교육 수익금액 (㉠*(1-㉢))	
①연구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BK21플러스사업	.	50%	.	.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	.	50%	.	.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	0%	.	.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	.	0%	.	.	
	지방대학육성사업	.	0%	.	.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	25%	.	.	
	소 계					
②교육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BK21플러스사업	.	50%	.	.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	.	50%	.	.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	0%	.	.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	.	0%	.	.	
	지방대학육성사업	.	0%	.	.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	25%	.	.	
	소 계					
③학교회계 혹은 기타산학협력수 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BK21플러스사업	.	50%	.	.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	.	50%	.	.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	0%	.	.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	.	0%	.	.	
	지방대학육성사업	.	0%	.	.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	25%	.	.	
	소 계					

1-2-4 연구수익 세부산출내역(결산서상 계정과목별 연구수익 상세내역 기재)

(1) 산학협력 연구수익 및 교육운영수익 명세

(단위 : 원)

회계계정과목	교부처	내역	수익금액	당기현금수령액	비고
합 계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별지 제4호의1서식]에 따른 산학협력 연구 및 교육운영수익 명세서 기재

(2) 지원금 수익 명세

(단위 : 원)

회계계정과목	교부처	내역	수익금액	당기현금수령액	비고
합 계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지원금수익 명세서 기재

(3) 간접비 수익 명세

(단위 : 원)

회계계정과목	교부처	내역	수익금액	비고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합 계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간접비수익 명세서 기재

별지 제1-3호 서식

###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산출내역(○차 제출)

- 작성일 : 201X년 월 일
- 작성자 : (인)
- 확인자 : (인)
- 소속기관 : (직인)

#### 1-3-1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재계산

(단위 : 원)

학교회계 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 결산금액 (a)	차감금액		조정 전 결산금액 (d=a-b-c)	불인정대상 조정금액 (e)	조정후 금액 (f=d-e)
		세입세출 결산서 수입대체 경비(b)	세입세출 결산서 국가/지자체 지원금(c)			
<b>I. 학교회계 행정관리운영비</b>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각종세금						
교육훈련비및행사비						
기타학교운영비						
복리후생비						
<b>II. 학교회계 시설관리운영비</b>						
수선유지비						
용역비						
합 계						

※ 학교운영비 중 수입대체경비 혹은 국가및지자체지원금 재원을 구분하는 방법은 재정운영표 결산금액에서 세입세출결산서 상 사업별 구분에 따른 집행잔액 중 수입대체경비 혹은 국가및지자체지원금 집행잔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계산  
- 별지 제1호 서식 1-5.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4) 조정금액은 차감금액과 불인정대상조정금액의 합으로 구성

#### 1-3-2 세입세출결산서와 재정운영표 검증

(단위 : 원)

학교회계 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 결산금액 (a)	사업구분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 결산금액				차이금액 (f=e-a)
		수입대체 경비(b)	국가/지자체 지원금(c)	학사활동 사업비(d)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금액 (e=b+c+d)	
<b>I. 학교회계 행정관리운영비</b>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각종세금						
교육훈련비및행사비						
기타학교운영비(*)						
복리후생비						
<b>II. 학교회계 시설관리운영비</b>						
수선유지비						
용역비						
합 계						

※ 재정운영표 결산금액과 세입세출결산서 결산금액간의 차이금액은 별도 자료를 통해 소명  
(\*) 사업구분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 상 기타학교운영비의 상세 비목별 구분내역은 별도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 201X년도 사립대학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양식(○차 제출)

○ 대학명 :

### 2-1 간접비 및 간접비 실사율

(금액단위 : 원, 비율: %)

구분	I		II		III	IV	V
	연구지원부문 간접비		공통지원부문 (연구·교육) 간접비		⑤연구 수익비율	⑥연간 연구비	간접비 실사율
	①연구 지원부문 인건비	②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③공통 지원부문 인건비	④공통 지원부문 관리운영비			⑦= [(①+②)/⑥]+ [(③+④)×⑤/⑥]
산출액 (비율)							

(\*) 이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 2-2 연구지원부문 인건비(①)

(단위 : 원)

구분		학교 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계	비고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급여				
	법정부담금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 인식분 포함)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계				

### 2-3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학교(교비)회계 연구진흥경비(②)

(단위 : 원)

항목구분	계정과목명	결산서 금액(a)	조정 금액(b)	조정후 금액(a-b)	비고(*)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대학연구활동지원금				
	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가산)연구관리운영비 자산화금액				
	소계				
학교(교비)회계 연구진흥경비	학교(교비)회계 집행 논문게재료				
	학교(교비)회계 집행 학술활동지원비				
	학교(교비)회계 집행 연구실안전관리비				
	소계				
합 계					

(\*) 상세내역 전산(excel형식)파일로 별도 제출

2-4 공통지원부문 인건비(③)

(단위 : 원)

구분		학교 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계	비고
공통지원부문 인건비	급여				
	법정부담금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 인식분 포함)				
	연구개발능력성과급				
	계				

2-5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④)

(단위 : 원)

구분 (학교회계 운영계산서)	학교(교비)회계			구분 (학교회계 운영계산서)	학교(교비)회계		
	운영계산서 결산서 금액(A)	조정 금액(B)	조정후 금액 (A-B)		운영계산서 결산서 금액(A)	조정 금액(B)	조정후 금액 (A-B)
I. 학교(교비)회계 행정관리운영비				II. 학교(교비)회계 시설관리운영비			
여비교통비				건축물관리비			
소모품비				장비관리비			
인쇄·출판비				시설용역비			
난방비				보험료			
전기·수도료				리스·임차료			
통신비							
각종세금·공과금				소계(2)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일반용역비							
소계(1)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계(1+2)							

2-6 연구수익비율의 계산 기준(⑤)

(단위 : 원)

연구수익(A)	교육수익(B)	계(C=A+B)	연구수익비율(%) (D=A/C)

2-7 연간연구비(⑥)

(단위 : 원)

구분	계정과목명	연구비 금액	비고
산학협력단 회계	산학협력비 중 산학협력연구비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		
	가산)산학협력연구비 및 연구비 중 연구장비 자산화금액		
	가산)교육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2-2-1 참조
	차감)연구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2-2-1 참조
	가산)기타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2-2-1 참조
	소계		
학교회계	연구기부금		
연간연구비 계			

(\*) R&D계수 적용사업 : BK21플러스사업,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 지방대학육성사업,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별지 제2-1호 서식

### 인건비 산출내역(○차 제출)

- 작성일 : 201X년 월 일
- 작성자 : (인)
- 확인자 : (인)
- 소속기관 : (직인)

#### 2-1-1 학교(교비)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상세구분	부서	국가 R&D실적 판단	급여	법정부담금	퇴직급여	연구개발 능력 성과급 등	인건비 계
연구 지원 부문	대학소속 산학협력단 전담인력	연구기획팀						
		연구관리팀						
		소 계						
	대학 부속연구 기관 (연구소 등)	○○연구소						
		○○연구센터						
		소 계						
학교회계 연구지원부문 합계								
공통 지원 부문	대학소속 산학협력단 전담인력	연구기획팀						
		연구관리팀						
		소 계						
	대학 부속연구 기관 (연구소 등)	○○연구소						
		○○연구센터						
		소 계						
	공통지원 인정부서	회계팀						
		구매팀						
		소 계						
	단대 및 대학원 등 행정지원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소 계								
학교회계 공통지원부문 합계								
교육지원부문	교육지원부서							
합계								

※ 참고

- 국가R&D실적 판단은 대학 알리미 공시자료 등 활용하여 연구과제수 및 연구비 총액 기재(예, 5건/3.5억)
- 부서명은 소속 부서의 최소단위(과, 팀 등)까지 구분하고 반드시 기재하며, 교육지원부문은 일괄기재 가능
- 대학 알리미 공시자료 상세내역 전산파일(excel) 별도 제출

2-1-2 산학협력단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상세구분	부서	국가 R&D실적 판단	급여	법정부담금	퇴직급여	연구개발 능력 성과급 등	인건비 계
연구 지원 부문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	연구기획팀	/					
		연구관리팀	/					
		연구행정전담인력	/					
		소 계						
	산학협력단 부속연구 기관 (연구소 등)	○○연구소						
	○○연구센터							
	소 계							
산단회계 연구지원부문 합계								
공통 지원 부문	산학협력단 소속 대학 파견직원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소 계						
	산학협력단 부속연구 기관 (연구소 등)	○○연구소						
		○○연구센터						
	소 계							
산단회계 공통지원부문 합계								
교육지원부문	교육지원부서	/						
합 계								

※ 참고

- 국가R&D실적 판단은 대학 알리미 공시자료 등 활용하여 연구과제수 및 연구비 총액 기재(예, 5건/3.5억)
- 부서명은 소속 부서의 최소단위(과, 팀 등)까지 구분하고 반드시 기재하며, 교육지원부문은 일괄기재 가능

2-1-3 운영계산서와의 검증

(단위 : 원)

회계구분	관·항 구분	목 구분	연구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	교육지원부문	계	비고
학교 (교비) 회계	직원보수	직원급여					
		직원상여금					
		직원제수당					
		직원법정부담금					
		임시직인건비					
		노임					
	직원퇴직금						
	조교인건비						
학교(교비)회계 합계							
산학 협력단 회계	간접비사업 인력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력 성과급					
산학협력단회계 합계							

※ 계정과목 구분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준용

2-1-4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

(단위 : 명)

소속구분	연구기획	연구관리	산학연계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보육	기타	합계
대학소속 직원							
산단자체 직원							

※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구분은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에 따름

별지 제2-2호 서식

### 연구수익비율 산출내역(○차 제출)

- 작성 일 : 201X년 월 일
- 작성 자 : (인)
- 확 인 자 : (인)
- 소속기관 : (직인)

#### 2-2-1 연구수익 산출내역

(단위 : 원)

회계구분	계정과목	연구수익 금액	비고
학교회계 (교비회계)	연구기부금 수입		
	학교회계 연구수익 계		
산학협력단 회계	산학협력수익 중 연구수익		
	지원금수익 중 연구수익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연구수익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연구수익		
	가산) 교육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하단2-2-3 ②㉔ 상세내역 참조
	차감) 연구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하단2-2-3 ①㉔ 상세내역 참조
	가산) 기타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하단2-2-3 ③㉔ 상세내역 참조
	산학협력단회계 연구수익 계		
	연구수익 합계		

#### 2-2-2 교육수익 산출내역

(단위 : 원)

회계구분	계정과목	교육수익 금액	비고
학교회계 (교비회계)	입학금수익		
	수업료수익		
	계절학기수강료수익		
	차감) 교내장학금		근로장학금 제외
	학교회계 교육수익 계		
산학협력단 회계	산학협력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지원금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가산) 연구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하단2-2-3 ①㉔ 상세내역 참조
	차감) 교육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하단2-2-3 ②㉔ 상세내역 참조
	가산) 기타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하단2-2-3 ③㉔ 상세내역 참조
	산학협력단회계 교육수익 계		
	교육수익 합계		

2-2-3 R&D계수 적용사업 분류 세부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R&D계수 적용사업	㉠연구/교육 수익금액	㉢R&D 계수	㉡연구 수익금액 (㉠*㉢)	㉣교육 수익금액 (㉠*(1-㉢))	
①연구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BK21플러스사업	.	50%	.	.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	.	50%	.	.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	0%	.	.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	.	0%	.	.	
	지방대학육성사업	.	0%	.	.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	25%	.	.	
	소 계					
②교육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BK21플러스사업	.	50%	.	.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	.	50%	.	.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	0%	.	.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	.	0%	.	.	
	지방대학육성사업	.	0%	.	.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	25%	.	.	
	소 계					
③학교회계 혹은 기타산학협력 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BK21플러스사업	.	50%	.	.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	.	50%	.	.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	0%	.	.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	.	0%	.	.	
	지방대학육성사업	.	0%	.	.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	25%	.	.	
	소 계					

2-2-4 연구수익 세부산출내역(결산서상 계정과목별 연구수익 상세내역 기재)

(1) 산학협력 연구수익 및 교육운영수익 명세

(단위 : 원)

회계계정과목	교부처	내역	수익금액	당기현금수령액	비고
합 계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별지 제4호의1서식]에 따른 산학협력 연구 및 교육운영수익 명세서 기재

(2) 지원금 수익 명세

(단위 : 원)

회계계정과목	교부처	내역	수익금액	당기현금수령액	비고
합 계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지원금수익 명세서 기재

(3) 간접비 수익 명세

(단위 : 원)

회계계정과목	교부처	내역	수익금액	비고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합 계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간접비수익 명세서 기재

**대학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서식 작성 지침**



■ 개요 .....	67
■ 대학분야 국가R&D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서식 작성 지침(안)	
[제1호] 201X년도 국립대학(법인전환 포함)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양식 .....	71
[제1-1호] 인건비 산출내역 .....	93
[제1-2호] 연구수익비율 산출내역 .....	112
[제1-3호]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산출내역 .....	127
[제2호] 201X년도 사립대학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양식 .....	141
[제2-1호] 인건비 산출내역 .....	167
[제2-2호] 연구수익비율 산출내역 .....	188



# 개 요

## ■ 추진배경

- 2016~2017년 간접비 산출기준 개선 및 정비를 통하여 간접비 산출의 합리성 및 안정성은 향상되었으나, 산출대상 대학의 증가로 인해 **산출기준 및 양식에 대한 질의 및 설명자료 등 요청 증대**
- 이에 간접비 작성 **담당자(대학)의 편의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간접비 산출양식에 대한 **지침 발간 추진**

※ 2017년 제3회 간접비산출위원회(2017.12.19.)에서도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상세매뉴얼」 마련 등 개선과제를 제시

## ■ 양식 및 지침(안) 주요 내용

### ① 간접비 비율 산출양식(엑셀)에 대한 상세 설명

-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산출양식의 표 단위별로 관련 간접비 산출기준을 함께 명시
- 표 작성 시 유의할 검증사항, 상세지침, 오류사례, 참고사항을 제시

### 〈 간접비 비율 산출양식별 상세 설명 예시 〉

#### □ 검증사항

【학교 회계-급여】: 별지 제1-1호 서식 “1-1-1 학교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학교회계 연구지원 부문 급여 합계와 일치해야 함

####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능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② 공공요금 산출 및 배분기준과 방법(산출기준 참고사항)

- 적용대상 : 전기료, 도시가스료, 상·하수도료, 열에너지료
- 주요 인정기준 : (i) 산단 예산으로 집행하고 간접비사업비로 회계처리 (ii) 건물별로 사용량 계량·배분하고 교육부 보고비율 활용하여 연구시설에 배분 (iii) 학교 총괄납부주기와 연계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 집행 (iv) 학교회계는 비용 항목에서 차감 표시
- ※ 향후 산출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참고사항도 수정 예정

〈 공공요금 불인정기준 〉

□ 공공요금 불인정기준

- 비용배분을 건물별 연구면적비율을 사용하지 않고 대학 전체 면적비율을 사용하는 경우
- 배분된 비용을 학교에 총괄납부주기와 연계하지 않고 반기, 기말 등 일괄 정산하는 경우
- 산학협력단에서 비용처리한 금액을 대학회계에서 산학협력단전입금 등으로 수입처리하는 경우

③ 결산서 오류 발생 시 프로세스 체계화

-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간접비 원가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오류 조치 절차 제시

〈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 발생 시 조치 절차 〉

□ 참고사항

-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간접비 원가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간접비 원가 산출자료 제출 후에 원가 계산 검증담당자가 검증 확인절차 중 발견된 중대한 결산서상 오류 조치 절차
    - ① 수정 산학협력단 결산서를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의결 및 대학 총장 결재 후 수정 결산서 및 관련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에 보고한 공문 제출 시 인정
    - ② 미수정 산학협력단 결산서를 활용하여 간접비 원가 산출 시에는 간접비산출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적용하며, 중대한 오류로 인한 원가 산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접비 산출불가로 의견 피력 가능

〈중대한 오류 발생 사례〉

- 연구수익비율과 연간연구비에 영향을 주는 “지원금수익 중 연구수익 및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 금액을 결산서와 다르게 간접비 원가계산 적용 : XX대에서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비 전액을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해당 사업비 중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이 해당 산학협력단을 거쳐 프로젝트 시행 기관에 그대로 이체됨

**1. 국립대학(법인전환 포함)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서식 작성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201X년도 국립대학(법인전환 포함)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양식

○ 대학명 :

### 1-1 간접비 및 간접비 실사율

(금액단위 : 원, 비율: %)

구분	I		II		III	IV	V
	연구지원부문 간접비		공통지원부문 (연구·교육) 간접비		⑤연구 수익비율	⑥연간 연구비	간접비 실사율
	①연구 지원부문 인건비	②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③공통 지원부문 인건비	④공통 지원부문 관리운영비			⑦= [(①+②)/⑥]+ [(③+④)×⑤/⑥]
산출액 (비율)							

(\*) 이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 ■ 관련 산출기준

1) 적용대상 : 「2018년도 연구비관리체계평가」 참여 대학

2) 원가산출 기준 : 간접비 산출 직전 2개 회계연도 결산서

※ 학교회계와 산학협력단 대상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의 최근연도 회계기간 결산서 적용

- 2018년 이후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은 직전 2개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이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간접비 산출
- 2017회계연도(2017.3.1.~2018.2.28.) 결산서를 기준으로 원가산출 및 2018회계연도(2018.3.1.~2019.2.28.) 결산서를 기준으로 원가산출하여 각각의 회계연도별 결산서를 기초로 산출된 간접비 비율을 단순 산술평균함을 말함

3) 원가산출 방법

- 대학운영 비용을 1) 연구지원부문(A), 2) 교육지원부문, 3) 연구와 교육이 혼합된 공통지원부문(B)으로 구분하고, 이 중 연구와 관련된 간접비 비율 산출

### ■ 대학 간접비 비율 원가 산출식 = A + B ■

$$\blacksquare A(\text{연구지원부문}) = \frac{\text{①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 \text{②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 \text{③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text{⑦ 연간연구비}}$$

$$\blacksquare B(\text{공통지원부문}) = \frac{(\text{④ 공통지원부문 인건비} + \text{⑤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times \text{⑥ 연구수익비율}}{\text{⑦ 연간연구비}}$$

(\*) 학교회계는 대학회계(국공립대학), 교비회계(사립대학) 및 법인회계(법인전환국립대학)로 구분됨

- 기본 간접비 비율은 대학 간접비 비율 원가 산출식에 따라 간접비 비율 산출 후 대학간접비 원가 산출 상한 기준 적용
- 연구비관리체계평가 미참여 대학, 연구비관리체계평가에 참여한 대학 중 원가계산 미산출 및 원가계산 결과 실사율 5% 이하 대학은 5% 적용

**□ 검증사항**

- 【①연구지원부문인건비】: “1-2 연구지원부문 인건비(①)”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합계와 일치해야 함
- 【②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1-3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학교(대학/법인)회계 연구진흥경비(②)” 조정 후 금액 합계와 일치해야 함
- 【③공통지원부문 인건비】: “1-4 공통지원부문 인건비(③)” 공통지원부문 인건비 합계와 일치해야 함
- 【④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1-5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④)”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조정 후 금액 합계(1+2)와 일치해야 함
- 【⑤연구수익비율】: “1-6 연구수익비율의 계산 기준(⑤)” 연구수익비율( $D=A/C$ )과 일치해야 함
- 【⑥연간 연구비】: “1-7 연간연구비(⑥)” 연구비금액 합계와 일치해야 함
- 【⑦간접비 실사율】: 수식(⑦)=[(①+②)/⑥]+[(③+④)×⑤/⑥]에 따른 계산금액과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 【대학명】: ‘xx대학교’라고 반드시 기재하며 ‘xx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기재하지 않음
-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내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능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 공통 참고사항**

- 【지침 적용기간】: 2017년도 간접비 비율 산출 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지사항, Q&A자료 등을 통해 이미 고지 및 적용된 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2017.3~2018.2)를 이용한 간접비 비율 산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공공요금 인정기준 등 지침을 통해서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2018.3~2019.2)를 이용한 간접비 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함. 2018년부터 적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점을 지침에 명시함.
- 【작성일: 201X년 X월 X일】: 간접비 원가산출 관련 제출자료의 제출일을 기재하고, 서식파일 제목과 제출공문에 제출차수를 기재하여 구분함. 이후 간접비산출소위원회의 점검 결과 원가산출이 변경되어 자료를 재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기 제출일 및 차수를 변경하여 기재함
  - 예) 공문제목 : 2019년도 국가R&D 간접비 비율 산출자료 제출-OO대학교(O차 제출)
  - 별지서식 : 2019년도 국립대학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양식(O차 제출)
    - 인건비 산출내역(O차 제출)
    - 연구수익비율 산출내역(O차 제출)
    -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산출내역(O차 제출)

【작성자 및 확인자】: 작성자는 간접비 원가산출 자료를 실무적으로 작성한 담당자를 기재하고 자필서명하며, 확인자는 최종적으로 작성 책임을 지는 소속 기관장이 자필서명함. 다만 제출공문 등을 통해 소속 기관장이 전자결재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자필서명은 생략 가능  
 【소속기관】: 총장직인 날인하여 제출함이 원칙이나, 간접비 원가산출은 대부분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xx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기재 후 산학협력단장 직인 날인도 허용함

1-2 연구지원부문 인건비(①)

(단위 : 원)

구 분		학교 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계	비고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급 여				
	법정부담금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 인식분 포함)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계				

□ 검증사항

- 【학교 회계-급여】: 별지 제1-1호 서식 “1-1-1 학교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학교회계 연구지원부문 급여 합계와 일치해야 함
- 【학교 회계-법정부담금】: 별지 제1-1호 서식 “1-1-1 학교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학교회계 연구지원부문 법정부담금 합계와 일치해야 함
- 【학교 회계-퇴직급여】: 별지 제1-1호 서식 “1-1-1 학교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학교회계 연구지원부문 퇴직급여 합계와 일치해야 함
- 【학교 회계-연구개발능률성과급】: 별지 제1-1호 서식 “1-1-1 학교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학교회계 연구지원부문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산학협력단 회계-급여】: 별지 제1-1호 서식 “1-1-2 산학협력단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산단회계 연구지원부문 급여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산학협력단 회계-법정부담금】: 별지 제1-1호 서식 “1-1-2 산학협력단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산단회계 연구지원부문 법정부담금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산학협력단 회계-퇴직급여】: 별지 제1-1호 서식 “1-1-2 산학협력단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산단회계 연구지원부문 퇴직급여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산학협력단 회계-연구개발능률성과급】: 별지 제1-1호 서식 “1-1-2 산학협력단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산단회계 연구지원부문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 산학협력단 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지원 관련 집행비용(학교행사지원, 학생활동지원 등) 및 학교기업에서 발생하는 관리운영비는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불인정항목에 해당되며,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회계처리금액 중 공통 불인정항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공통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산학협력단 연구관리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교육활동 관련 집행비용(학교행사지원, 학생활동지원 등)</li> <li>- 학교기업에서 발생하는 관리운영비</li> <li>- 간접비 재원으로 지출한 연구대응자금 및 교내 연구보조비</li> <li>- 장려금 혹은 인센티브 집행액(신임교수 정착금/장려금, 장/단기 국내외 연수, 동아리 혹은 그룹 연구 지원금, 저술활동장려금, 장려금성 혹은 정액지급 논문게재료, 공모과제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지원금)</li> <li>- 업무추진비 및 경조사비 성격의 비용 집행액</li> <li>- 지원인력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성 경비(법정부담금 등)</li> <li>- 연구직접비 해당 비용 (연구과제와 관련 있는 전문가 자문수수료 및 세미나 강사료는 불인정대상이나, 기관 또는 사업단의 운영을 위한 공통 위원회 및 공통 세미나 관련 수수료는 인정대상임)</li> <li>- 배상금, 위약금, 변상금 등</li> <li>- 대학소속 교·직원 보직 및 겸직수당</li> <li>- 산학협력단에서 학교회계로 대가성 없이 지원한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액(대학 자원관리시스템 대학 부담금 불인정)</li> </ul>

1) 기관 공통지원경비

- (정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자산화된 금액 포함)

2)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정의)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자산화된 금액 포함)
  - 기관공통지원경비 상세내역과 동일한 세목으로 구성되며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어 구분 경리

**■ 기관공통 지원경비 및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참고사항**

- 하기 사례는 예시적 사례이며, 기관공통 지원경비 및 사업단/연구단 운영비로 집행될 수는 있으나 세부 집행내역이 불인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

**I. 기관공통 지원경비 및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항목**

1. 산학협력진흥비: 국제협력비, 교육훈련비, 홍보비, 행사비 등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진흥에 소용되는 경비
2. 일반수용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산학협력단 운영에 소용되는 경비
3. 공공요금및제세: 전기료, 도시가스료, 상·하수도료,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과 각종 제세 비용
4. 시설장비유지비: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연구시설장비유지비, 공통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지급임차료)
5. 기타운영비: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중 상기에서 열거되지 않은 모든 비용(지원인력 복리 증진비용, 여비교통비, 지급보험료, 용역비)

## II. 공공요금 인정기준

1. 산학협력단과 연구소 등 연구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요금 중 전기료, 도시가스료, 상·하수도료, 열에너지료에 대하여 대학에서 선 집행 혹은 총괄집행하고 공공요금 보전목적으로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으로 부담비용을 청구할 것
2. 산학협력단 예산(간접비 사업비 중 기관공통지원경비 또는 대학연구활동지원경비)에 반영하고 동 계정 과목으로 회계처리할 것
3. 공공요금은 월별 또는 분기별 집행일 것
  - 월별 집행 혹은 분기별 집행은 전년도 원가배분자료를 근거로 개산하며, 최종월 정산을 실시해야 함
  - 대학은 공공요금 산출내역을 포함한 청구문서를 산학협력단에 발송하여야 함
4. 공공요금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회계처리 할 것
  - ㉠ 개별 건물별로 사용량이 계량 가능하여, 대학에 총괄 청구된 금액을 청구기준으로 건물별로 배분
  - ㉡ 대학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육부장관에 보고한 자료(\*)를 활용하여 ㉠에서 건물별로 배분한 금액을 해당 건물의 연구시설비율로 배분

(\*)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 재정정보 집계·검증·분석 및 공시에 의거 '대학 교육시설 교육용기본재산 보유 현황(교지·교사 확보율)' 자료를 활용함

〈대학재정정보시스템상 대학 교육용 건물 현황 자료 요약〉

구분	고유 번호	건물명	건축 면적	연 면적	교사 면적	교육기본 시설	지원 시설	연구 시설	부속 시설	기타시설
가동										
나동										
다동										

- ㉠ ㉡에서 배분한 금액을 대학의 총괄납부주기에 맞추어 산학협력단에서 비용 집행  
 ㉡ 대학에서는 ㉠의 금액을 대학에서 기 집행(또는 집행예정)인 비용항목에서 차감

〈공공요금 배분 사례〉

구분	대학재정정보시스템 활용			한전 청구		자체측정		배분금액	
	연면적(㎡) (A)	연구시설(㎡) (B)	연구시설 비율 (C=A/B)	전기 사용량 (kwh)(D)	청구요금 (E)	전기사용량 (kwh)(F)	전기사용 비율 (G=F/D)	건물별 배분요금 (H=E*G)	연구활동 배분금액 (I=C*H)
가동	10,000	0	0.0%	179,000	20,000,000	45,000	25.1%	5,027,933	-
나동	20,000	5,000	25.0%			134,000	74.9%	14,972,067	3,743,017

## III. 공공요금 불인정기준

- ① 비용배분을 건물별 연구면적비율을 사용하지 않고 캠퍼스 전체 면적비율을 사용하는 경우
  - ② 배분된 비용을 학교에 총괄납부주기와 연계하지 않고 반기, 기말 등 일괄 정산하는 경우
  - ③ 산학협력단에서 비용처리한 금액을 대학회계에서는 산학협력단전입금 등으로 수입처리하는 경우
- ※ (경과규정) 상기 공공요금 인정기준 및 불인정기준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이용한 간접비 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함

3) 연구실안전관리비

- (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자산화된 금액 포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및 건강검진
  -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연구활동 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 (산출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금액 중 산학협력단 회계 운영계산서 상 간접비 사업비 계상 금액

■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예시

- 보험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상내용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보험료
- 교육·훈련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비용,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비용 (정기, 신규채용, 연구 내용 변경 시), 연구실 안전수칙·교육교재·안전관련 도서·학술지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의 구입·제작 비용 및 그 홍보·전파 등의 비용, 연구실 안전 관련 행사비 및 포상비
- 건강검진비: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일반 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비: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비용(다만,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시설공사 및 개조비용 등은 제외), 연구실안전환경을 위한 시설·설비의 재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 보호장비 구입비: 연구실험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의 각종 개인 보호구 및 각종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구급의약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보호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 관리 활동에 따른 개인용 작업복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검사비: 안전점검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점검측정장비구입 비용,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진단측정장비구입 비용
-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 지적사항(점검·진단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및 개선대책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 연구실 안전교육과 관련된 안전전문가 초빙 시 소요되는 강사료와 전문가 활용 및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 및 분석 비용
- 수수료: 실험실 지정폐기물 및 실험실 폐수 처리에 따른 연구실 안전을 위한 제반 수수료 및 그에 따른 소요 비용
- 여비 및 회의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연구실책임자 등이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출장 등과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 설비 안전검사비: 위험기계·기구 및 실험설비의 안전검사 비용
-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분석 비용 및 사고조사에 필요한 출장비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비용: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따른 전문가 활용 등 소요비용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일반적 성격의 안전관리비 제외 -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시설공사 및 개조비용 제외

4) 연구보안관리비

- (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자산화된 금액 포함)

- 실무적용: 보안장비 구입비, 보안교육관련 비용, 연구노트 작성과 관련된 제 비용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일반 보안업체 비용 제외

5) 연구윤리활동비

- (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일반적 성격 비용 제외

6) 대학연구활동지원금

- (정의)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 실험실 운영 지원비: 직접비에서 해소하기 힘든 실험실 운영을 위한 경비지원(시약, 재료비, 수용비 및 수수료)

- 학술대회 지원비: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국의 여비 포함), 패널·사회자 등 활용비, 학술대회 개최경비, 학술지 발간경비

- 논문게재료: 논문교정료, 저서출판비, 논문별 인쇄본 구입비

###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세목 예시

- 연구용 도서구입비: 전자정보(Web-DB, e-Journal, e-book) 구입비, 학술정보용 도서 구입비,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 ※ 중앙도서관에서 구입한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 구입비용도 산학협력단 예산에 반영되어 지출되고 산학협력단 회계상 간접비사업비로 회계처리된 금액은 인정항목에 포함
- 실험실 운영지원비: 시약·재료 구입비, 연구장비 사용료, 전산처리 관련 재료 및 전산 소모품

#### 학술활동 지원비 예시 사례

- 외빈 초청여비: 연구 및 학술활동 관련 외빈 초청에 따른 여비
- 학술대회비용: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제경비(인건비, 전문가활용비, 강사·연사료, 식대, 식음료비, 간식비 포함),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제경비, 학술행사를 위한 외국인 초청 제경비
- 학술지 발간경비: 공고 및 홍보비, 원고료, 심사료, 편집자 인건비, 학술지 발행 관련 비용(인쇄비, 전자출판 및 시스템구축비, 배송비 등)
- 논문게재 관련비용: 논문게재료, 외국어논문 교열비용
- 기타: 학회회비(종신회비 제외), 학술도서 저술 및 출판관련 비용(수당, 지원금 성격의 인건비 제외), 기타 학술활동에 필요한 비용
  - ※ 상기 학술활동 지원비는 산학협력단 예산에 반영되어 지출되고 산학협력단 회계상 간접비사업비로 회계처리된 금액은 전액 인정되며, 학회회계 예산에 반영되어 지출된 금액은 학술대회비용(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지원비, 참가 제경비) 및 논문게재 관련 비용만 제한적으로 인정됨에 유의

####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실험실 운영 지원비 중 인건비, 보험료, 업무추진비 등 경상지출 - 자체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하는 학술활동지원비 ※ 정액 지급대상 중 정액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 후 지급한 학술활동 지원비는 인정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학회 연회비)

#### 7)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 (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및 장비 유지 보수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 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운영비는 시설 및 장비의 수선비용 등 순수 운영에 따른 비용에 한해 인정

####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직접비 성격에 해당하는 비용 ※ 장비구입비, 시제품 제작경비 등 직접비 성격의 비용은 불인정

#### 8) 과학문화활동비

- (정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특정인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집행된 홍보 물품 집행액

9)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정의) 해당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자산화된 금액 포함)
  -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기술창업 출연 출자금

(2)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③)

- 학교회계(국공립대학은 대학회계, 사립대학은 교비회계)에서 연구진흥경비로 지출된 논문게재료, 학술 활동지원비, 연구실안전관리비에 한하여 아래 기술된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학교회계에서 지출된 대학연구활동지원금은 제외

1) 논문게재료

- (정의) 논문교정(번역 및 교열 포함), 저서출판, 논문별 인쇄본 구입 실 경비 지급액
  - 실경비 발생 적격증빙을 갖추었으나 해당 대학 자체규정에 따라 정액 한도 내에서 정산절차 수행 후 지급하는 논문게재료 포함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논문게재료	-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논문 게재건수에 따라 교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성격의 정액 논문게재료 - 학위과정 논문 지도비

2) 학술활동지원비

- (정의)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지원비,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발표(사회자, 좌장, 토론자 포함)를 위한 참가실 경비 지급액
  - 학술대회 개최 지원비는 해당 대학의 학과 및 연구기관이 주관이 되어 해당 대학 교내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대한 지원금으로 실경비만 인정
  - 학술대회 관련 국외출장여비는 해당 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 논문토론자, 좌장을 목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지급한 실경비만 인정하고, 단순 연수목적의 국외 출장여비는 불인정
- ※ 국제저명학술지(A&HCI, SSCI, SCI(E), SCOPUS급)를 보유한 학회 및 기관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국제학술대회 경우에는 사회자, 조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위원자격 참가의 경우에도 국외 출장여비로 인정
  - 학술대회 관련 국내출장여비는 학술대회 참여 목적 구분 없이 지급한 실 경비를 인정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학술활동 지원비	- 해당 대학 자체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하는 학술활동지원비 ※ 정액 지급대상 중 정액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 후 지급한 학술활동 지원비는 인정 - 연구자(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회의·세미나 참가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 시 단순 연수목적의 국외 출장여비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학회 연회비) - 소규모 세미나 및 전문가 초청 강연 개최 지원비

3) 연구실안전관리비

- (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자산화된 금액 포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안전환경 관리자 전문교육 및 건강검진
  -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연구활동 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 (산출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금액 중 대학회계 혹은 교비회계 예산에서 지출한 금액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일반적 성격의 안전관리비 제외 -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시설공사 및 개조비용 제외

### (3)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확인방법

-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는 계정과목, 지출일자, 지출금액 및 적요(사용목적 등 기재) 등이 포함된 상세 집행내역 전산(excel형식)파일 제출 확인

#### □ 검증사항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소계】: “기관 공통지원경비”부터 “(가산)연구관리운영비 자산화금액”까지 합산한 금액을 기재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소계】: “학교회계 집행 논문게재료”부터 “학교회계 집행 연구실안전관리비”까지 합산한 금액을 기재

【계】: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와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재

####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결산서금액(a)】: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Ⅲ.간접비사업비\_2.연구지원비’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함

【조정금액(b)】: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에 따른 불인정대상 금액을 양수(+)로 기재

【조정 후 금액(a-b)】: 결산서 금액(a)에서 조정금액(b)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

항	목	해설
<b>2. 연구지원비</b>		
1)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2)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의 운영경비
3)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안전교육비, 보험료 등)
4)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보안을 위한 필요경비(보안장비구입비, 보안교육비 등)
5)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6)	연구개발준비금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등에 따라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관련 경비
7)	대학 연구활동지원금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8)	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b>3. 성과활용지원비</b>		
1)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홍보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단, 지식재산권으로 자산화된 금액은 제외함)

(출처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지침서)

#### □ 참고사항

【(가산)연구관리운영비 자산화금액】

- ① (원칙) 당기 중 간접비 재원으로 집행된 금액 중에서 자산화된 금액을 기재하되, 당기 이전에 집행된 건설 중인 자산, 선금금 등이 당기 중 대체됨에 따라 증가된 자산 금액은 자산화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② (간편법)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에 포함된 당해년도 집기비품 취득지출액과 지식재산권 취득지출액을 기재

항	목	해설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투자활동이란 비유동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의 취득활동을 말함
	2) 유형자산취득지출	
	- 집기비품	
	3) 무형자산취득지출	
	- 지식재산권	

(출처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지침서)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국립대학의 경우 「국비」 또는 「수입대체경비」 등의 재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현재 국립대학의 재정운영표에서는 비용이 자원별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세출결산서상 당해년도 결산액(지출액)에서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작성하여야 함.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금액에 포함된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자원 구분 없이 인정함.

〈대학회계 세출결산 과목별 구분〉

구분	내용
산출기초	• 각 과목별 집행내역 기록
예산액	•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출예산액
예산현액	• 당해년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 * 예산현액 = 예산액 + 예비비지출액 + 전년도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 + 이·전용 등 증감액
결산액(지출액)	• 예산현액 중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
이월액	• 당해년도 예산현액 중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사고·계속비
불용액	•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상세 집행내역 전산파일】: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상 계정과목, 지출일자, 지출금액, 거래처명, 적요(사용목적 등 기재), 간접비 인정여부, 불인정사유, 전표번호 등이 포함된 양식을 엑셀파일로 제출

- 상세 집행내역 양식에서 각 계정과목별 지출금액의 합계는 결산서 금액(a)과 일치해야 하고, 간접비 인정여부에서 '불인정'으로 분류된 지출금액의 합계는 조정금액(b)과 일치해야 함
- 거래처명은 적요의 불충분성 보완 및 내부거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기재하여야 함. 다만 회계시스템 내 전표상 거래처명이 없는 항목은 빈칸으로 제출 가능함.

〈 연구관리운영비 집행내역 예시\_국립대학 〉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지출일자	지출금액	거래처명	적요	간접비 인정여부 (*1)	불인정 사유 (*2)	전표번호	비고

(\*1) 인정, 불인정으로 구분 기재  
 (\*2) 간접비로 불인정한 사유를 간략히 기재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상세 집행내역 전산파일】: 자원 또는 회계명, 운영계산서 상 계정과목, 지출일자, 지출금액, 거래처명, 적요(사용목적 등 기재), 간접비 계정과목 및 전표번호 등이 포함된 양식을 엑셀파일로 제출

- 상세 집행내역 양식에서 각 계정과목별 지출금액의 합계는 학교회계 운영계산서 상 계정과목 금액과 일치해야 하고, 간접비 인정여부에서 '인정'으로 분류된 지출금액의 합계는 조정 후 금액(a-b)과 일치해야 함
- 즉, 연구진흥경비 집행내역에 포함될 운영계산서 계정과목의 경우에는 해당 계정과목의 전체 내역을 기재하고, 그 중 간접비로 인정받을 항목은 간접비 인정여부란에 '인정'으로 기재할 것

(추출자료의 완전성 및 신뢰성 확보 목적)

〈 연구진흥경비 집행내역 예시\_국립대학 〉

자원 (*1)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지출일자	지출금액	거래처명	간접비 인정여부 (*2)	적요	간접비 계정과목 (*3)	전표번호

(\*1) 국비, 지자체지원금, 수입대체경비, 자체수입금 등을 구분 기재  
 (\*2) 인정, 불인정으로 구분 기재  
 (\*3) 간접비 인정여부가 '인정'인 경우에만 논문게재료, 학술활동지원비, 연구실안전관리비로 구분 기재

□ 오류사례

- 장려금(인센티브)성 비용 등 불인정항목 집행액을 연구지원 부문 관리운영비에 포함하여 불인정됨
- 기관 공동지원경비와 사업단·연구단 운영비로 회계처리한 인건비 집행액을 연구지원 부문 관리운영비에 포함하여 불인정됨
- 논문게재료, 학술활동지원비 및 연구실안전관리비 이외의 비용을 연구진흥경비에 포함하여 불인정됨

1-4 공통지원부문 인건비(③)

(단위 : 원)

구분		학교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계	비고
공통지원부문 인건비	급여				
	법정부담금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 인식분 포함)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계				

□ 검증사항

【학교 회계-급여】: 별지 제1-1호 서식 “1-1-1 학교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학교회계 공통지원부문 급여 합계와 일치해야 함

【학교 회계-법정부담금】: 별지 제1-1호 서식 “1-1-1 학교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학교회계 공통지원부문 법정부담금 합계와 일치해야 함

【학교 회계-퇴직급여】: 별지 제1-1호 서식 “1-1-1 학교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학교회계 공통지원부문 퇴직급여 합계와 일치해야 함

【학교 회계-연구개발능률성과급】: 별지 제1-1호 서식 “1-1-1 학교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학교회계 공통지원부문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합계와 일치해야 함

【산학협력단 회계-급여】: 별지 제1-1호 서식 “1-1-2 산학협력단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산단회계 공통지원부문 급여 합계와 일치해야 함

【산학협력단 회계-법정부담금】: 별지 제1-1호 서식 “1-1-2 산학협력단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산단회계 공통지원부문 법정부담금 합계와 일치해야 함

【산학협력단 회계-퇴직급여】: 별지 제1-1호 서식 “1-1-2 산학협력단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산단회계 공통지원부문 퇴직급여 합계와 일치해야 함

【산학협력단 회계-연구개발능률성과급】: 별지 제1-1호 서식 “1-1-2 산학협력단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산단회계 공통지원부문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1-5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④)

(단위 : 원)

구분 (학교회계 재정운영표)	학교회계(대학회계, 법인회계)			구분 (학교회계 재정운영표)	학교회계(대학회계, 법인회계)		
	재정운영표 결산서 금액(A)	조정 금액(B)	조정 후 금액 (A-B)		재정운영표 결산서 금액(A)	조정 금액(B)	조정 후 금액 (A-B)
I. 학교회계 행정관리운영비				II. 학교회계 시설관리운영비			
일반수용비				수선유지비			
공공요금 및 각종세금				용역비			
교육훈련비 및 행사비				소계(2)			
기타학교운영비							
복리후생비							
소계(1)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계(1+2)							

(\*) 법인회계 적용 국립대학은 사립대학 양식을 준용하여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산출

□ 검증사항

【I. 학교회계 행정관리운영비, 재정운영표 결산서 금액(A)】: 별지 제1-3호 서식 “1-3-1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재계산” I. 학교회계 행정관리운영비 비목별 재정운영표 결산금액(a)과 일치해야 함

【I. 학교회계 행정관리운영비, 조정금액(B)】: 별지 제1-3호 서식 “1-3-1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재계산” I. 학교회계 행정관리운영비 비목별 세입세출 결산서 수입대체경비(b), I. 학교회계 행정관리운영비 비목별 세입세출 결산서 국가/지자체 지원금(c) 및 I. 학교회계 행정관리운영비 비목별 불인정대상 조정금액(e)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I. 학교회계 행정관리운영비, 조정 후 금액(A-B)】: 별지 제1-3호 서식 “1-3-1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재계산” I. 학교회계 행정관리운영비 비목별 조정 후 금액(f=d-e)과 일치해야 함

【II. 학교회계 시설관리운영비, 재정운영표 결산서 금액(A)】: 별지 제1-3호 서식 “1-3-1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재계산” II. 학교회계 시설관리운영비 비목별 재정운영표 결산금액(a)과 일치해야 함

【II. 학교회계 시설관리운영비, 조정금액(B)】: 별지 제1-3호 서식 “1-3-1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재계산” II. 학교회계 시설관리운영비 비목별 세입세출 결산서 수입대체경비(b), II. 학교회계 시설관리운영비 비목별 세입세출 결산서 국가/지자체 지원금(c) 및 II. 학교회계 시설관리운영비 비목별 불인정대상 조정금액(e)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II. 학교회계 시설관리운영비, 조정 후 금액(A-B)】: 별지 제1-3호 서식 “1-3-1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재계산” II. 학교회계 시설관리운영비 비목별 조정 후 금액(f=d-e)과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능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1-6 연구수익비율의 계산 기준(⑤)

(단위 : 원)

연구수익(A)	교육수익(B)	계(C=A+B)	연구수익비율(%) (D=A/C)

■ 관련 산출기준

4 연구수익비율 (⑥)

- (정의) 연구수익비율은 연구수익과 교육수익의 합계에서 연구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 연구수익 :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연구활동과 관련된 수익
  - 교육수익 :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수익

$$\text{※ 연구수익비율} = \frac{\text{연구수익}}{(\text{연구수익} + \text{교육수익})}$$

□ 검증사항

- 【연구수익(A)】: 별지 제1-2호 서식 “1-2-1 연구수익 산출내역” 연구수익금액 합계와 일치해야 함
- 【교육수익(B)】: 별지 제1-2호 서식 “1-2-2 교육수익 산출내역” 교육수익금액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연구수익비율(%) (D=A/C)】: 수식(A/[A+B])에 따른 계산금액과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내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능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1-7 연간연구비(⑥)

(단위 : 원)

구 분	계정과목명	연구비 금액	비고
산학협력단 회계	산학협력비 중 산학협력연구비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		
	(가산) 산학협력연구비 및 연구비 중 연구장비 자산화금액		
	(가산) 교육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1-2-1 참조
	(차감) 연구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1-2-1 참조
	(가산) 기타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1-2-1 참조
	소계		
학교회계	연구기부금		
연간연구비 계			

(\*) R&D계수 적용사업 : BK21플러스사업,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 지방대학육성사업,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 관련 산출기준

⑤ 연간연구비 (⑦)

(1) 연간연구비 산정기준

- (정의) 산학협력단의 운영계산서 상의 연구수익과 대응되는 비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상 연구개발용역 성격의 금액
- (인정항목) 대학회계의 연구기부금 수입 및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산학협력비 중 산학협력연구비,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
  - 산학협력연구비 또는 지원금사업 연구비 비목에서 연구장비·재료비 등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연구장비 자산화 금액을 연간연구비에 포함
  - R&D계수 적용사업 비목에서 연구장비·재료비 등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R&D계수에 따라 연구수익으로 분배되는 금액을 연간연구비에 포함
  - 연간연구비는 개별 대학이 지출한 연간 연구비 총액 기입(간접비사업비 제외)

(2) R&D계수 적용사업의 연간연구비 계상기준

- R&D계수에 따라 연구수익에 포함되는 R&D계수 적용사업의 경우 연간 연구비에 반영
    - R&D계수 적용사업이 연간연구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R&D계수에 따라 연간연구비에서 차감 반영
    - R&D계수 적용사업이 연간연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R&D계수에 따라 연간연구비에 반영
- ※ (예시) R&D계수가 0.25인 R&D계수 적용사업은 총 사업비의 25%, 0.5인 R&D계수 적용사업은 총 사업비의 50%를 각각 연간연구비에 반영

## ■ R&D계수 적용사업 연간연구비 적용방법

- 연간연구비 산출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R&D계수 적용사업도 간접사업비를 제외한 직접비만으로 R&D 계수에 따라 재분배하여야 하나 검증절차 간소화 및 실무편의를 위해 간편 적용 허용
- 간편 적용방법: 연간연구비의 가산항목은 교육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 해당액을, 차감항목은 연구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 해당액을 기재
- 해당 대학에서 관련 R&D계수 적용사업 관련 직접연구비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적용 가능

### □ 검증사항

【(가산) 교육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별지 제1-2호 서식 “1-2-1 연구수익 산출내역” (가산) 교육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하단 1-2-3 ②㉔ 상세내역]과 일치해야 함

【(차감) 연구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별지 제1-2호 서식 “1-2-1 연구수익 산출내역” (차감) 연구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하단1-2-3 ①㉔ 상세내역]과 일치해야 함

【(가산) 기타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별지 제1-2호 서식 “1-2-1 연구수익 산출내역” (가산) 기타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하단1-2-3 ③㉔ 상세내역]과 일치해야 함

【연간연구비 계】: 산학협력단 회계 연구비금액 소계와 학교회계 연구기부금 합계와 일치해야 함

###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산학협력비 중 산학협력연구비】: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I.산학협력비\_1.산학협력연구비’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함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II.지원금사업비\_1.연구비’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함

과 목	해 설
관 항 목	
I. 산학협력비	
1. 산학협력연구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제 경비
2. 교육운영비	산학협력교육과정(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
3. 지식재산권비용	지식재산권의 운영,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및 이전에서 발생하는 경비, 단, 자산화하지 않는 지식재산권 관련비용은 포함됨
4. 학교시설사용료	대학의 유·무형자산을 이용함에 따라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
5. 기타산학협력비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II. 지원금사업비	지원금사업수행에서 발생하는 제 경비

과 목		해 설
관 항	목	
1.	연구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비
2.	교육운영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운영비
3.	기타지원금사업비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와 교육운영비를 제외한 기타비용

(출처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지침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별 해설)

【(가산) 산학협력연구비 및 연구비 중 연구장비 자산화금액】: 연구장비 자산화금액이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연구와 관련된 기계장치, 실험실습장비, 운송설비 및 기타의 부속설비를 계상하는 계정’인 기계기구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집행액을 말함

- 자산화금액 산출을 위한 간편법 적용 : 아래의 명세서상 금액 입력 가능

① 현금흐름표 상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_기계기구 취득 지출분을 입력

관	항	목	목	항	관
II. 현금유출액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2) 유형자산 취득지출			
		1) 기계기구 취득지출			

② 유형자산명세서 상 기계기구 계정과목의 당기 증가액 입력

과목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감가상각 누계액	미상각잔액	비고
기계기구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능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별지 제1-1호 서식

## 인건비 산출내역

- 작성일 : 201X년 월 일
- 작성자 : (인)
- 확인자 : (인)
- 소속기관 : (직인)

### 1-1-1 학교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상세구분	부서	국가 R&D실적 판단	급여	법정부담금	퇴직급여	연구개발 능력 성과급 등	인건비 계
연구 지원 부문	대학소속 산학협력단 전담인력	연구기획팀						
		연구관리팀						
		소 계						
	대학 부속연구 기관 (연구소 등)	○○연구소						
		○○연구센터						
		소 계						
	학교회계 연구지원부문 합계							
공통 지원 부문	대학소속 산학협력단 전담인력	연구기획팀						
		연구관리팀						
		소 계						
	대학 부속연구 기관 (연구소 등)	○○연구소						
		○○연구센터						
		소 계						
	공통지원 인정부서	회계팀						
		구매팀						
		소 계						
	단대 및 대학원 등 행정지원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소 계						
	학교회계 공통지원부문 합계							
교육지원부문	교육지원부서							
합계								

※ 참고

- 국가R&D실적 판단은 대학 알리미 공시자료 등 활용하여 연구과제수 및 연구비 총액 기재(예, 5건/3.5억)
- 부서명은 소속 부서의 최소단위(과, 팀 등)까지 구분하고 반드시 기재하며, 교육지원부문은 일괄기재 가능
- 대학 알리미 공시자료 상세내역 전산(excel형식)파일 별도 제출

## ■ 관련 산출기준

### 1 연구지원부문 및 공통지원부문의 인건비 기준 ①, ④

#### (1) 연구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 및 교육지원부문 해당부서 구분

##### 1) 연구지원부문 해당부서

가. 정의 :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부서\*만을 지원하는 부서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부문만을 전업으로 지원하는 연구지원 전담부서

\* 연구부서 : 산학협력단 사업부서, △△연구소, OO연구센터, XX 연구단

나. 예시부서 : 산학협력단 지원부서, 산학협력단 부속 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 지원부서, 대학 부설 연구소 지원부서

다. 분류기준

● 산학협력단 지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산학협력단 자체임용직원\* 및 대학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산학협력단 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조교 등의 기타직원 및 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으로 정산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연구행정지원인력 포함

- 산학협력단 지원부서 담당인력은 최근연도 대학 알리미에 공시된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에 반영된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학 알리미 공시인원과 실제근무 인원과의 차이는 별도 자료 제출

• 산학협력단 지원부서는 산학협력단 연구기획, 연구관리, 산업체연계, 산학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창업보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부서를 말함

• 산학협력단 지원부서 구분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기준으로 분류하여 해당업무 담당자 인건비 (산단 운영계산서 상 “간접비사업비”로 회계처리 분)만 인정

- 산학협력단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대학 소속직원은 대학 전체 국가R&D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학만 적용되며, 10억원 미만인 대학의 경우 공통지원부문으로 분류

- 산학협력단 소속 대학 파견직원은 파견자의 실제 근무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가R&D실적이 연간과제수 5건 이상이고 연간 연구비 총액 3억원 이상인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공통지원부문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교육지원부문으로 분류

## ■ 산학협력단 업무 및 인력구성

### 〈산학협력단 지원부서 범위〉

- 연구기획 : 산학협력·연구에 관한 기획, 산학협력·연구의 진흥, 각종 통계 및 성과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
- 연구관리 : 연구비/연구과제 관리, 교원 연구 수행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 산학협력단 내 연구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 산업체연계 : 산학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창업보육 등 산학협력단 내 산업체 연계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자
- 산학연계 : 산업자문(기술자문, 기업컨설팅), 교육운영(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현장실습지원 등), 설비자산(연구 및 실험·실습시설·장비)운동을 수행하는 직원
- 기술이전·사업화 : 특허관리(출원, 등록, 유지 관련 행정관리 업무), 기술정보관리, 연구자 상담, 기업상담(지재권 협상·계약 기술마케팅), 기술지주회사 및 학교기업 설립·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학생, 기술지주회사 및 학교기업 소속 직원 제외)
- 창업보육 : 창업보육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 기타 :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산학협력단 직원(국책사업단 또는 지방비사업단 소속의 연구원 및 직원은 제외)

### 〈산학협력단 고용주체별 인력 구분〉

- 겸직교원 : 산학협력단에 겸직으로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산학협력단장, 부서장,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 대학 소속직원 : 대학 총장 명의로 임명된 직원(겸직교원 제외) 중 산학협력단 전담인력으로 발령받은 직원
- 산학협력단 자체임용직원 :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임명되어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는 직원(겸직교원 제외)
- 산학협력단 소속 대학 파견직원 :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임명되어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실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 〈산학협력단 고용형태별 인력 구분〉

- 정규직 : 총장 및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발령을 받은 직원으로 정규직으로 고용된 직원
- 계약직 : 총장 및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발령을 받은 직원으로 계약직으로 고용된 직원
  - 무기계약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지만 임금이나 복지수준은 정규직과 같거나 그보다 못한 수준에 유지되고 있는 직원(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총 근무기간 2년 초과한 자로서 매년 연봉계약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 기간제계약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서 계약 기간이 2년 이하인 직원
- 기타직원 : 산학협력단 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조교 등의 직원

(출처: 교육부 및 대학공시정보센터의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

- 대학 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의 지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부속연구기관별 국가R&D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연구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국가R&D실적은 있으나 연간 연구비 총액이 1억원 미만의 대학 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의 지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공통지원부문 분류
  - 국가R&D실적이 없는 대학 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의 지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교육지원부문으로 분류
- ※ 대학 부설 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 해당 대학의 유무 확인은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상 「13-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자료 이용
- (\*) 대학알리미 '대학별검색' 중 목록보기 '교육여건\_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자료 이용하며, 대학알리미에 공시되지 않은 연구소는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의 범위에서 제외

라. 국가R&D실적 판단

- 국가R&D실적 판단기준은 연구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 및 교육지원부문 해당부서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해당 대학의 실제 국가R&D 수행 규모와는 상이함
  - 국가R&D실적은 과학기술분야 및 사회인문분야 등을 포함한 정부수탁사업의 연구과제수 및 연구비 총액이며, 최근연도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연구비수혜실적(중앙정부 연구과제수 및 연구비)\* 활용을 원칙으로 함
- (\*) 대학알리미 연구비수혜실적은 중앙정부, 교내연구비,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민간, 외국 및 대응자금 연구비로 구분 됨
- 대학 전체,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지원인력에 대한 공통지원부문 해당여부
  - 교원의 소속기준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최근연도 대학알리미 공시 연구비수혜실적을 이용하여 판단
- 대학 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 지원부서 연구지원부문 해당여부는 대학 자체 통계기준 분류에 따른 연구비수혜실적을 별도로 확인하여 판단
  - 교원의 소속기준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최근연도 대학알리미 공시 연구비수혜실적 원시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학 자체적으로 부속연구기관별로 재분류하며, 교원의 부속연구기관 중복등록도 가능

## ■ 국가R&D실적 판단기준 참고사항

- 최근연도 대학알리미 공시 연구비수혜실적은 원가산출대상 당해년도에 공시된 자료로, 대학 알리미에 공시된 연구비 수혜실적과 원가산출대상 연간 연구비와 차이가 발생함에 유의
  - 대학알리미 연구비수혜실적 : 학과별 전임교원의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 산출
  - 간접비 원가산출기간 : 직전연도 3월 1일부터 당해년도 2월말까지 결산서 기준 산출
- 대학 전체,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지원인력 국가R&D 실적
  - 최근연도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만을 이용하여 연구과제수 및 연간 연구비 총액 조건을 판단
  -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이외 별도의 대학 자체 통계기준으로 재 산출된 자료를 근거로 국가R&D 실적 판단은 불허 (예를 들어 연구책임자가 전임교원이외인 경우에는 국가R&D실적 판단 대상에서 제외됨)
- 대학 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 국가R&D실적
  - 최근연도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연구비수혜실적 원시데이터를 기초로 부속연구기관별로 재분류된 대학 자체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함
  -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교원의 소속 학과 및 부속연구기관 겸직으로 인한 중복 집계 가능)
  - 연구협약서 상 부속연구기관이 명시된 경우 명시 기준으로 산출
  - 연구과제 전산 입력 시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정보에 과제실적 귀속연구소를 선택하는 등 대학 자체기준 통계기준을 이용하여 실적 집계 가능
- 국책사업단 또는 지방비사업단 소속 직원의 경우 부속연구기관의 직원으로 인정
  - 국책사업단 또는 지방비사업단 :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R&D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기간 설치·운영되는 사업단
- 대학알리미 연구비 수혜실적은 교내/ 교외(중앙정부/ 지자체/ 외국/ 민간)로 구분
  - 교내 : 대학자체(교내)에서 지원한 연구비
  - 중앙정부 : 중앙정부(지자체 제외) 및 각 부처 산하 기관에서 지원한 연구비
  -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기관에서 지원한 연구비
  - 외국 : 외국정부, 민간 관계없이 외국에서 지원한 연구비
  - 민간 : 정부 이외의 민간 사업체, 연구소 등에서 지원한 연구비

마.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활용

- 국가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최근연도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활용하며, 간접비 산출기간의 공시자료 이용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시기(자료기준일)
항목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가. 연구비 수혜 실적	8월(직전 1.1~12.31)
	12-자-2.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 현황	6월(당해년도 4.1)
항목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8월(당해년도 4.1)

-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는 연구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 및 교육지원부문 해당부서 구분을 위한 판단기준으로만 활용

■ (적용 사례 예시) 2019년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적용 ■

- 1) 2017년도 연구비 수혜실적의 자료기준일은 2017.1.1. ~ 2017.12.31.이며, 대학알리미에는 2018년 8월 중 공시  
2018년도 연구비 수혜실적의 자료기준일은 2018.1.1. ~ 2018.12.31.이며, 대학알리미에는 2019년 8월 중 공시
  - 2) 2017년도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과 대학 부설연구소 현황은 2018.4.1.을 자료 기준일로 하며, 대학알리미에는 2018년 6월과 8월 중 공시  
2018년도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과 대학 부설연구소 현황은 2019.4.1.을 자료 기준일로 하며, 대학알리미에는 2019년 6월과 8월 중 공시
- (적용기준) 한국연구재단 조사시스템(KRI)을 통해 기 제출된 공시 전 대학 자체 공시자료 데이터를 기초로 2019년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적용하며, 자료 검증시에는 공시된 2018 및 2019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활용

2) 공통지원부문 해당부서

가. 정의 : 교육부서 및 연구부서를 함께 지원하는 공통지원부서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부문과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육부문을 동시에 지원하는 공통지원부서

나. 예시부서

-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로써 회계팀, 구매팀, 시설팀, 중앙도서관, 중앙전산원, 중앙기기센터
- 국가R&D 과제와 관련하여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실

다. 분류기준

- 대학 전체 국가R&D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대학의 산학협력단 전담인력으로 발령받은 대학 소속직원(겸직교원 제외)
- 대학 전체 국가R&D실적이 없으나 민간R&D실적 등이 있는 대학의 대학 파견 산학협력단 전담인력도 공통지원부문으로 분류

- 국가R&D실적을 보유한 대학 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 중 국가 R&D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이 1억원 미만인 지원 부서 인력
    - 국가R&D실적이 없는 대학 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 지원부서 인력은 교육지원부문으로 분류
  - 대학 전체 국가R&D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학의「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 인력
    - 대학 전체 국가R&D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대학의「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 행정지원인력은 교육지원부문으로 분류
    -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와 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업무 기준으로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여부 판단
  - 국가R&D실적 연구과제수가 5건 이상이고 연간 연구비 총액이 3억원 이상인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행정지원인력(조교 포함), 산학협력단 소속 대학 파견직원
    - 국가R&D실적 연구과제수 혹은 연간 연구비 총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지원부문으로 분류
    - 교양과목 교육을 위한 학부대학 행정지원인력은 전체를 교육지원부문으로 분류
- ※ 의과대학 소속 XX교실은 최근연도 대학 알리미 공시자료 상 교원소속기준으로 분류된 의과대학으로 합산 공시된 연구비수혜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분화된 자료로 구분하여 분류할 필요 없음

### ■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 참고사항

####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 담당업무〉

- 회계팀 : 대학의 수입 및 지출 등을 관리
- 구매팀 : 대학의 각종 물품계약 및 구매, 검수, 집행 등을 관리
- 시설팀 : 대학의 시설 유지보수 등을 관리(관재업무 포함)
- 중앙도서관 : 대학의 도서관 업무를 수행
- 중앙전산원 : 대학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관리
- 중앙기기센터 : 대학의 연구기기 등 취득·운용(기계공작실 포함)

#### 〈참고사항〉

-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는 해당부서 인원의 별도 업무분장을 확인할 필요는 없으나, 명백히 교육지원만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면 동 직원 인건비는 제외
-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별 업무
  - 교무, 인사, 기획, 예산, 홍보, 학사운영, 학생지원, 입학, 총무, 국제교류, 평가 등 업무
  - 총무업무는 교직원 인사, 교육, 후생복지, 노동단체, 각종 행사에 관한 업무로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에서 제외
  - 시설관리업무는 대학회계에서 용역비로 지출됨에 따라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에서 제외

3) 교육지원부문 해당부서

- (정의) 연구지원부문 및 공통지원부문 해당부서로 인정되는 부서 이외의 부서

■ 국가R&D실적 판단 사례

(사례)

- ○대학은 교학 행정팀 직원들이 산학협력단 업무를 겸직하며 연구기획, 계약, 관리, 집행, 결산을 수행하고 있으며
  - 지원인력 인건비는 대학 교비 재원으로만 지급
  - 산학협력단 업무 겸직에 따른 수당 및 성과급 등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미지급
  -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간접비 재원으로 지출된 공통지원인력 인건비 없음
  - 산학협력단 자체임용직원은 없음

(원가산출 적용)

- ○대학은 특수성으로 인해 산학협력단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다면
  - 해당 대학소속 직원(겸직인원)의 인건비는 대학 전체의 해당연도 국가R&D실적 연간 연구비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해당 대학소속 직원(겸직인원)의 인건비는 대학 전체의 해당연도 국가R&D실적 연간 연구비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단과대학 및 대학원별 국가R&D 실적 연구과제수가 5건 이상이고 연간 연구비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지원인력을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하나,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육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산학협력단장은 통상 겸직교수가 담당하므로 교원인건비에 해당되어 불인정

(2) 인건비 산출 기준

1) 간접비 산출대상 지원인력인건비

가. 인정범위 : 결산서상 인건비로 회계처리한 금액 인정

- 국공립대학은 대학회계 재정운영표상 직원인건비, 일용임금, 퇴직급여, 법정 고용부담금 및 교육·연구·학생지도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금액 중 공무원 신분이 아닌 대학회계직원(계약직원 포함)에 대한 인건비
  - 국공립대학 구성원은 대학 소속 공무원(공무원인 교수, 공무원직원, 공무원조교), 대학회계직원(공무원신분이 아닌 조교 포함) 및 기타 계약직원(임시직 포함)으로 분류
  - 국립대학회계·재정법에 따라 대학 소속 공무원(공무원인 교수 제외), 대학회계직원 및 기타계약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도 인건비로 분류
  - 국립대학법인은 법인회계 운영계산서 상 직원인건비로 회계처리한 인건비

- 사립대학은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상 조교인건비 및 직원보수로 회계처리한 인건비
  -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상 교원보수로 분류되는 단과대학 소속 학과, 학부, 의과대학 소속 XX교실 등에서 근무하는 조교 인건비는 인건비 분류기준에 포함
- 산학협력단은 운영계산서 상 간접비사업비 중 인력지원비(인건비, 연구개발능력성과급)로 회계처리한 인건비
  -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에서 간접비사업비 중 기관공통지원경비 및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인건비(퇴직급여 및 법률에 의해 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관련 부담금인 4대보험 해당액 포함)는 인건비 분류기준에서 제외

나. 공통 불인정범위

- 연구과제 참여인력 인건비는 간접비 원가산출대상에서 제외
  - 산학협력단 지원인력 중 결산서상 사업단(ACE사업단 등) 혹은 창업보육센터 직접비로 회계처리된 인건비
  -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의 퇴직급여 및 4대보험 기관부담분 직접비 미계상분을 간접비 재원으로 지급한 경우
  - 연구과제 참여 대학원생 등에게 지급한 장학금
  - 교원(전업강사, 비전업강사,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포함) 인건비
  - 산학협력단 간접비 재원으로 지출한 연구전임교원 및 리서치펠로우에 대한 인건비
- 기타 인건비 중 간접비 원가산출대상에서 제외
  - 산학협력단에 파견된 대학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보직수당 및 겸직수당
  - 학교기업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 연구지원 또는 공통지원부문 해당부서 인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금 또는 명예퇴직수당
  -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회계 직원에 대한 퇴직금 부족액을 회계연도말 집행한 인건비

❏ 인건비 인정범위 판단 참고사항

- 대학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에서 연구지원부문 인건비와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인정
- 교수, 원어민강사 등 직접비 성격의 인건비는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대상에서 제외하며, 산학협력단장 등 교원에 대한 보직수당 및 직책수당도 제외
- 산학협력단 인력지원비에서 국책사업 준비 T/F팀의 교수 및 학생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직접비에 해당됨에 따라 공통지원부문 혹은 연구지원부문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음
- 국립대학 대학회계에서 지출된 지원인력 인건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대학회계직원 및 기타 계약지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지원부서 분류기준 판단(수입대체경비 또는 국가및지자체지원금 재원 구분 불필요)
- 사립대학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지원인력 인건비는 해당 지원부서의 연구지원부문 및 공통지원부문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판단(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 재원 구분 불필요)
- 회계연도 중 부서이동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무기간별로 집계하되, 결산일 기준으로 업무 담당자별 인건비를 산출하는 경우에도 허용

## 2) 간접비 산출대상 기타비용

### 가. 연구개발능력성과급

- 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력성과급으로 대학 자체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 경우 인건비로 인정
  -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분류(지원인력 인건비이므로 국가R&D 간접비수의 재원 구분 없음)
  - 국가R&D(중앙정부 연구과제) 간접비수의 재원으로 연구자(교원)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분류
- \*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국가R&D(중앙정부 연구과제)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민간수탁과제 간접비 재원은 해당되지 않음

### 나. 산학협력보상금

- 지식재산권비용 중 산학협력보상금은 대학 자체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 알리미에 공시된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에 반영된 지원부서 인원에게 지급 시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분류
  - 단, 연구자(교원)에게 지급한 산학협력보상금은 제외

## (3) 인건비 확인방법

### 가. 해당부서 구분 확인

- 연구지원부문 및 공통지원부문 해당여부 검토를 위해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에 따라 작성된 연구비 수혜실적 자료 및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 자료 제출 확인
  - 대학 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 지원부서 인건비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 자체 통계기준에 따른 연구비수혜실적을 각 연구과제명과 연간 연구비 내역을 별도 제출 확인
  - 대학 전체,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실 지원부서는 대학 알리미에 공시된 연구비 수혜실적 자료로 판단(대학알리미 공시된 연구과제명과 연간 연구비내역이 포함된 연구비수혜실적 전산자료 제출)

### 나. 인건비 산출 확인

- 인건비 산출 확인 관련 공통사항
  - 교육지원부문에 대한 상세내역 제출 생략 가능
  - 인건비 금액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경리팀의 확인증 등)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검증담당자의 검증 확인절차로 같음하며 별도 자료 미제출
- 인건비 산출 확인을 위한 결산서 활용방안
  - 국공립대학은 대학회계 재정운영표상 관·항·목 분류에 따른 인건비 등과 부서별 연구지원부문, 교육 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으로 구분한 금액간의 검증 확인(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및 관련 서류 확인
  - 사립대학은 교비회계 운영계산서상 관·항·목 분류에 따른 직원보수 등과 부서별 연구지원부문, 교육 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으로 구분한 금액간의 검증 확인(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및 관련 서류 확인

- 산학협력단 회계의 인건비는 운영계산서상 간접비사업비 중 인력지원비(인건비 항목)와 차이 발생 시 소명자료 확인

※ 간접비사업비 중 인력지원비와 차이 발생 시 반드시 소명 필요

## 회계별 인건비 분류

### 〈국립대학 재정운영표 상 인건비〉

- 직원인건비: 공무원직원, 공무원조교, 대학회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일용임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퇴직급여: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시 발생하는 비용
- 법정고용부담금: 법률에 의해 대학이 부담하여야 할 고용관련 부담금(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국립대학회계·재정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교직원(공무원인 교수 제외)에게 대학 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비용)

### 〈사립대학 재정운영표 상 인건비〉

- 조교인건비: 유급조교(장학조교는 제외)에게 지급하는 급여·상여금·각종 수당·법정부담금 및 퇴직금
- 직원보수: 직원급여(직원의 정액 급여), 직원상여금, 직원각종수당(정액수당·정근수당·식대보조비 등 직원의 각종 수당), 직원법정부담금(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등), 임시직인건비(임시직 직원의 급여·상여 및 각종 수당), 노임(일용 인부의 노임), 직원퇴직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외의 퇴직금)

###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간접비사업비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인건비: 간접비 재원으로 지급되는 지원인력급여, 지원인력상여금, 지원인력제수당(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지원인력법정부담금(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부담금), 지원인력퇴직급여(퇴직금 지급액 또는 퇴직적립금(퇴직연금)), 일용임금
- 연구개발능률성과금: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금(해당연도 간접비 총액 10% 범위 내에서 계상)

## □ 검증사항

【학교회계 연구지원부문 합계 중 인건비 계】: “1-1-3 재정운영표 및 운영계산서와의 검증” 대학회계 합계 중 연구지원부문과 일치해야 함

【학교회계 공통지원부문 합계 중 인건비 계】: “1-1-3 재정운영표 및 운영계산서와의 검증” 대학회계 합계 중 공통지원부문과 일치해야 함

【학교회계 교육지원부문 합계 중 인건비 계】: “1-1-3 재정운영표 및 운영계산서와의 검증” 대학회계 합계 중 교육지원부문과 일치해야 함

【학교회계 연구지원부문 합계】: 연구지원부문에 해당하는 대학소속 산학협력단 전담인력 소계와 대학 부속연구 기관(연구소 등) 소계의 합을 기재

【학교회계 공동지원부문 합계】: 공동지원부문에 해당하는 대학소속 산학협력단 전문인력 소계, 대학 부속연구기관 (연구소 등) 소계, 공동지원 인정부서 소계, 단대 및 대학원 등 행정지원 소계의 합을 기재

【교육지원부서】: 학교회계 인건비 중 연구지원부문과 공동지원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인건비를 기재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 참고사항

【인건비 대상】: 인건비 산출 시 대학회계 결산서상 인건비로 회계처리한 금액만 인정

계 정 과 목		해 설
관 항	목	
비 용		
I. 인적 비용		대학을 운영하는 구성원의 모든 인적비용
	1. 인건비	대학 소속 공무원, 대학회계직원 및 기타 계약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
	2) 직원인건비	공무원직원, 공무원조교, 대학회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일용임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2.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1) 퇴직급여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시 발생하는 비용
5. 법정고용부담금		법률에 의해 대학이 부담하여야 할 고용관련 부담금
	1) 국민연금부담금	공무원신분이 아닌 대학회계직원(계약직원 포함)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대학이 부담해야할 금액
	2) 건강보험부담금	공무원 및 대학회계직원(계약직원 포함)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대학이 부담해야할 금액
	3) 고용보험부담금	공무원 및 대학회계직원(계약직원 포함)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대학이 부담해야할 금액
	4) 산재보험부담금	공무원신분이 아닌 대학회계직원(계약직원 포함)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대학이 부담해야할 금액
	5)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공무원 및 대학회계직원(계약직원 포함)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대학이 부담해야할 금액
II. 교육·연구·학생지도 및 장학비		교육·연구·학생지도 및 장학비는 장학금,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학생교육 및 활동지원비로 구분
	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연구지원대응사업비로 구분

계 정 과 목		해 설
관 항	목	
	1) 교육경비	국립대학회계·재정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비용)
	2) 연구경비	
	3) 학생지도경비	

(출처 : 대학회계 결산지침)

**【인건비의 부문 구분】:**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지원인력 인건비는 해당 지원인력이 실질적으로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 해당 학과 지원인력이 연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교육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과대학의 국가 R&D 실적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지원부문으로 분류되어야 함. 즉, 연구지원/공통지원/교육지원으로 분류되는 상세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 인원이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지원부문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임

**【국가 R&D 실적 판단】:** 국가 R&D 실적은 단과대학, 연구소 등의 실적을 대학 알리미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마지막 행에는 학교 전체 실적을 입력

- 예시 : 3건/5억원, 7건/13억원 등
- 대학알리미상 「12-가. 연구비수혜 실적」 양식에는 학과 단위로 실적이 공시되고 있으나, 국가 R&D 실적은 각 단과대학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과대학 산하의 학과 단위 실적을 합산하여 「국가 R&D 실적판단」란에 기재하고, 해당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대학알리미 연구비수혜 실적 양식상 “교외연구비 지원\_중앙정부”에 해당되는 과제 및 연구비 실적을 사용하여 집계함
- 자료기준일은 간접비 심사대상 회계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임
- 단과대학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하되, 교육부분만을 전담하는 학과(교양학부, 공대 전문대학인 경우 경영학부 등 전체 대학 명칭 중 예외적인 학과)를 지원하는 행정인력에 대해서는 제외
- 공통지원부문 인건비 중 국가R&D 실적 5건, 3억 이상의 기준은 단과대 및 대학원 행정실 기준임

**〈 대학알리미 상 연구비수혜 실적 양식 〉**

(단위 : 건, 천원)

기준 연도	단과 대학	학과	전임 교원	연구비 지원												대응자금 (연구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계	교내		교외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외국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교내	교외

(출처: 대학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

**【인건비 재원】:** 인건비 분류기준에 포함되는 인원인 대한 인건비는 현행 산출기준에서는 재원별 구분(등록금회계 또는 비등록금회계)을 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해당 인원이 연구지원 혹은 공통지원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간편법】:** 대학회계 인원에 대한 공통지원부문 인건비 산출 시 원칙적으로는 개별 인원의 전입/전출도 모두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하지만, 산출의 편의성을 위해 2월 28일자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해당 인원이 연구지원/공통지원/교육지원으로 분류한 후에 연구지원과 공통지원 인력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 대학회계 직원의 산단 전담 혹은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연구지원부문 인건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자료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실제 급여금액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함
- 산단 인력도 연말정산자료 등을 통해 간편법으로 산출할 수 없음
- 연말정산자료를 이용하여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를 산출한 경우 “1-1-3 혹은 2-1-3의 운영계산서 혹은 재정운영표와의 검증”은 작성의 편의성을 위해 연구지원부문과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를 산출하고 결산서상 금액에서 차감된 잔액을 교육지원부문 인건비로 기재함

**【대학회계 증빙】:** 대학회계 직원에 대한 업무분장표 및 조직도 등 해당 대학의 직원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전화번호부 등을 제출하여 대학 인원의 분류 적정성을 검증 받아야 함.

- 다만 대학의 회계전산 파일을 통해 부서별 인건비가 관리되고 검증 가능한 경우는 전화번호부 등을 제출할 필요 없음. 회계전산 파일 상에서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제출 필요함

**【국책사업단】:** 국책사업단 또는 지방비사업단의 정의는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R&D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기간 설치 운영되는 사업단임. 동 정의에 충족하는 사업단 소속 직원이라면 부속연구기관 근무 직원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겸직발령의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실제 업무 분석 등을 고려하여 분류 가능함

**【교원 및 연구원 인건비】:** 교원 및 연구원은 직접비 성격의 인건비 분류대상이므로 연구지원부문에 포함되지 않음

**【법정부담금】:** 연구지원부문 인건비의 경우 결산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산출하여야 하고,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는 간편법에 따라 연말정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결산서상 퇴직급여 금액을 기재

**【교육·연구·학생지도비】:** 공통지원부문으로 분류되는 인원의 경우에는 공무원과 대학회계직원에게 지급된 교육·연구·학생지도비(교연비)는 모두 포함됨. 다만 재원이 대학회계재원이어야 함

- 교육·연구·학생지도비(교연비)와 산학협력보상금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의 란에 기입

**【장학금】:** 장학금 비목으로 지출된 금액은 전액 불인정대상에 해당됨

#### □ 오류사항

- 국가 R&D 실적이 10억 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회계 인건비를 연구지원부문에 포함하여 공통지원부문으로 수정함
- 국가 R&D 실적조건(5건/3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과대학 행정실 인건비를 공통지원부문에 포함하여 이를 교육지원부문으로 수정함
- 공통지원부문의 예시부서에 포함되지 않은 총무과, 인사처, 생활관 등을 공통지원부문에 포함하여 이를 교육지원부문으로 수정함

1-1-2 산학협력단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상세구분	부서	국가 R&D실적 판단	급여	법정부담금	퇴직급여	연구개발 능력 성과급 등	인건비 계	
연구지원부문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	연구기획팀	/						
		연구관리팀	/						
		연구행정전담인력	/						
		소 계							
	산학협력단 부속연구 기관 (연구소 등)	○○연구소							
		○○연구센터							
		소 계							
산단회계 연구지원부문 합계									
공통지원부문	산학협력단 소속 대학 파견직원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소 계							
	산학협력단 부속연구 기관 (연구소 등)	○○연구소							
		○○연구센터							
		소 계							
	산단회계 공통지원부문 합계								
교육지원부문	교육지원부서	/							
합 계									

※ 참고

- 국가R&D실적 판단은 대학 알리미 공시자료 등 활용하여 연구과제수 및 연구비 총액 기재(예, 5건/3.5억)
- 부서명은 소속 부서의 최소단위(과, 팀 등)까지 구분하고 반드시 기재하며, 교육지원부문은 일괄기재 가능

□ 검증사항

【산단회계 연구지원부문 합계 중 인건비 계】: “1-1-3 재정운영표 및 운영계산서와의 검증” 산학협력단회계 합계 중 연구지원부문과 일치해야 함

【산단회계 공통지원부문 합계 중 인건비 계】: “1-1-3 재정운영표 및 운영계산서와의 검증” 산학협력단회계 합계 중 공통지원부문과 일치해야 함

【산단회계 교육지원부문 합계 중 인건비 계】: “1-1-3 재정운영표 및 운영계산서와의 검증” 산학협력단회계 합계 중 교육지원부문과 일치해야 함

【산단회계 연구지원부문 합계】: 연구지원부문에 해당하는 산학협력단 자체임용직원 소계와 대학소속 산학협력단 전담인력 소계와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등) 소계의 합을 기재

【산단회계 공통지원부문 합계】: 공통지원부문에 해당하는 산학협력단 소속 대학 파견직원 소계와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등) 소계의 합을 기재

【교육지원부서】: 산단회계 인건비 중 연구지원부문과 공통지원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인건비를 기재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인건비 대상】: 인건비 산출 시 결산서상 “Ⅲ.간접비사업비\_1.인력지원비”로 회계처리한 금액만 인정

과 목		해 설
관 항	목	
Ⅲ. 간접비사업비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지출하는 제비용
1. 인력지원비		
1) 인건비		연구지원인력 및 행정지원 전담요원의 인건비
2)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력성과급

(출처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지침서)

【인건비의 부문 구분】: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지원인력 인건비는 해당 지원인력이 실질적으로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 해당 학과 지원인력이 연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교육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과대학의 국가 R&D 실적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지원부문으로 분류되어야 함. 즉, 연구지원/공통지원/교육지원으로 분류되는 상세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 인원이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지원부문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임

【국가 R&D 실적 판단】: 국가 R&D 실적은 단과대학, 연구소 등의 실적을 대학 알리미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마지막 행에는 학교 전체 실적을 입력

- 예시 : 3건/5억원, 7건/13억원 등
- 대학알리미상 「12-가. 연구비수혜 실적」 양식에는 학과 단위로 실적이 공시되고 있으나, 국가 R&D 실적은 각 단과대학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과대학 산하의 학과 단위 실적을 합산하여 「국가 R&D 실적판단」란에 기재하고, 해당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대학알리미 연구비수혜 실적 양식상 “교외연구비 지원\_중앙정부”에 해당되는 과제 및 연구비 실적을 사용하여 집계함
- 자료기준일은 간접비 심사대상 회계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임
- 단과대학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하되, 교육부분만을 전담하는 학과(교양학부, 공대 전문대학인 경우 경영학부 등 전체 대학 명칭 중 예외적인 학과)를 지원하는 행정인력에 대해서는 제외
- 공통지원부문 인건비 중 국가R&D 실적 5건, 3억 이상의 기준은 단과대 및 대학원 행정실 기준임

〈대학알리미 상 연구비수혜 실적 양식〉

(단위 : 건, 천원)

기준 연도	단과 대학	학과	전임교원	연구비 지원												대응자금 (연구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계	교내		교외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외국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교내	교외	교내	교외

(출처: 대학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

【간편법】: 산단 인력은 연말정산자료 등을 통해 간편법으로 산출할 수 없음

【국책사업단】: 국책사업단 또는 지방비사업단의 정의는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R&D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기간 설치 운영되는 사업단임. 동 정의에 충족하는 사업단 소속 직원이라면 부속연구기관 근무 직원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겸직발령의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실제 업무 분석 등을 고려하여 분류 가능함

【교원 및 연구원 인건비】: 교원 및 연구원은 직접비 성격의 인건비 분류대상이므로 연구지원부문에 포함되지 않음

【대학알리미 자료】: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간접비사업비"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알리미에 공시된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에 반영된 인원이 아닌 경우 산단 자체 임용직원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해당 인원의 대학 알리미 공시 자료 등을 참고하여 판단 필요

【법정부담금】: 연구지원부문 인건비의 경우 결산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산출

- 과제 특성상 연구과제 연구원의 법정부담금 지출이 되지 않아 간접비사업비에서 연구과제 연구원의 법정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법정부담금은 불인정범위에 해당됨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결산서상 퇴직급여 금액을 기재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산학협력단에서 국가R&D(중앙정부 연구과제) 간접비수익 재원으로 지급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중 교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1-1-2 서식과 2-1-2 서식에서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등)에 “교원지급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 별도 표시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국가R&D(중앙정부 연구과제)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민간수탁과제 간접비 재원은 해당되지 않음
- 교육·연구·학생지도비와 산학협력보상금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의 란에 기입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연구소 등)의 범위】: 산학협력단 조직도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부속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대학알리미에 공시되지 않은 연구소는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의 범위에서 제외

□ 오류사항

- 국가 R&D 실적이 10억 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회계 인건비를 연구지원부문에 포함하여 이를 공통지원부문으로 수정함
- 국가 R&D 실적조건(5건/3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과대학 행정실 인건비를 공통지원부문에 포함하여 이를 교육지원부문으로 수정함
-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간접비사업비가 아닌 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한 인건비를 연구지원부문에 포함하여 교육지원부문으로 수정함

1-1-3 재정운영표 및 운영계산서와의 검증

(단위 : 원)

회계구분	관구분	항·목 구분	연구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	교육지원부문	계	비고
대학 회계	인적비용	직원인건비					
		일용임금					
		퇴직급여					
		법정고용부담금					
	교육·연구·학생지도비용						
	대학회계 합계						
산학 협력단 회계	간접비사업 인력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력 성과급					
	산학협력단회계 합계						

※ 계정과목 구분은 국립대학별 재정운영표상 관·항·목 분류기준에 따름

□ 검증사항

【대학회계 합계\_연구지원부문】: “1-1-1 학교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 학교회계 연구지원부문 합계\_인건비 계와 일치해야 함

【대학회계 합계\_공통지원부문】: “1-1-1 학교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 학교회계 공통지원부문 합계\_인건비 계와 일치해야 함

【대학회계 합계\_교육지원부문】: “1-1-1 학교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 학교회계 교육지원부문 합계\_인건비 계와 일치해야 함

【대학회계\_직원인건비 계】: 대학회계 운영계산서 상 직원인건비와 일치해야 함

【대학회계\_일용임금 계】: 대학회계 운영계산서 상 일용임금과 일치해야 함

【대학회계\_퇴직급여 계】: 대학회계 운영계산서 상 퇴직급여와 일치해야 함

【대학회계\_법정고용부담금 계】: 대학회계 운영계산서 상 법정고용부담금과 일치해야 함

【대학회계\_교육·연구·학생지도비용 계】: 대학회계 운영계산서 상 교육·연구·학생지도비용과 일치해야 함

【산학협력단회계 합계\_연구지원부문】: “1-1-2 산학협력단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 산단회계 연구지원부문 합계\_인건비 계와 일치해야 함

【산학협력단회계 합계\_공통지원부문】: “1-1-2 산학협력단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 산단회계 공통지원부문 합계\_인건비 계와 일치해야 함

【산학협력단회계 합계\_교육지원부문】: “1-1-2 산학협력단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 산단회계 교육지원부문 합계\_인건비 계와 일치해야 함

【산학협력단 회계\_지원인력인건비 계】: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지원인력인건비와 일치해야 함

【산학협력단 회계\_연구개발능력성과급 계】: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연구개발능력성과급과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1-1-4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

(단위 : 명)

소속구분	연구기획	연구관리	산학연계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보육	기타	합계
대학소속 직원							
산단자체 직원							

※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구분은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에 따름

□ 상세지침

【입력내용】: 국가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최근연도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항목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중 자-2.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 현황
- 공시시기(자료기준일)은 6월(당해년도 4.1)

별지 제1-2호 서식

### 연구수익비율 산출내역

- 작성일 : 201X년 월 일
- 작성자 : (인)
- 확인자 : (인)
- 소속기관 : (직인)

#### 1-2-1 연구수익 산출내역

(단위 : 원)

회계구분	계정과목	연구수익 금액	비고
학교회계 (대학/법인회계)	연구기부금 수입		
	학교회계 연구수익 소계		
산학협력단 회계	산학협력수익 중 연구수익		
	지원금수익 중 연구수익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연구수익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연구수익		
	(가산) 교육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하단1-2-3 ②㉔ 상세내역 참조
	(차감) 연구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하단1-2-3 ①㉔ 상세내역 참조
	(가산) 기타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하단1-2-3 ③㉔ 상세내역 참조
	산학협력단회계 연구수익 소계		
연구수익 합계			

#### ■ 관련 산출기준

#### 4 연구수익비율 (6)

##### (2) 국(공)립대학 연구수익비율

###### ● 연구수익

- (정의) 대학회계 재정운영표 및 산학협력단회계 운영계산서 상 연구활동과 관련된 수익의 총계
- (인정항목)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산학협력수익 중 연구수익, 지원금수익 중 연구수익,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연구수익 및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연구수익
- (불인정항목) 기타산학협력수익과 기타지원금수익은 연구수익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으로 불인정

※ 산학협력단 결산서상 계정과목별 연구수익 및 교육수익 사업별 상세내역은 전산파일 확인(별지 제2-2호 서식 참조)

□ **검증사항**

【(가산) 교육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1-2-3 R&D계수 적용사업 분류 세부산출내역” ②교육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연구수익금액(㉔) 소계와 일치해야 함

【(차감) 연구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1-2-3 R&D계수 적용사업 분류 세부산출내역” ①연구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교육수익금액(㉓) 소계와 일치해야 함

【(가산) 기타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1-2-3 R&D계수 적용사업 분류 세부산출내역” ③학교회계 혹은 기타산학협력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연구수익금액(㉔) 소계와 일치해야 함

【연구수익 합계】: 학교회계(대학/법인회계) 연구수익 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 연구수익 소계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연구기부금 수입】: 대학회계 재정운영표 또는 국립대학법인회계 운영계산서 상 연구기부금 수입으로 계상된 금액을 입력함

【산학협력수익 중 연구수익】: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Ⅰ.산학협력수익\_1.연구수익’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함

【지원금수익 중 연구수익】: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Ⅱ.지원금수익\_1.연구수익’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함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연구수익】: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Ⅲ.간접비수익\_1.산학협력수익\_1)산학협력연구수익’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함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연구수익】: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Ⅲ.간접비수익\_2.지원금수익\_1)지원금연구수익’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함

과 목		해 설
관 향	목	
Ⅰ. 산학협력수익		
	1. 연구수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정부연구수익)과 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산업체연구수익)으로 구분
	2. 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등 계약에 의한 교육운영수익
	3. 기술이전수익	지식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지식재산권이전수익)과 노하우의 대여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노하우이전수익)으로 구분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설치된 연구 및 실험 실습시설·장비 등의 사용료(설비자산사용료수익)과 토지 및 건물 등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수입(임대료수익)으로 구분
	5. 기타산학협력수익	기타의 산학협력사업수익(산업자문 등)
Ⅱ. 지원금수익		
	1. 연구수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없는 연구용역수익(정부연구수익)과 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없는 연구용역수익(산업체연구수익)
	2. 교육운영수익	교육운영수익 중 산학협력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운영수익

과 목		해 설
관 항	목	
	3. 기타지원금수익	기타의 지원금사업수익
Ⅲ. 간접비수익		
1. 산학협력수익		
	1) 산학협력연구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중 간접비수익
	2) 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 중 간접비수익
	3) 기타산학협력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 중 간접비수익
2. 지원금수익		
	1) 지원금연구수익	지원금연구수익 중 간접비수익
	2) 지원금교육운영수익	지원금교육운영수익 중 간접비수익
	3) 기타지원금수익	기타지원금수익 중 간접비수익

(출처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지침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별 해설)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능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 연구기부금수익은 발전기금 등의 전입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대학회계에서 발생하는 계정으로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에서는 연구기부금수익이 발생될 수 없음에 유의

□ 참고사항

-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간접비 원가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간접비 원가 산출자료 제출 후에 원가 계산 검증담당자가 검증 확인절차 중 발견된 중대한 결산서상 오류 조치 절차
    - ① 수정 산학협력단 결산서를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의결 및 대학 총장 결재 후 수정 결산서 및 관련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에 보고한 공문 제출 시 인정
    - ② 미수정 산학협력단 결산서를 활용하여 간접비 원가 산출 시에는 간접비산출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적용 하며, 중대한 오류로 인한 원가 산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접비 산출불가로 의견 피력 가능

〈중대한 오류 발생 사례〉

- 연구수익비율과 연간연구비에 영향을 주는 “지원금수익 중 연구수익 및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금액을 결산서와 다르게 간접비 원가계산 적용 : XX대에서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비 전액을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해당 사업비 중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이 해당 산학협력단을 거쳐 프로젝트 시행 기관에 그대로 이체됨

-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는 50억원 임에도 불구하고, 연간연구비 항목에는 지원금수익 중 연구수익 금액인 3억원으로 회계처리된 결산서를 이용하여 간접비 원가계산 적용

### (주의사항)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24조(운영계산서 작성기준) ①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수익은 동 수익이 실현된 시기를 기준으로, 비용은 동 비용이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히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 수익과 비용은 발생원천에 따라 대응 표시되어야 되며,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중대하게 어긋나는 경우에는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간접비 원가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음에 유의
- 간접비 원가계산은 원칙적으로 결산서를 기초로 산정되며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 판단은 간접비산출소위원회에서 결정

1-2-2 교육수익 산출내역

(단위 : 원)

회계구분	계정과목	교육수익 금액	비고
학교회계 (대학/법인회계)	입학금수익		
	수업료수익		
	계절학기수강료수익		
	(차감) 교내장학금		근로장학금 제외
	학교회계 교육수익 계		
산학협력단 회계	산학협력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지원금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가산) 연구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하단1-2-3 ①㉔ 상세내역 참조
	(차감) 교육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하단1-2-3 ②㉔ 상세내역 참조
	(가산) 기타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하단1-2-3 ③㉔ 상세내역 참조
	산학협력단회계 교육수익 계		
교육수익 합계			

■ 관련 산출기준

4 연구수익비율 (6)

(2) 국(공)립대학 연구수익비율

● 교육수익

- (정의) 대학회계\* 재정운영표 및 산학협력단회계 운영계산서 상 교육활동과 관련된 수익의 총계

\* 일반국립대학은 대학회계, 법인전환 국립대학은 법인회계를 의미(이하 동일)

- (인정항목) 「국립대학회계 결산 기본지침」 별표 제2호 서식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명세표상 교육활동 수익(입학금수익, 수업료수익, 계절학기수강료수익)\*,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별표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상 산학협력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지원금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 및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중에서 평생교육기관 등의 수업료는 교육수익에 포함하지 않음

- (불인정항목) 대학회계 재정운영표상 교육활동수익이 재원인 교내장학금\*, 교육부대수익(수수료 등)은 교육수익 산출 시 제외

\* 교내장학금 산출 시 근로장학금은 차감하되, 차감할 근로장학금 금액을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장학금 수혜 현황' 중 교내-근로장학금 금액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금액 산출도 허용

## ▣ 대학의 교육활동수익 구분

### 국공립대학의 교육활동수익

- 입학금수익: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대학의 학부과정, 대학원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
- 수업료수익: 대학의 정규교과과정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업료 명목으로 수취하는 금액과 감면장학금을 포함한 금액 (총액인식)
- 계절학기수강료수익: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학생으로부터 수취한 수강료 금액
- 평생교육기관 등의 수업료: 평생교육기관 등의 수업료 수익(평생교육원 등에서 개설한 강좌 또는 과정에 등록된 수강생으로부터 교육용역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취한 수업료 금액), 최고경영자과정등의 수업료 수익(비학위과정인 최고경영자과정 등에 등록된 수강생으로부터 수취한 수업료 및 기타납입금액)

### □ 검증사항

【(가산) 연구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1-2-3 R&D계수 적용사업 분류 세부산출내역” ①연구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교육수익금액(㉔) 소계와 일치해야 함

【(차감) 교육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1-2-3 R&D계수 적용사업 분류 세부산출내역” ②교육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연구수익금액(㉓) 소계와 일치해야 함

【(가산) 기타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1-2-3 R&D계수 적용사업 분류 세부산출내역” ③학교회계 혹은 기타산학협력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교육수익금액(㉔) 소계와 일치해야 함

【교육수익 합계】: 학교회계(대학/법인회계) 교육수익 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 교육수익 소계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입학금수익】: 대학회계 재정운영표 상 'II.자체수익\_1.교육활동수익\_1)입학금수익'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하며, 법인 전환국립대학 운영계산서 상 '1.등록금수익\_1.학사등록금수익\_1.학사입학금수입'과 '1.등록금수익\_2.대학원등록금수익\_1.대학원입학금수입'의 합을 입력함

【수업료수익】: 대학회계 재정운영표 상 'II.자체수익\_1.교육활동수익\_2)수업료수익'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하며, 법인 전환국립대학 운영계산서 상 '1.등록금수익\_1.학사등록금수익\_2.학사등록금수입'과 '1.등록금수익\_2.대학원등록금수익\_2.대학원등록금수입'의 합을 입력함

【계절학기수강료수익】: 대학회계 재정운영표 상 'II.자체수익\_1.교육활동수익\_3)계절학기수강료수익'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하며, 법인전환국립대학 운영계산서 상 '1.등록금수익\_3.계절학기등록금수입'을 입력함



【산학협력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Ⅰ.산학협력수익\_2.교육운영수익’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함

【지원금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Ⅱ.지원금수익\_2.교육운영수익’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함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Ⅲ.간접비수익\_1.산학협력수익\_2)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함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Ⅲ.간접비수익\_2.지원금수익\_2)지원금교육운영 수익’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함

과 목	해 설
관 항 목	
Ⅰ. 산학협력수익	
1. 연구수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정부연구수익)과 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산업체연구수익)으로 구분
2. 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등 계약에 의한 교육운영수익
3. 기술이전수익	지식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지식재산권이전수익)과 노하우의 대여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노하우이전수익)으로 구분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설치된 연구 및 실험 실습시설·장비 등의 사용료(설비자산사용료수익)과 토지 및 건물 등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수입(임대료수익)으로 구분
5. 기타산학협력수익	기타의 산학협력사업수익(산업자문 등)
Ⅱ. 지원금수익	
1. 연구수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없는 연구용역수익(정부연구수익)과 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없는 연구용역수익(산업체연구수익)
2. 교육운영수익	교육운영수익 중 산학협력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운영수익
3. 기타지원금수익	기타의 지원금사업수익
Ⅲ. 간접비수익	
1. 산학협력수익	
1) 산학협력연구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중 간접비수익
2) 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 중 간접비수익
3) 기타산학협력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 중 간접비수익
2. 지원금수익	
1) 지원금연구수익	지원금연구수익 중 간접비수익
2) 지원금교육운영수익	지원금교육운영수익 중 간접비수익
3) 기타지원금수익	기타지원금수익 중 간접비수익

(출처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지침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별 해설)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능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 교내장학금은 차감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차감하지 않고 가산항목으로 간접비 원가산출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수식 입력 등에 주의
- 근로장학금은 교내장학금 항목의 구성요소이므로 전체 교내장학금에서 근로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이 (차감)교내 장학금인데 가산하는 오류도 빈번하게 발생
- 교내장학금에 대한 금액 산정 시 대학알리미 상으로 분류된 본교, 분교 등 세분화된 분류에 따라 분산된 공시 금액을 합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교 수치만 입력하는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

□ 참고사항

- Q. 교비로 지급된 장학금액 입력 시 최근연도 공시된 수치[예를 들어 2017년 8월 간접비 원가산출 시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수치]를 이용해도 되는지 여부(대학알리미 공시는 8월 말 이후이며 장학재단 입력자료 등의 수정 가능)
- A. 교육수익 산출 시 차감되는 교내장학금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장학금 수혜 현황' 중 교내장학금에서 근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금액 산출도 허용됨.  
또한 대학알리미에 공시되는 자료는 8월말 기준으로 공시되나, 대학알리미 공시 전 대학 측에서 사전적인 자료 취합은 상반기 중에 이루어짐에 따라 대학 자체적인 사전적 수치를 이용하시고 검증시에만 대학알리미 자료를 통해 확인 예정

1-2-3 R&D계수 적용사업 분류 세부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R&D계수 적용사업	㉠연구/교육 수익금액	㉢R&D 계수	㉡연구 수익금액 (㉠*㉢)	㉣교육 수익금액 (㉠*(1-㉢))	
① 연구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BK21플러스사업		50%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		50%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0%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		0%			
	지방대학육성사업		0%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25%			
	소 계					
② 교육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BK21플러스사업		50%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		50%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0%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		0%			
	지방대학육성사업		0%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25%			
	소 계					
③ 학교회계 혹은 기타 산학협력 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BK21플러스사업		50%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		50%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0%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		0%			
	지방대학육성사업		0%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25%			
	소 계					

■ 관련 산출기준

(4) R&D계수 적용사업의 연구수익 및 교육수익 계상기준(국·사립대학 공통)

- (R&D계수 적용사업 예시) BK21플러스사업(0.5),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0.5),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0.5),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0.5), 지방대학육성사업(0.5),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0.25)
  - ※ 괄호는 사업별 R&D계수이나 간접비수익이 전혀 없는 대상 사업의 경우 0%로 적용됨
  - R&D계수 적용사업이란 사업특성상 연구사업과 교육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으로써 기획재정부 예산 분류 R&D계수를 활용하여 R&D계수를 적용한 연구사업과 비R&D계수를 적용한 교육사업으로 구분 반영
  - 단, R&D계수 적용사업 중 간접비수익이 전혀 없는 대상 사업은 교육수익으로 분류하며, 상기 예시된 사업 이외의 인력양성사업(HRD)는 교육수익 분류
- (연구/교육수익 산정) 사업별 R&D계수에 따라 연구수익과 교육수익에 각각 반영
  - 대학별 교육수익 또는 연구수익에 반영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을 교육수익 또는 연구수익에서 제외하고 R&D 계수에 따라 재분배
  - ※ (예시) R&D계수가 0.5인 사업은 총 연구비 중 연구수익 50%, 교육수익 50%로 각각 반영하고, 0.25인 사업은 연구수익 25% 반영
  - 대학회계 재정운영표 또는 운영계산서에 반영된 R&D계수 적용사업 관련 수익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을 R&D계수에 따라 교육수익 및 연구수익에 재분배
  - 산학협력단회계 운영계산서에서 연구수익 또는 교육운영수익 외의 수익 계정과목(예: 기타산학협력수익 등)에 반영된 R&D계수 적용사업 관련 수익이 있는 경우 R&D계수에 따라 교육수익 및 연구수익에 재분배

■ (적용 사례 예시)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 (R&D계수 0.5) ■

- 1) 전체금액을 연구수익에 계상했을 경우
  - 교육수익 해당액(100%×50%)을 연구수익에서 제외하고 교육수익에 포함
- 2) 전체금액을 교육수익에 계상했을 경우
  - 연구수익 해당액(100%×50%)을 교육수익에서 제외하고 연구수익에 포함
- 3) 연구수익(40%)과 교육수익(60%)에 동시 계상했을 경우
  - 연구수익에서 교육수익 해당액(20%=40%×50%)을 제외하고 교육수익에 포함
  - 교육수익에서 연구수익 해당액(30%=60%×50%)을 제외하고 연구수익에 포함
- 4) 전체금액을 대학회계 운영계산서 반영 혹은 산학협력단회계 운영계산서에서 연구수익 또는 교육운영수익 외의 수익 계정과목(예: 기타산학협력수익 등)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연구수익에서 연구수익 해당액(100%×50%)을 연구수익에 포함
  - 교육수익에서 교육수익 해당액(100%×50%)을 교육수익에 포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연구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소계】: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산학협력수익 중 연구수익 및 지원금 수익 중 연구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수익금액을 입력함

【교육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소계】: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산학협력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및 지원금수익 중 교육운영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수익금액을 입력함

【학교회계 혹은 기타산학협력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소계】: 대학회계 재정운용표 혹은 법인 회계 운영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수익 금액을 입력하고,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기타산학협력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수익금액을 입력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간접비수익이 전혀 없는 대상 사업】: 교육수익으로 분류

사업명	근거규정
□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	
-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WE-UP)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5조 (간접비 계상 불가)
-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사업비 관리 및 운영지침 (간접비 별도 계상 불가)
-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PRIME)	PRIME 사업 사업비 집행 기준 6조 (간접비 편성 불가)
-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CK-II)	대학 특성화사업 사업비 집행 기준 6. 사업비 지원 (간접비 편성 불가)
□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 FAQ(간접비 사업편성 불가)
□ 지방대학육성사업	
-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I)	대학 특성화사업 사업비 집행 기준 6. 사업비 지원 (간접비 편성 불가)
-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대학 특성화사업 사업비 집행 기준 6. 사업비 지원 (간접비 편성 불가)

(주의)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SCK)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33조 1항에 따라 간접비 계상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간접비수익이 전혀 없는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간접비 계상이 없는 것이 입증될 경우 교육수익으로 분류 가능

※ 간접비 비율 산출양식 조정방법 : “1-2-3 R&D계수 적용사업 분류 세부산출내역”에서 ⑥R&D계수를 0%로 조정하여 해당 사업의 수익금액이 교육수익금액으로만 분류되도록 조정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능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 학교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을 누락하여 간접비 원가 계산 사례 빈번

□ 참고사항

- R&D계수 적용사업은 산출기준에서 언급한 사업만 조정되며 HRD사업(교육관련 사업)은 교육수익으로 분류가 원칙임. 결산서상 금액 중 연구수익에 HRD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상 금액이라 하더라도 검증과정에서 재분류될 수 있음

1-2-4 연구수의 세부산출내역(결산서상 계정과목별 연구수의 상세내역 기재)

(1) 산학협력 연구수의 및 교육운영수의 명세

(단위 : 원)

회계계정과목	교부처	내역	수익금액	당기현금수령액	비고
합 계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별지 제4호의1서식]에 따른 산학협력 연구 및 교육운영수의 명세서 기재

(2) 지원금 수익 명세

(단위 : 원)

회계계정과목	교부처	내역	수익금액	당기현금수령액	비고
합 계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지원금수익 명세서 기재

(3) 간접비 수익 명세

(단위 : 원)

회계계정과목	교부처	내역	수익금액	비고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합 계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간접비수익 명세서 기재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결산서상 계정과목별 연구수의 상세내역 기재】: 산학협력수의 중 연구수의, 교육운영수의 및 지원금수의 중 연구수의, 교육운영수의, 기타지원금수익은 결산서 작성 시 각각 [별지 제4호의1서식] 산학협력 연구 및 교육운영 수익명세서 및 [별지 제4호의3서식] 지원금수익명세서를 교부처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교부처가 중앙 정부기관 및 산하 기관인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기관이 경우에는 '지자체', 중소기업, 대기업 등 기업을 경우에는 '산업체', 민간재단·협회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일 경우에는 '기타'로 기재

[별지 제4호의1서식]

산학협력 연구 및 교육운영 수익명세서

(단위: 원)

과목	교부처	내역	금액	당기현금수령액	비고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과목은 운영계산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교부처는 산업체, 국가, 지자체, 기타로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기재한다.
  - 민간재단·협회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일 경우에는 기타로 기재한다.
3. 내역은 사업명을 간략히 기재한다.
4.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출처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지침)

[별지 제4호의3서식]

지원금수익명세서

(단위: 원)

과목	교부처	내역	금액	당기현금수령액	비고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과목은 운영계산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교부처는 산업체, 국가, 지자체, 기타로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기재한다.
  - 민간재단·협회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일 경우에는 기타로 기재한다.
3. 내역은 지원금 사업명을 간략히 기재한다.
4.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출처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지침)

[별지 제4호의5서식]

**간접비수익명세서**

(단위: 원)

과목	교부처	내역	금액	비고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과목은 운영계산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교부처는 산업체, 국가, 지자체, 기타로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기재한다.
  - 민간재단·협회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일 경우에는 기타로 기재한다.
3. 내역은 사업명을 간략히 기재한다.
4.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출처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지침)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능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 명세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고 간편법에 따라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에 따라 동 명세서에 대한 충실한 작성이 요구됨

□ 참고사항

Q. 2-2호 서식 "연구수익 세부 산출내역"에서 당기현금수령액이 결산서 명세서 상 미기재된 경우 A. 2-2-4호 서식은 작성의 편의를 위해 결산서상 계정과목별 상세내역을 참고한 것으로 만약 산학협력단의 결산서상 금액이 2-2-4 서식과 상이한 경우에는 동 서식에 맞도록 명세서를 재작성하여 제출 해야 하며, 당기현금수령액은 해당 과제에서 당해년도에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말하며, 현금흐름표 상 금액과 일치해야 함

별지 제1-3호 서식

##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산출내역

- 작성일 : 201X년 월 일
- 작성자 : (인)
- 확인자 : (인)
- 소속기관 : (직인)

### 1-3-1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재계산

(단위 : 원)

학교회계 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 결산금액 (a)	차감금액		조정 전 결산금액 (d=a-b-c)	불인정대상 조정금액 (e)	조정 후 금액 (f=d-e)
		세입세출 결산서 수입대체 경비(b)	세입세출 결산서 국가/지자체 지원금(c)			
Ⅰ. 학교회계 행정관리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각종세금						
교육훈련비및행사비						
기타학교운영비						
복리후생비						
Ⅱ. 학교회계 시설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용역비						
합 계						

※ 학교운영비 중 수입대체경비 혹은 국가 및 지자체지원금 재원을 구분하는 방법은 재정운영표 결산금액에서 세입세출결산서 상 사업별 구분에 따른 집행잔액 중 수입대체경비 혹은 국가 및 지자체지원금 집행잔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계산  
 - 별지 제1호 서식 1-5.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④) 조정금액은 차감금액과 불인정대상조정금액의 합으로 구성

### ■ 관련 산출기준

#### ③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⑤)

##### (1) 정의 및 산출방법

- (정의) 연구와 교육을 공동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회계\*에서 지출되는 관리운영비

\* 국립대학은 대학회계, 사립대학은 교비회계, 법인전환국립대학은 법인회계를 말함

- (산출방법) 결산서에 학교운영비 혹은 관리운영비 계정과목으로 반영된 비용 중 불인정항목을 제외한 금액

## (2) 국립대학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 (인정범위) 「국립대학회계 결산 기본지침」 별표 제2호 서식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명세표 상 학교운영비 등에서 아래의 불인정항목을 제외한 금액
  - 적용대상: 대학 전체 국가R&D 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 10억원 이상
  - 대학 전체 국가R&D 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는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적 비용 성격이 강한 관리운영비(공공요금 및 각종세금, 수선유지비)만 인정
  - 학교회계(대학회계 혹은 법인회계) 학교운영비 또는 관리운영비 중에서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로 보아 연구지원부문 원가 산출에 반영된 금액은 불인정

항목구분	인정항목	불인정항목
행정관리 운영비	<인건비> - 복리후생비 항목(퇴직급여는 제외하며 기타 복리후생비만 인정) <학교운영비> - 일반수용비 항목 - 공공요금및각종세금 항목 - 교육훈련비및행사비 항목 - 기타학교운영비 항목	<학교운영비> - 급량비 항목 - 재료비 항목 - 연구용역비및개발비 항목 - 이자비용 항목 <법인회계 추가항목> - 운영비 항목 전체, 일반관리비 항목 중 기타일반관리비
시설관리 운영비	<학교운영비> - 수선유지비 항목 - 용역비 항목	<법인회계 추가항목> - 시설관리비 항목 중 기타시설관리비

- 법인전환 국립대학과 중앙행정기관이 전액 정부출연으로 설립한 특수목적 사립대학은 사립대학 공통 지원 관리운영비 인정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를 참고하여 인정항목을 산출하되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과 수입대체경비 재원은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에서 제외함
- 국립대학 대학회계에서 지출되는 학교운영비 중 세출예산 재원이 수입대체경비 혹은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인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
- \* 학교운영비 중 수입대체경비 혹은 국가및지자체지원금 재원을 구분하는 방법은 재정운영표상 학교운영비에서 세입 세출결산서상 사업별 구분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집행액과 국가 및 지자체지원금 집행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계산

## (3)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확인방법

- 국립대학의 대학회계는 국가및지자체지원금 및 수입대체경비가 별도로 구분 기재된 세출결산서(관, 항, 목 구분) 및 「국립대학회계 결산 기본지침」에 따른 재정운영표 계정과목(관, 항, 목 반드시 구분)을 기준으로 인정항목의 금액 확인

##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검증방법

- 국립대학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국립대학회계 결산 기본지침」에 따른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명세서 (관, 항, 목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출재원별 구분에 따라 구분 후 국가및지자체지원금 및 수입대체경비 재원은 우선적으로 차감 후 잔여 금액에 대해 계정과목별로는 불인정항목만을 차감하는 형식임
-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검증과 같이 세부상세내역서(지출일, 계정과목, 적요 등)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는 재정운영표 및 운영계산서 상 결산금액을 입력한 후 불인정항목을 조정하여 원가산출 대상 확정하는 방식으로 입력

### □ 검증사항

- 【Ⅰ. 학교회계 행정관리운영비, 재정운영표 결산서 금액(a)】: “1-3-2 세입세출결산서와 재정운영표 검증” Ⅰ. 학교회계 행정관리운영비 비목별 재정운영표 결산금액(a)과 일치해야 함
- 【Ⅰ. 학교회계 행정관리운영비, 차감금액\_세입세출결산서 수입대체경비(b)】: “1-3-2 세입세출결산서와 재정운영표 검증” Ⅰ. 학교회계 행정관리운영비 사업구분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 수입대체경비(b) 결산금액과 일치해야 함
- 【Ⅰ. 학교회계 행정관리운영비, 차감금액\_세입세출결산서 국가/지자체 지원금(c)】: “1-3-2 세입세출결산서와 재정운영표 검증” Ⅰ. 학교회계 행정관리운영비 사업구분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 국가/지자체 지원금(c) 결산금액과 일치해야 함
- 【Ⅰ. 학교회계 행정관리운영비, 조정 전 결산금액(d=a-b-c)】: Ⅰ. 학교회계 행정관리운영비, 재정운영표 결산서 금액(a)에서 Ⅰ. 학교회계 행정관리운영비, 차감금액\_세입세출결산서 수입대체경비(b)을 차감하고 Ⅰ. 학교회계 행정관리운영비, 차감금액\_세입세출결산서 국가/지자체 지원금(c)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해야 함
- 【Ⅱ. 학교회계 시설관리운영비, 재정운영표 결산서 금액(a)】: “1-3-2 세입세출결산서와 재정운영표 검증” Ⅱ. 학교회계 시설관리운영비 비목별 재정운영표 결산금액(a)과 일치해야 함
- 【Ⅱ. 학교회계 시설관리운영비, 차감금액\_세입세출결산서 수입대체경비(b)】: “1-3-2 세입세출결산서와 재정운영표 검증” Ⅱ. 학교회계 시설관리운영비 사업구분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 수입대체경비(b) 결산금액과 일치해야 함
- 【Ⅱ. 학교회계 시설관리운영비, 차감금액\_세입세출결산서 국가/지자체 지원금(c)】: “1-3-2 세입세출결산서와 재정운영표 검증” Ⅱ. 학교회계 시설관리운영비 사업구분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 국가/지자체 지원금 (c) 결산금액과 일치해야 함
- 【Ⅱ. 학교회계 시설관리운영비, 조정 전 결산금액(d=a-b-c)】: Ⅱ. 학교회계 시설관리운영비, 재정운영표 결산서 금액(a)에서 Ⅱ. 학교회계 시설관리운영비, 차감금액\_세입세출결산서 수입대체경비(b)을 차감하고 Ⅱ. 학교회계 시설관리운영비, 차감금액\_세입세출결산서 국가/지자체 지원금(c)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해야 함
- 【Ⅱ. 학교회계 조정 후 금액(f=d-e)】: Ⅱ. 학교회계 조정 전 결산금액(d)에서 Ⅱ. 학교회계 불인정대상 조정금액 (e)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불인정대상 조정금액(e)】: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산출은 집행내역에 대한 자원별 구분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재정운영표 결산금액 중 자원별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불인정대상에 포함

- 대학회계 재정운영표 상 발생주의 기간비용 조정사항 등으로 차이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재원을 구분할 수 없다면 전액 불인정대상 조정금액에서 조정 필요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능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1-3-2 세입세출결산서와 재정운영표 검증

(단위 : 천원)

학교회계 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 결산금액 (a)	사업구분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 결산금액				차이금액 (f=e-a)
		수입대체 경비(b)	국가/지자체 지원금(c)	학사활동 사업비(d)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금액 (e=b+c+d)	
I. 학교회계 행정관리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각종세금						
교육훈련비및행사비						
기타학교운영비(*)						
복리후생비						
II. 학교회계 시설관리운영비						
수선유지비						
용역비						
합 계						

※ 재정운영표 결산금액과 세입세출결산서 결산금액간의 차이금액은 별도 자료를 통해 소명  
 (\*) 사업구분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 상 기타학교운영비의 상세 비목별 구분내역은 별도 제출

□ 검증사항

【사업구분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 학사활동 사업비(d) 결산금액】: 사업구분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금액 입력값에서 사업구분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 수입대체경비(b) 결산금액과 국가/지자체 지원금(c)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재정운영표 결산금액(a)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각종세금, 교육훈련비및행사비, 기타학교운영비】: 대학회계 재정운영표 상 'III.학교운영비\_1.일반수용비', 'III.학교운영비\_2.공공요금및각종세금', 'III.학교운영비\_5.교육훈련비및행사비', 'III.학교운영비\_12.기타학교운영비'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함

【재정운영표 결산금액(a) 복리후생비】: 대학회계 재정운영표 상 '1.인적 비용\_2.복리후생비\_2)기타복리후생비'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함

【재정운영표 결산금액(a) 수선유지비, 용역비】: 대학회계 재정운영표 상 'III.학교운영비\_3.수선유지비', 'III.학교운영비\_7.용역비'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함

계 정 과 목		해 설
관	항 목	
I.	인적 비용	대학을 운영하는 구성원의 모든 인적비용
	1. 인건비	대학 소속 공무원, 대학회계직원 및 기타 계약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
	2.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1) 퇴직급여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시 발생하는 비용
	2) 기타복리후생비	상기에서 열거하지 않은 복리후생 목적으로 발생한 비용
	3. 실비변상인적경비	대학의 구성원이 해당 직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III.	학교운영비	학교운영비는 대학의 활동 수행 및 조직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제비용
	1. 일반수용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등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1) 소모품비	일반적으로 사용 후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구입비
	2) 도서인쇄비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간행물 및 자본형성적 도서를 제외한 도서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광고선전비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광고 및 광고료를 지급한 금액
	4) 지급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등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
	2. 공공요금및각종세금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과 각종 제세 비용
	1)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중 수도료, 전기료, 실내조명 및 냉난방에 소요되는 비용
	2) 통신비	우편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통신요금, 모사전송기 등의 회선사용료 등
	3) 세금및각종부담금	법령에 의하여 대학이 지불/부담하는 제세금,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시설 사용에 따른 각종 법정 부담금,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하여 대학이 각종 협회에 부담하는 비용
	4) 기타공공요금	상기에서 열거하지 않은 기타 공공요금
	3. 수선유지비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적으로 소요 되는 비용
	1) 건물수선유지비	건물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2) 구축물수선유지비	구축물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상적으로 소요 되는 비용
	3) 기계장치수선유지비	기계장치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상적으로 소요 되는 비용
	4) 집기비품수선유지비	집기비품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상적으로 소요 되는 비용
	5) 차량운반구수선유지비	차량운반구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6) 기타수선유지비	상기에서 열거하지 않은 기타의유형자산 등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4. 급량비	급량비는 주식비 및 부식비와 주부식 관련 연료비 및 소모품비를 포함
1) 주식비및부식비	주·부식과 관련한 재료비용
2) 연료비및소모품비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주식대 등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도구의 구입비용
5. 교육훈련비및행사비	대학구성원의 교육훈련 및 대학의 행사 등과 관련된 비용
1) 교육훈련비	대학구성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2) 학술대회등참가비	국내외 학술대회 등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3) 학교주관행사경비	각종 세미나 개최에 따른 행사경비, 교직원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재료비	교육연구 및 제품생산재료비로 지출된 금액
1) 교육연구재료비	교육연구용으로 구매하는 각종 재료비
2) 제품생산재료비	교내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물품 제조에 투입되는 각종 재료비
7. 용역비	대학 건물, 시설 등의 유지관리 용역비 및 기타용역비용
1) 시설장비관리용역비	대학의 시설 및 장비 관리를 외부 업체와 계약에 의해 위탁으로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2) 급식용역비	급식운영을 외부 업체와 계약에 의해 위탁으로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3) BTL용역비	BTL시설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BTL임대료미지급금이외에 BTL 관련 시설관리 제경비
4) 기타용역비	상기에서 열거하지 않은 용역비
8. 연구용역비및개발비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
1) 연구용역비	연구와 관련하여 교내외에서 수행되는 용역 비용
2) 연구개발비	연구 및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9. 이자비용	BTL임대료미지급금 및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1) BTL임대료이자비용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자산 취득 시 인식하는 BTL임대료미지급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2) 기타이자비용	장기연불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함에 따라 인식하는 이자비용 금액
10. 유형자산감가상각비	유형자산의 감가분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여 인식하는 금액
1) 건물감가상각비	건물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2) 구축물감가상각비	구축물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3) 기계장치감가상각비	기계장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4) 집기비품감가상각비	집기비품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5) 차량운반구감가상각비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6) 기타유형자산감가상각비	기타유형자산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11. 무형자산상각비	무형자산의 상각분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여 인식한 금액
1) 지식재산권상각비	지식재산권의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비
2) 소프트웨어상각비	소프트웨어의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비

3) 기타무형자산상각비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기타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비
12. 기타학교운영비	대학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중 상기에서 열거되지 않은 모든 비용
1)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서 회의비 및 국외출장지원비
2) 여비교통비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교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지급하는 비용
4) 임차료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5) 기타의기타학교운영비	상기에서 열거하지 않은 학교운영비

(출처 : 국립대학회계 결산 기본지침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명세서)

【사업구분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 결산금액(e)】: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학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세입세출결산서 상 세출결산 목별 조서(총괄) 재원별 금액을 입력함

※ 학교운영비 목별 예산편성 기준

- 일반수용비 :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등  
 (\*) 피복비, 특근매식비 및 일·숙직비는 ‘복리후생비’ 비목에 계상
-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 : 전기·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자동차세 등 각종 제세, 운송요금, 공탁금과 국고 체당금 및 부담금, 협회비 등
- 차량·선박·비행기유지비 : 차량·선박·비행기의 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비 및 용품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비목에 계상
- 지급 보험료 : 자동차 보험료, 건물 재해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따른 각종 보험료
- 지급 임차료 : 토지·건물·차량·전산장비·리스 등 임차료
- 수선유지비 : 건물·구축물·기계장치·비품 등 수선유지비
- 급 량 비 : 학생 급식의 주식·부식비, 급식실 연료비 및 소모품비
- 교육훈련·세미나·워크숍비 : 학술대회 등 학교 주관 행사경비
- 재 료 비 : 실험·실습, 사업용 및 시험연구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실험·실습소모성 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용 역 비 : 시설장비관리·체육시설관리·청사관리·전산운영·급식·BTL 용역비 등
- 과운영비 : 일반 업무추진에 드는 그 밖의 경비로 기본적인 조직운영 경비로서 재무과에서 수립하는 과 운영비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
- 여비교통비 :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및 관서업무비(회의비, 행사경비 등)
- 연구개발비 :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등 소요 경비(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은 편성 제외)
- 지급 이자 : BTL 상환이자, 차입금·차관 등에 대한 이자 지급액으로서 전년도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편성 및 집행
- 보 전 금 : 보상금, 배상금 및 포상금 등
- 그 밖의 운영비 : 품목별 과목 해소로 지출하기 어려운 경비 및 대학 입시업무 관련 운영수당

2. 세입·세출결산 조서

나-2. 세출결산 목별 조서(총괄)

□ 총괄

(단위 : 원)

계정	관	항	과 목 목	예산액 ①	예산 성립 후 증감②				예산 현액 ③=① ±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 ⑤	집행잔액 ⑥=③- ④-⑤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액	이용및 이체액				
합 계												
			인적경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학교운영비									
			일반수용비									
국가지원금 계정												
			인적경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일반수용비									
대학 자체수입금 등 계정												
			인적경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일반수용비									

(출처 : 국립대학 대학회계 결산서 작성시 참고사항)

※ 예산과목상 '기타학교운영비'는 지급보험료, 지급임차료, 과운영비,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보전금, 기타 운영비로 구성되며, 해당금액에 대한 비목별 상세내역과 재정운영표상 결산금액의 상세내역을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자원별 구분에 따른 국가지원금 및 수입대체경비 재원은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재정운영표 결산금액(a)와 사업구분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 결산금액(e)간의 차이금액(f=e-a)】: 재정운영표 결산금액과 세입세출결산서 결산금액간의 차이금액에 대한 별도 자료는 대학회계 결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Ⅲ. 재무제표 첨부서류, 1. 필수보충정보, 나.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

※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산출은 집행내역에 대한 자원별 구분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재정운영표 결산금액 중 자원별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불인정대상에 포함

- 대학회계 재정운영표 상 발생주의 기간비용 조정사항 등으로 차이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재원을 구분할 수 없다면 전액 불인정대상 조정금액에서 조정 필요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단위: 원)

과목	세입-세출결산서 (A)	재정운영표 (B)	차이금액 (C=B-A)	차이내역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원금				
(1)국가지원금				
가. 인건비				
수입/ 수익 총계(D)				
1. 인적경비				
(1)인건비				
가. 공무원 인건비				
지출/비용 총계(E)				
세계잉여금/운영차액 (F=D-E)				

(출처 : 국립대학 대학회계 결산서 작성시 참고사항)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내역 안분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내역이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상 자산적 경비 과목을 재무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되어 재원별 구분이 가능하나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결산상 계정과목(자산취득비 혹은 건설비 등) 전체 집행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안분하여 산출 가능

안분 산출 예시

	국가지원금	보조금및수입대체	일반사업비	합계
(1)예산상 수선유지비	100	30	50	180
(2)재무상 수선유지비				300
(3)차이금액 소명 불가(2-1) : 차이금액은 유형자산 취득비를 재무상 비용처리				120
유형자산 취득비 재원별 안분>>				
예산상 유형자산 취득비	300	50	100	450
안분비율	67%	11%	22%	
재무상 수선유지비 재원분류	80	13	27	120
공동지원부문 관리운영비 재계산>>				
재정운영표 결산금액	국가지원금 등	조정 전 금액	불인정대상 조정금액	조정 후 금액
300	100+30=130	170	93	77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 상기 사례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최종 간접비 원가 산출과 전혀 다른 원가율 산출이 될 수 있음에 따라 정확한 숙지 필요

□ 참고사항

- Q. 대학회계 세입세출결산서상 [자체수입금 등 계정, 보조금, 수입대체경비, 국가지원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조금 계정에는 사업비 지원기관별로 교육청 등 지자체,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등), 한국전문대학교 교육협의회, ~군청, 발전기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서 지원받은 사업비(군민위탁운영사업, 영어캠프운영 등)를 집행하고 있음. 이런 경우에 보조금 재원의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포함여부 질의
- A. 대학회계에서 예산상 상기와 같이 분류된 경우에는 보조금, 수입대체경비, 국가지원금으로 집행된 금액은 전액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에 포함될 수 없음
- Q. 산출기준자료 상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의 기타학교운영비는 "사업구분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 상 기타학교 운영비의 상세 비목별 구분내역은 별도 제출"에 대한 지침 제시 필요
- A. 대학회계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는 총괄적인 내역만을 제출하는 것이며, 재정운영표와 세입세출결산서간의 차이금액 등에 대해서 별도 자료 등을 통해 충분한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혹은 대학 결산담당자가 동 내용에 대해 결산 지원 회계사 등의 소명으로 같음하여 자원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불인정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반드시 자원별 구분이 가능해야 함.
- 또한 지출일자 및 적요 등의 상세내역은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며, 추가적으로 학교회계의 재정운영표가 세입세출결산서와는 상이하게 비목 등의 분류 기준을 달리하여 차이가 큰 경우에는 반드시 상세 차이내역에 대한 소명 및 차이내역에 대한 자원별 구분이 필요함.
- Q. 재정운영표 결산금액과 조정 전 결산금액을 산출할 때 수입대체경비와 국가/지자체지원금을 차감하니 결산 금액, 즉 조정 후 금액이 현저히 낮은 숫자 혹은 (-) 금액 발생  
실제 단식부기로 비용처리 시 결산금액과 복식부기로 전환 시 재정운영표상의 결산금액은 그 전년도 비용 분을 반영할 경우 전년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불인정대상 조정금액에 실제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을 (-)로 반영할 수 있는가?
- A. 학교회계 재정운영표 결산금액과 자원구분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 결산금액 간의 차이금액을 산출한 결과 (-) 값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이금액의 원인을 파악하여 자원별 구분이 가능하다면, 동 자원에 따라 불인정대상금액에서 (-)로 반영하여 세입세출결산금액으로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를 산출 가능함



## 2. 사립대학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서식 작성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201X년도 사립대학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양식

○ 대학명 :

### 2-1 간접비 및 간접비 실사율

(금액단위 : 원, 비율: %)

구분	I		II		III	IV	V			
	연구지원부문 간접비		공통지원부문 (연구·교육) 간접비					⑤연구 수익비율	⑥연간 연구비	간접비 실사율
	①연구 지원부문 인건비	②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③공통 지원부문 인건비	④공통 지원부문 관리운영비						
산출액 (비율)										

(\*) 이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 ■ 관련 산출기준

1) 적용대상 : 「2018년도 연구비관리체계평가」참여 대학

2) 원가산출 기준 : 간접비 산출 직전 2개 회계연도 결산서

※ 학교회계와 산학협력단 대상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의 최근연도 회계기간 결산서 적용

- 2018년 이후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은 직전 2개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이를 산술평균 하여 최종 간접비 산출
- 2017회계연도(2017.3.1.~2018.2.28.) 결산서를 기준으로 원가산출 및 2018회계연도(2018.3.1.~2019.2.28.) 결산서를 기준으로 원가산출하여 각각의 회계연도별 결산서를 기초로 산출된 간접비 비율을 단순 산술평균함을 말함

3) 원가산출 방법

- 대학운영 비용을 1) 연구지원부문(A), 2) 교육지원부문, 3) 연구와 교육이 혼합된 공통지원부문(B)으로 구분하고, 이 중 연구와 관련된 간접비 비율 산출

#### ■ 대학 간접비 비율 원가 산출식 = A + B ■

$$A(\text{연구지원부문}) = \frac{\text{①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 \text{②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 \text{③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text{⑦ 연간연구비}}$$

$$B(\text{공통지원부문}) = \frac{(\text{④ 공통지원부문 인건비} + \text{⑤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times \text{⑥ 연구수익비율}}{\text{⑦ 연간연구비}}$$

(\*) 학교회계는 대학회계(국공립대학), 교비회계(사립대학) 및 법인회계(법인전환국립대학)로 구분됨

- 기본 간접비 비율은 대학 간접비 비율 원가 산출식에 따라 간접비 비율 산출 후 대학간접비 원가 산출 상한 기준 적용
- 연구비관리체계평가 미참여 대학, 연구비관리체계평가에 참여한 대학 중 원가계산 미산출 및 원가계산 결과 실사율 5% 이하 대학은 5% 적용

□ **검증사항**

- 【①연구지원부문인건비】: “2-2 연구지원부문 인건비(①)”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합계와 일치해야 함
- 【②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2-3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학교(대학/법인)회계 연구진흥경비(②)” 조정 후 금액 합계와 일치해야 함
- 【③공통지원부문 인건비】: “2-4 공통지원부문 인건비(③)” 공통지원부문 인건비 합계와 일치해야 함
- 【④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2-5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④)”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조정 후 금액 합계 (1+2)와 일치해야 함
- 【⑤연구수익비율】: “2-6 연구수익비율의 계산 기준(⑤)” 연구수익비율(%)(D=A/C)과 일치해야 함
- 【⑥연간 연구비】: “2-7 연간연구비(⑥)” 연구비금액 합계와 일치해야 함
- 【⑦간접비 실사율】: 수식(⑦)=[(①+②)/⑥]+[(③+④)×⑤/⑥]에 따른 계산금액과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 【대학명】: ‘xx대학교’라고 반드시 기재하며 ‘xx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기재하지 않음
-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내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능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 **공통 참고사항**

【지침 적용기간】: 2017년도 간접비 비율 산출 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지사항, Q&A자료 등을 통해 이미 고지 및 적용된 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2017.3~2018.2)를 이용한 간접비 비율 산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공공요금 인정기준 등 지침을 통해서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2018.3~2019.2)를 이용한 간접비 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함. 2018년부터 적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점을 지침에 명시함.

【작성일: 201X년 X월 X일】: 간접비 원가산출 관련 제출자료의 제출일을 기재하고, 서식파일 제목과 제출공문에 제출 차수를 기재하여 구분함. 이후 간접비산출소위원회의 점검 결과 원가산출이 변경되어 자료를 재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기 제출일 및 차수를 변경하여 기재함  
 예) 공문제목 : 2019년도 국가R&D 간접비 비율 산출자료 제출-OO대학교(O차 제출)

별지서식 : 2019년도 사립대학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양식(O차 제출)

인건비 산출내역(O차 제출)

연구수익비율 산출내역(O차 제출)

【작성자 및 확인자】: 작성자는 간접비 원가산출 자료를 실무적으로 작성한 담당자를 기재하고 자필서명하며, 확인자는 최종적으로 작성 책임을 지는 소속 기관장이 자필서명 함. 다만 제출공문 등을 통해 소속 기관장이 전자결재 한 것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소속기관】: 총장직인 날인하여 제출함이 원칙이나, 간접비 원가산출은 대부분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xx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기재 후 산학협력단 단장 직인 날인도 허용함

2-2 연구지원부문 인건비(①)

(단위 : 원)

구 분		학교 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계	비고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급 여				
	법정부담금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 인식분 포함)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계				

□ 검증사항

【학교 회계-급여】: 별지 제2-1호 서식 “2-1-1 학교(교비)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학교회계 연구지원부문 급여 합계와 일치해야 함

【학교 회계-법정부담금】: 별지 제2-1호 서식 “2-1-1 학교(교비)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학교회계 연구지원부문 법정부담금 합계와 일치해야 함

【학교 회계-퇴직급여】: 별지 제2-1호 서식 “2-1-1 학교(교비)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학교회계 연구지원부문 퇴직급여 합계와 일치해야 함

【학교 회계-연구개발능률성과급】: 별지 제2-1호 서식 “2-1-1 학교(교비)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학교회계 연구지원부문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합계와 일치해야 함

【산학협력단 회계-급여】: 별지 제2-1호 서식 “2-1-2 산학협력단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산단회계 연구지원부문 급여 합계와 일치해야 함

【산학협력단 회계-법정부담금】: 별지 제2-1호 서식 “2-1-2 산학협력단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산단회계 연구지원부문 법정부담금 합계와 일치해야 함

【산학협력단 회계-퇴직급여】: 별지 제2-1호 서식 “2-1-2 산학협력단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산단회계 연구지원부문 퇴직급여 합계와 일치해야 함

【산학협력단 회계-연구개발능력성과급】: 별지 제2-1호 서식 “2-1-2 산학협력단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산단회계 연구지원부문 연구개발능력성과급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둘째자리 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능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2-3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학교(교비)회계 연구진흥경비(②)

(단위 : 원)

항목구분	계정과목명	결산서 금액(a)	조정 금액(b)	조정 후 금액(a-b)	비고(*)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대학연구활동지원금				
	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가산)연구관리운영비 자산화금액				
	소계				
학교(교비)회계 연구진흥경비	학교(교비)회계 집행 논문게재료				
	학교(교비)회계 집행 학술활동지원비				
	학교(교비)회계 집행 연구실안전관리비				
	소계				
합 계					

(\*) 상세내역 전산파일로 별도 제출

■ 관련 산출기준

②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1)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②

- 산학협력단 회계 운영계산서 상 간접비사업비 중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 지원비를 결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불인정항목을 제외하고 연구관리운영비로 인정
  - 연구지원비 : 1) 기관 공통지원경비, 2)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3) 연구실안전관리비, 4) 연구보안 관리비, 5) 연구윤리활동비, 6) 대학연구활동지원금, 7) 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 성과활용지원비 : 8) 과학문화활동비, 9)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산학협력단 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지원 관련 집행비용(학교행사지원, 학생활동지원 등) 및 학교기업에서 발생하는 관리운영비는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불인정항목에 해당되며, 산학협력단 연구관리 운영비 회계처리금액 중 공통 불인정항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공통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산학협력단 연구관리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교육활동 관련 집행비용(학교행사지원, 학생활동지원 등)</li> <li>- 학교기업에서 발생하는 관리운영비</li> <li>- 간접비 재원으로 지출한 연구대응자금 및 교내 연구보조비</li> <li>- 장려금 혹은 인센티브 집행액(신임교수 정착금/장려금, 장/단기 국내외 연수, 동아리 혹은 그룹 연구 지원금, 저술활동장려금, 장려금성 혹은 정액지급 논문게재료, 공모과제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지원금)</li> <li>- 업무추진비 및 경조사비 성격의 비용 집행액</li> <li>- 지원인력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성 경비(법정부담금 등)</li> <li>- 연구직접비 해당 비용 (연구과제와 관련 있는 전문가 자문수수료 및 세미나 강사료는 불인정대상이나, 기관 또는 사업단의 운영을 위한 공통 위원회 및 공통 세미나 관련 수수료는 인정대상임)</li> <li>- 배상금, 위약금, 변상금 등</li> <li>- 대학소속 교·직원 보직 및 겸직수당</li> <li>- 산학협력단에서 학교회계로 대가성 없이 지원한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액(대학 자원관리시스템 대학 부담금 불인정)</li> </ul>

1) 기관 공통지원경비

- (정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자산화된 금액 포함)

2)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정의)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자산화된 금액 포함)
  - 기관공통지원경비 상세내역과 동일한 세목으로 구성되며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어 구분 경리

## ■ 기관공통 지원경비 및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참고사항

● 하기 사례는 예시적 사례이며, 기관공통 지원경비 및 사업단/연구단 운영비로 집행될 수는 있으나 세부 집행내역이 불인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

### I. 기관공통 지원경비 및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항목

1. 산학협력진흥비: 국제협력비, 교육훈련비, 홍보비, 행사비 등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진흥에 소용되는 경비
2. 일반수용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산학협력단 운영에 소용되는 경비
3. 공공요금및제세: 전기료, 도시가스료, 상·하수도료,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과 각종 제세 비용
4. 시설장비유지비: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연구시설 장비유지비, 공통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지급임차료)
5. 기타운영비: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중 상기에서 열거되지 않은 모든 비용(지원인력 복리증진 비용, 여비교통비, 지급보험료, 용역비)

### II. 공공요금 인정기준

1. 산학협력단과 연구소 등 연구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요금 중 전기료, 도시가스료, 상·하수도료, 열에너지료에 대하여 대학에서 선집행 혹은 총괄집행하고 공공요금 보전목적으로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으로 부담비용을 청구할 것
2. 산학협력단 예산(간접비 사업비 중 기관공통지원경비 또는 대학연구활동지원경비)에 반영하고 동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할 것
3. 공공요금은 월별 또는 분기별 집행일 것
  - 월별 집행 혹은 분기별 집행은 전년도 원가배분자료를 근거로 개산하며, 최종월 정산을 실시해야 함
  - 대학은 공공요금 산출내역을 포함한 청구문서를 산학협력단에 발송하여야 함
4. 공공요금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회계처리 할 것
  - ㉠ 개별 건물별로 사용량이 계량 가능하여, 대학에 총괄 청구된 금액을 청구기준으로 건물별로 배분
  - ㉡ 대학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육부장관에 보고한 자료(\*)를 활용하여 ㉠에서 건물별로 배분한 금액을 해당 건물의 연구시설비율로 배분

(\*)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 재정정보 집계·검증·분석 및 공시에 의거 '대학 교육시설 교육용기본재산 보유행황(교지·교사 확보율)' 자료를 활용함

〈대학재정정보시스템상 대학 교육용 건물 현황 자료 요약〉

구분	고유 번호	건물명	건축 면적	연 면적	교사 면적	교육기본 시설	지원 시설	연구 시설	부속 시설	기타시설
가동										
나동										
다동										

㉠ ㉡에서 배분한 금액을 대학의 총괄납부주기에 맞추어 산학협력단에서 비용 집행

㉡ 대학에서는 ㉠의 금액을 대학에서 기집행(또는 집행예정)인 비용항목에서 차감

〈공공요금 배분 사례〉

구분	대학재정보시스템 활용			한전 청구		자체측정		배분금액	
	연면적 (㎡) (A)	연구시설 (㎡) (B)	연구시설 비율 (C=A/B)	전기 사용량 (kwh)(D)	청구요금 (E)	전기사용량 (kwh)(F)	전기사용 비율 (G=F/D)	건물별 배분요금 (H=E*G)	연구활동 배분금액 (I=C*H)
가동	10,000	0	0.0%	179,000	20,000,000	45,000	25.1%	5,027,933	-
나동	20,000	5,000	25.0%			134,000	74.9%	14,972,067	3,743,017

Ⅲ. 공공요금 불인정 기준

- ① 비용배분을 건물별 연구면적비율을 사용하지 않고 캠퍼스 전체 면적비율을 사용하는 경우
- ② 배분된 비용을 학교에 총괄납부주기와 연계하지 않고 반기, 기말 등 일괄 정산하는 경우
- ③ 산학협력단에서 비용처리한 금액을 대학회계에서는 산학협력단전입금 등으로 수입처리하는 경우

※ (경과규정) 상기 공공요금 인정기준 및 불인정기준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이용한 간접비 비율 산출 시 부터 적용함

3) 연구실 안전관리비

- (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자산화된 금액 포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및 건강검진
  -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연구활동 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 (산출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금액 중 산학협력단 회계 운영계산서 상 간접비사업비 계상 금액

###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예시

- 보험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상내용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보험료
- 교육·훈련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비용,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비용(정기, 신규채용, 연구내용 변경 시), 연구실 안전수칙·교육교재·안전관련 도서·학술지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의 구입·제작 비용 및 그 홍보·전파 등의 비용, 연구실 안전 관련 행사비 및 포상비
- 건강검진비: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일반건강 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비: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비용(다만,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시설공사 및 개조비용 등은 제외), 연구실안전환경을 위한 시설·설비의 재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 보호장비 구입비: 연구실험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의 각종 개인 보호구 및 각종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구급의약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보호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 관리 활동에 따른 개인용 작업복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검사비: 안전점검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점검측정장비구입 비용,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진단측정장비구입 비용
-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 지적사항(점검·진단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및 개선대책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 연구실 안전교육과 관련된 안전전문가 초빙 시 소요되는 강사료와 전문가 활용 및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 및 분석 비용
- 수수료: 실험실 지정폐기물 및 실험실 폐수 처리에 따른 연구실 안전을 위한 제반 수수료 및 그에 따른 소요 비용
- 여비 및 회의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연구실책임자 등이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출장 등과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 설비 안전검사비: 위험기계·기구 및 실험설비의 안전검사 비용
-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분석 비용 및 사고조사에 필요한 출장비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비용: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따른 전문가 활용 등 소요비용

####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일반적 성격의 안전관리비 제외 -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시설공사 및 개조비용 제외

4) 연구보안관리비

- (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자산화된 금액 포함)
  - 실무적용: 보안장비 구입비, 보안교육관련 비용, 연구노트 작성과 관련된 제 비용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일반 보안업체 비용 제외

5) 연구윤리활동비

- (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 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일반적 성격 비용 제외

6) 대학연구활동지원금

- (정의)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 실험실 운영 지원비: 직접비에서 해소하기 힘든 실험실 운영을 위한 경비지원(시약, 재료비, 수용비 및 수수료)
  - 학술대회 지원비: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국외 여비 포함), 패널·사회자 등 활용비, 학술대회 개최경비, 학술지 발간경비
  - 논문게재료: 논문교정료, 저서출판비, 논문별 인쇄본 구입비

###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세목 예시

- 연구용 도서구입비: 전자정보(Web-DB, e-Journal, e-book) 구입비, 학술정보용 도서 구입비,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 ※ 중앙도서관에서 구입한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 구입비용도 산학협력단 예산에 반영되어 지출되고 산학협력단 회계상 간접비사업비로 회계처리된 금액은 인정항목에 포함
- 실험실 운영지원비: 시약·재료 구입비, 연구장비 사용료, 전산처리관련 재료 및 전산 소모품

#### 학술활동 지원비 예시 사례

- 외빈 초청여비: 연구 및 학술활동 관련 외빈 초청에 따른 여비
- 학술대회비용: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제경비(인건비, 전문가활용비, 강사·연사료, 식대, 식음료비, 간식비 포함),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제경비, 학술행사를 위한 외국인 초청 제경비
- 학술지 발간경비: 공고 및 홍보비, 원고료, 심사료, 편집자 인건비, 학술지 발행 관련 비용(인쇄비, 전자출판 및 시스템구축비, 배송비 등)
- 논문게재 관련비용: 논문게재료, 외국어논문 교열비용
- 기타: 학회회비(종신회비 제외), 학술도서 저술 및 출판관련 비용(수당, 지원금 성격의 인건비 제외), 기타 학술활동에 필요한 비용
  - ※ 상기 학술활동 지원비는 산학협력단 예산에 반영되어 지출되고 산학협력단 회계상 간접비사업비로 회계처리된 금액은 전액 인정되며, 학교회계 예산에 반영되어 지출된 금액은 학술대회비용(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지원비, 참가 제경비) 및 논문게재 관련 비용만 제한적으로 인정됨에 유의

####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실험실 운영 지원비 중 인건비, 보험료, 업무추진비 등 경상지출 - 자체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하는 학술활동지원비 ※ 정액 지급대상 중 정액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 후 지급한 학술활동 지원비는 인정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학회 연회비)

#### 7)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 (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및 장비 유지 보수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 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운영비는 시설 및 장비의 수선비용 등 순수 운영에 따른 비용에 한해 인정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직접비 성격에 해당하는 비용 ※ 장비구입비, 시제품 제작경비 등 직접비 성격의 비용은 불인정

8) 과학문화활동비

- (정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특정인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집행된 홍보물품 집행액

9)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정의) 해당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자산화된 금액 포함)
  -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기술창업 출연 출자금

(2)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③)

- 학교회계(국공립대학은 대학회계, 사립대학은 교비회계)에서 연구진흥경비로 지출된 논문게재료, 학술활동지원비, 연구실안전관리비에 한하여 아래 기술된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학교회계에서 지출된 대학연구활동지원금은 제외

1) 논문게재료

- (정의) 논문교정(번역 및 교열 포함), 저서출판, 논문별 인쇄본 구입 실경비 지급액
  - 실경비 발생 적격증빙을 갖추었으나 해당 대학 자체규정에 따라 정액 한도 내에서 정산절차 수행 후 지급하는 논문게재료 포함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논문게재료	-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논문 게재건수에 따라 교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성격의 정액 논문게재료 - 학위과정 논문 지도비

2) 학술활동지원비

- (정의)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지원비,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발표(사회자, 좌장, 토론자 포함)를 위한 참가 실경비 지급액
  - 학술대회 개최 지원비는 해당 대학의 학과 및 연구기관이 주관이 되어 해당 대학 교내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대한 지원금으로 실경비만 인정
  - 학술대회 관련 국외출장여비는 해당 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 논문토론자, 좌장을 목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지급한 실경비만 인정하고, 단순 연수목적의 국외 출장여비는 불인정
  - ※ 국제저명학술지(A&HCI, SSCI, SCI(E), SCOPUS급)를 보유한 학회 및 기관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국제학술대회 경우에는 사회자, 조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위원자격 참가의 경우에도 국외 출장여비로 인정
  - 학술대회 관련 국내출장여비는 학술대회 참여 목적 구분 없이 지급한 실경비를 인정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학술활동 지원비	- 해당 대학 자체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하는 학술활동지원비 ※ 정액 지급대상 중 정액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 후 지급한 학술활동 지원비는 인정 - 연구자(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회의·세미나 참가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 시 단순 연수목적의 국외 출장여비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학회 연회비) - 소규모 세미나 및 전문가 초청 강연 개최 지원비

3) 연구실안전관리비

- (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자산화된 금액 포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및 건강검진
  -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연구활동 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 (산출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금액 중 대학회계 혹은 교비회계 예산에서 지출한 금액
-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구 분	불인정항목 산정 기준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일반적 성격의 안전관리비 제외 -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시설공사 및 개조비용 제외

(3)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확인방법

-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및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는 계정과목, 지출일자, 지출금액 및 적요(사용 목적 등 기재) 등이 포함된 상세 집행내역 전산파일 제출 확인

□ 검증사항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소계】: “기관 공통지원경비”부터 “(가산)연구관리운영비 자산화금액”까지 합산한 금액을 기재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소계】: “학교회계 집행 논문게재료”부터 “학교회계 집행 연구실안전관리비”까지 합산한 금액을 기재

【계】: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와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재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결산서금액(a)】: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Ⅲ.간접비사업비\_2.연구지원비’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함

【조정금액(b)】: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에 따른 불인정대상 금액을 양수(+)로 기재

【조정 후 금액(a-b)】: 결산서 금액(a)에서 조정금액(b)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

항	목	해설
2.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2)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의 운영경비
3)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안전교육비, 보험료 등)
4)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보안을 위한 필요경비(보안장비구입비, 보안교육비 등)
5)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6)	연구개발준비금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등에 따라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관련 경비
7)	대학 연구활동지원금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
8)	대학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3. 성과활용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홍보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단, 지식재산권으로 자산화된 금액은 제외함)

(출처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지침서)

□ 참고사항

【(가산)연구관리운영비 자산화금액】

- ① (원칙) 당기 중 간접비 재원으로 집행된 금액 중에서 자산화된 금액을 기재하되, 당기 이전에 집행된 건설중인자산, 선급금 등이 당기 중 대체됨에 따라 증가된 자산 금액은 자산화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② (간편법) 현금흐름표상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에 포함된 당해년도 집기비품 취득지출액과 지식재산권 취득지출액을 기재

항	목	해설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투자활동이란 비유동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의 취득 활동을 말함
	2) 유형자산취득지출	
	- 집기비품	
	3) 무형자산취득지출	
	- 지식재산권	

(출처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지침서)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사립대학의 경우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상 「4311 연구비」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된 비용은 연구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이므로 교비회계 연구진흥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운영계산서 상 「4320 학생경비」 (실험실습비, 논문심사비 등)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된 비용은 학생 교육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

이므로 교비회계 연구진흥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교비회계 중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집행된 금액은 교비회계 연구진흥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 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금액에 포함된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자원 구분 또는 계정과목 구분 없이 인정함.

**〈 사립학교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해설 〉**

**1) 연구비**

가. 연구비 및 연구관리비

연구비는 교직원등에 대한 연구비 지급액과 연구의 부수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도서구입 및 인쇄비 등의 연구관리비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비 및 연구관리비의 구분은 해당 교직원 및 연구소에 집행되는 연구활동 관련 개별지원금은 연구비로 처리하고 연구관리비는 연구 활동을 관리할 목적으로 집행하는 공통경비 및 연구관리부서의 경비로 구분한다.

**2) 학생경비**

나. 실험실습비

실험실습비란 대학교의 각 학과의 교육과정에 필수적인 실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다. 논문심사비

논문심사비는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부분에 대해 지출되는 직접비 성격의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으로 논문심사료수입과 대응된다.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회계	학교회계	
4200	4230 운영비	관리·운영비	○	○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현물식사대(급여 시 지급하는 식대수당은 제외한다)와 의복·개인장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  교직원의 교육·훈련에 지출하는 비용  감사·세무·감정 등 일반 용역에 지출하는 비용  업무추진에 특별히 드는 비용  신문 공고, 홍보용 책자, 기념품 등의 홍보용품 제작경비  각종 회의에 지출하는 비용
		4231	○	○	
		복리후생비	○	○	
		4232	○	○	
		교육·훈련비	○	○	
		4233	○	○	
		일반용역비	○	○	
		4234	○	○	
	업무추진비	○	○		
	4235	○	○		
	홍보비	○	○		
	4236	○	○		
	회의비	○	○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회계	학교회계		
4300 연구학생경비	4310 연구비	4237 행사비	○	○	입학식·졸업식·개교기념식 등의 행사에 지출하는 비용	
		4238 선교비	○	○	종교계 법인 및 학교의 선교활동비	
		4239 기타운영비	○	○	그 밖의 운영비	
		4311 연구비	×	○	교원 및 직원 연구비	
		4312 연구관리비	×	○	연구용 도서 구입, 연구결과 보고서 출판 등에 지출하는 각종 비용	
		4320 학생경비	4321 교외장학금	○	○	기부금 수입 등 외부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4322 교내장학금	○	○	(등록금회계) 등록금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비등록금회계) 적립금 및 적립이자, 수입이자 등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4323 실험실습비	×	○	실험·실습교육에 지출하는 각종 비용(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는 1314 기계·기구 매입비에 계상한다)
		4324 논문심사료	×	○	논문심사에 드는 비용(5331 논문심사수입과 대응)	
		4325 학생지원비	×	○	교내신문 발행, 교내방송, 대학지 발간, 학생서클 보조 및 학생행사 보조 등 학생지원 및 복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각종 비용	
	4329 기타학생경비	×	○	그 밖의 학생경비		

(출처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산학협력단 연구관리운영비 상세 집행내역 전산파일】: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계정과목, 지출일자, 지출금액, 거래처명, 적요(사용목적 등 기재), 간접비 인정여부, 불인정사유, 전표번호 등이 포함된 양식을 엑셀파일로 제출

- 상세 집행내역 양식에서 각 계정과목별 지출금액의 합계는 결산서 금액(a)과 일치해야 하고, 간접비 인정여부에서 '불인정'으로 분류된 지출금액의 합계는 조정금액(b)과 일치해야 함
- 거래처명은 적요의 불충분성 보완 및 내부거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기재하여야 함. 다만 회계시스템 내 전표 상 거래처명이 없는 항목은 빈칸으로 제출 가능함.

〈연구관리운영비 집행내역 예시\_사립대학〉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지출일자	지출금액	거래처명	적요	간접비 인정여부 (*1)	불인정 사유 (*2)	전표번호	비고

- (\*1) 인정, 불인정으로 구분 기재
- (\*2) 간접비로 불인정한 사유를 간략히 기재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 상세 집행내역 전산파일】: 재원 또는 회계명, 운영계산서 상 계정과목, 지출일자, 지출금액, 거래처명, 적요(사용목적 등 기재), 간접비 계정과목 및 전표번호 등이 포함된 양식을 엑셀파일로 제출

- 상세 집행내역 양식에서 각 계정과목별 지출금액의 합계는 학교회계 운영계산서 상 계정과목 금액과 일치해야 하고, 간접비 인정여부에서 '인정'으로 분류된 지출금액의 합계는 조정 후 금액(a-b)와 일치해야 함
- 즉, 연구진흥경비 집행내역에 포함될 운영계산서 계정과목의 경우에는 해당 계정과목의 전체 내역을 기재하고, 그 중 간접비로 인정받을 항목은 간접비 인정여부란에 '인정'으로 기재할 것

(추출자료의 완전성 및 신뢰성 확보 목적)

〈연구진흥경비 집행내역 예시\_사립대학〉

재원 (*1)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지출일자	지출금액	거래처명	간접비 인정여부 (*2)	적요	간접비 계정과목 (*3)	전표번호

- (\*1)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등을 구분 기재
- (\*2) 인정, 불인정으로 구분 기재
- (\*3) 간접비 인정여부가 '인정'인 경우에만 논문게재료, 학술활동지원비, 연구실안전관리비로 구분 기재

□ 오류사례

- 장려금(인센티브)성 비용 등 불인정항목 집행액을 연구지원 부문 관리운영비에 포함하여 불인정됨
- 기관 공통지원경비와 사업단·연구단 운영비로 회계처리한 인건비 집행액을 연구지원 부문 관리운영비에 포함하여 불인정됨
- 논문게재료, 학술활동지원비 및 연구실안전관리비 이외의 비용을 연구진흥경비에 포함하여 불인정됨

2-4 공통지원부문 인건비(③)

(단위 : 원)

구 분		학교 회계	산학협력 단 회계	계	비고
공통지원부문 인건비	급 여				
	법정부담금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당기 인식분 포함)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계				

□ 검증사항

【학교 회계-급여】: 별지 제2-1호 서식 “2-1-1 학교(교비)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학교회계 공통지원부문 급여 합계와 일치해야 함

【학교 회계-법정부담금】: 별지 제2-1호 서식 “2-1-1 학교(교비)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학교회계 공통지원부문 법정부담금 합계와 일치해야 함

【학교 회계-퇴직급여】: 별지 제2-1호 서식 “2-1-1 학교(교비)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학교회계 공통지원부문 퇴직급여 합계와 일치해야 함

【학교 회계-연구개발능률성과급】: 별지 제2-1호 서식 “2-1-1 학교(교비)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학교회계 공통지원부문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합계와 일치해야 함

【산학협력단 회계-급여】: 별지 제2-1호 서식 “2-1-2 산학협력단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산단회계 공통지원부문 급여 합계와 일치해야 함

【산학협력단 회계-법정부담금】: 별지 제2-1호 서식 “2-1-2 산학협력단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산단회계 공통지원부문 법정부담금 합계와 일치해야 함

【산학협력단 회계-퇴직급여】: 별지 제2-1호 서식 “2-1-2 산학협력단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산단회계 공통지원부문 퇴직급여 합계와 일치해야 함

【산학협력단 회계-연구개발능률성과급】: 별지 제2-1호 서식 “2-1-2 산학협력단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의 산단회계 공통지원부문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2-5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④)

(단위 : 원)

구분 (학교회계 운영계산서)	학교(교비)회계			구분 (학교회계 운영계산서)	학교(교비)회계		
	운영계산서 결산서 금액(A)	조정 금액 (B)	조정 후 금액 (A-B)		운영계산서 결산서 금액(A)	조정 금액 (B)	조정 후 금액 (A-B)
I. 학교(교비)회계 행정관리운영비				II. 학교(교비)회계 시설관리운영비			
여비교통비				건축물관리비			
소모품비				장비관리비			
인쇄·출판비				시설용역비			
난방비				보험료			
전기·수도료				리스·임차료			
통신비							
각종세금·공과금				소계(2)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일반용역비							
소계(1)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계(1+2)							

■ 관련 산출기준

③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⑤)

(1) 정의 및 산출방법

- (정의) 연구와 교육을 공동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회계\*에서 지출되는 관리운영비
- \* 국립대학은 대학회계, 사립대학은 교비회계, 법인전환국립대학은 법인회계를 말함
- (산출방법) 결산서에 학교운영비 혹은 관리운영비 계정과목으로 반영된 비용 중 불인정항목을 제외한 금액

(2) 사립대학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 (인정범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상 관리운영비로 분류되는 행정관리운영비 및 시설관리운영비 중에서 아래의 불인정항목을 제외한 금액
  - 적용대상: 대학 전체 국가R&D 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 10억원 이상
  - 대학 전체 국가R&D 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비용 성격이 강한 관리운영비(난방비, 전기·수도료, 통신비, 건축물관리비, 장비관리비)만 인정
  - 학교회계(교비회계) 관리운영비 중에서 학교회계 연구진흥경비로 보아 연구지원부문 원가 산출에 반영된 금액은 불인정

항목구분	인정항목	불인정항목
행정관리 운영비	-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인쇄·출판비, 난방비, 전기·수도료, 통신비, 각종세금·공과금, 지급수수료 -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일반용역비	- 차량유지비 - 업무추진비, 홍보비, 회의비, 행사비, 선교비, 기타운영비
시설관리 운영비	- 건축물관리비, 장비관리비, 시설용역비, 보험료, 리스·임차료	- 조경관리비, 박물관관리비, 기타시설관리비

- 사립대학 교비회계에서 지출되는 관리운영비 중 전입금 및 수입대체경비 재원인 비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는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에서 제외되되, 비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가 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사립대학에 한해 비등록회계 관리운영비를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로 의제가능

### (3)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확인방법

- 사립대학의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를 구분 기재한 운영계산서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인정항목의 금액 확인
-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항목 분류는 결산서상 분류기준에 의함

### ■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검증방법

- 사립대학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운영계산서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불인정항목만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함
-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검증과 같이 세부상세내역서(지출일, 계정과목, 적요 등)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는 재정운영표 및 운영계산서 상 결산금액을 입력한 후 불인정항목을 조정하여 원가산출 대상 확정하는 방식으로 입력

#### □ 검증사항

【학교(교비)회계 조정 후 금액(A-B)】: 학교(교비)회계 운영계산서 결산서 금액(A)에서 조정금액(B)를 차감한 금액과 일치해야 함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 계(1+2)】: Ⅰ.학교(교비)회계 행정관리운영비 조정 후 금액 소계와 Ⅱ.학교(교비)회계 시설관리운영비 조정 후 금액 소계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학교(교비)회계 운영계산서 결산서 금액(A)】: 학교(교비)회계 운영계산서 상 '4200 관리·운영비' 중 인정비목 항목의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함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회계	학교회계			
4200 관리·운영비	4210 시설관리비		○	○			
			○	○			
		4211 건축물관리비	○	○	건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비		
		4212 장비관리비	○	○	공구, 비품, 기계·기구류의 수선 및 수리비		
		4213 조경관리비	○	○	조경·운동장 및 구축물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4214 박물관관리비	×	○	박물관 및 유물 관리에 지출하는 각종비용		
		4215 시설용역비	○	○	청소·경비 등 시설용역 비용		
		4216 보험료	○	○	건축물·시설물·동산 등의 재해보험료		
		4217 리스·임차료	○	○	토지·건물·기계기구 등의 리스료 및 임차료		
		4219 기타시설관리비	○	○	그 밖의 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4220 일반관리비			○	○	
			4221 여비교통비	○	○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	
			4222 차량유지비	○	○	차량 유지에 드는 유류비·수리비 등 (다만, 보험료는 4216 보험료에 계상하고, 자동차세는 4228 각종 세금·공과금에 계상한다)	
			4223 소모품비	○	○	일반소모품 등의 구입비용(복사용지·프린트용지·간행물구독료 등 각종 사무용품비)	
	4224 인쇄·출판비		○	○	각종 서식 및 유인물의 인쇄비, 제본비 등		
	4225 난방비		○	○	난방 등에 드는 연료구입비 등		
	4226 전기·수도료		○	○	전기·수도요금		
	4227 통신비		○	○	전신·전화·우편요금 등의 통신비		
	4228 각종세금·공과금		○	○	법인 및 학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공과금, 각종 협회비 및 자동차세		
	4230 운영비	4229 지급수수료	○	○	면허·허가·인가·등록 및 각종 증명 등의 발급신청에 드는 수수료		
		4231 복리후생비	○	○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현물식사대(급여 시 지급하는 식대수당은 제외한다)와 의복·개인장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		

과목			적용회계		해설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 회계	
		4232 교육·훈련비	○	○	교직원의 교육·훈련에 지출하는 비용
		4233 일반용역비	○	○	감사·세무·감정 등 일반 용역에 지출하는 비용
		4234 업무추진비	○	○	업무 추진에 특별히 드는 비용
		4235 홍보비	○	○	신문 광고, 홍보용 책자, 기념품 등의 홍보용품 제작경비
		4236 회의비	○	○	각종 회의에 지출하는 비용
		4237 행사비	○	○	입학식·졸업식·개교기념식 등의 행사에 지출하는 비용
		4238 선교비	○	○	종교계 법인 및 학교의 선교활동비
		4239 기타운영비	○	○	그 밖의 운영비

(출처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제17조 관련))

【학교(교비)회계 조정금액(B)】: 학교(교비)회계 운영계산서 상 '4200 관리·운영비' 중 비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 등 불인정 항목의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함

【사립대학 교비회계에서 지출되는 관리운영비 중 전입금 및 수입대체경비 재원인 비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는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에서 제외하되, 비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가 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사립대학에 한해 비등록회계 관리운영비를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로 의제가능】: 대학별로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의 재원 규모가 상이한 점을 인정한 규정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등록금회계 재원만이 공통지원부문 관리운영비에 포함됨. 다만, 해당 대학 전체 비등록회계 관리운영비가 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개별 항목별로 등록금회계나 비등록금회계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함

※ 별지 제2호서식 2-5를 작성할 경우에 운영계산서 결산서금액은 등록금과 비등록금을 모두 포함한 후에 조정금액에서 비등록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대학 임의 판단에 의해 조정금액을 비등록금이 아닌 상이한 금액으로 입력할 수 없음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 비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를 차감하지 않고 학교(교비)회계 운영계산서 상 금액 전체를 입력하여 간접비 원가 산출이 과다하게 발생

Q. 대학 교비 결산서에는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생활관회계, 평생교육원회계, 학교기업회계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비등록금회계의 범위 질의

A. 등록금회계 이외의 회계는 대학자체적인 분류가 어떤 항목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비등록금 회계로 분류

2-6 연구수익비율의 계산 기준(⑤)

(단위 : 원)

연구수익(A)	교육수익(B)	계(C=A+B)	연구수익비율(%) (D=A/C)

■ 관련 산출기준

4 연구수익비율 (⑥)

- (정의) 연구수익비율은 연구수익과 교육수익의 합계에서 연구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 연구수익 :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연구활동과 관련된 수익
  - 교육수익 :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수익

$$\text{※ 연구수익비율} = \frac{\text{연구수익}}{(\text{연구수익} + \text{교육수익})}$$

□ 검증사항

- 【연구수익(A)】: 별지 제1-2호 서식 “1-2-1 연구수익 산출내역” 연구수익금액 합계와 일치해야 함
- 【교육수익(B)】: 별지 제1-2호 서식 “1-2-2 교육수익 산출내역” 교육수익금액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연구수익비율(%) (D=A/C)】: 수식(A/[A+B])에 따른 계산금액과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내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능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2-7 연간연구비(⑥)

(단위 : 원)

구 분	계정과목명	연구비 금액	비고
산학협력 단 회계	산학협력비 중 산학협력연구비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		
	가산)산학협력연구비 및 연구비 중 연구장비 자산화금액		
	가산)교육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2-2-1 참조
	차감)연구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2-2-1 참조
	가산)기타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2-2-1 참조
	소계		
학교회계	연구기부금		
연간연구비 계			

(\*) R&D계수 적용사업 : BK21플러스사업,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사회수요맞춤형 인재양성사업, 지방대학육성사업,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 관련 산출기준

⑤ 연간연구비 (⑦)

(1) 연간연구비 산정기준

- (정의) 산학협력단의 운영계산서 상의 연구수익과 대응되는 비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상 연구개발용역 성격의 금액
- (인정항목) 대학회계의 연구기부금 수입 및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산학협력비 중 산학협력연구비,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
  - 산학협력연구비 또는 지원금사업 연구비 비목에서 연구장비·재료비 등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연구장비 자산화 금액을 연간연구비에 포함
  - R&D계수 적용사업 비목에서 연구장비·재료비 등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R&D계수에 따라 연구수익으로 분배되는 금액을 연간연구비에 포함
  - 연간연구비는 개별 대학이 지출한 연간 연구비 총액 기입(간접비사업비 제외)

(2) R&D계수 적용사업의 연간연구비 계상기준

- R&D계수에 따라 연구수익에 포함되는 R&D계수 적용사업의 경우 연간 연구비에 반영

- R&D계수 적용사업이 연간연구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R&D계수에 따라 연간연구비에서 차감 반영
  - R&D계수 적용사업이 연간연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R&D계수에 따라 연간연구비에 반영
- ※ (예시) R&D계수가 0.25인 R&D계수 적용사업은 총 사업비의 25%, 0.5인 R&D계수 적용사업은 총 사업비의 50%를 각각 연간연구비에 반영

### ■ R&D계수 적용사업 연간연구비 적용방법

- 연간연구비 산출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R&D계수 적용사업도 간접사업비를 제외한 직접비만으로 R&D계수에 따라 재분배하여야 하나 검증절차 간소화 및 실무편의를 위해 간편 적용 허용
- 간편 적용방법: 연간연구비의 가산항목은 교육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 해당액을, 차감항목은 연구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 해당액을 기재
- 해당 대학에서 관련 R&D계수 적용사업 관련 직접연구비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적용 가능

#### □ 검증사항

【(가산) 교육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별지 제2-2호 서식 “2-2-1 연구수익 산출내역” (가산) 교육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하단 2-2-3 ②㉔ 상세내역] 과 일치해야 함

【(차감) 연구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별지 제1-2호 서식 “2-2-1 연구수익 산출내역” (차감) 연구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하단2-2-3 ①㉔ 상세내역] 과 일치해야 함

【(가산) 기타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별지 제2-2호 서식 “2-2-1 연구수익 산출내역” (가산) 기타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하단2-2-3 ③㉔ 상세내역]과 일치해야 함

【연간연구비 계】: 산학협력단 회계 연구비금액 소계와 학교회계 연구기부금 합계와 일치해야 함

####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산학협력비 중 산학협력연구비】: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I. 산학협력비\_1. 산학협력연구비’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함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II. 지원금사업비\_1. 연구비’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함

과 목		해 설
관	항 목	
I. 산학협력비		
	1. 산학협력연구비	산학협력연구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제 경비
	2. 교육운영비	산학협력교육과정(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

과목	해설
관항목	
3. 지식재산권비용	지식재산권의 운영, 기술이전, 사업화촉진 및 이전에서 발생하는 경비, 단, 자산화하지 않는 지식재산권 관련비용은 포함됨
4. 학교시설사용료	대학의 유·무형자산을 이용함에 따라 대학에 지급하는 비용
5. 기타산학협력비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II. 지원금사업비	지원금사업수행에서 발생하는 제 경비
1. 연구비	지원금으로 수행하는 연구비
2. 교육운영비	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교육과정운영비
3. 기타지원금사업비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와 교육운영비를 제외한 기타비용

(출처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지침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별 해설)

【(가산) 산학협력연구비 및 연구비 중 연구장비 자산화금액】: 연구장비 자산화금액이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연구와 관련된 기계장치, 실험실습장비, 운송설비 및 기타의 부속설비를 계상하는 계정'인 기계기구로 회계처리 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집행액을 말함

- 자산화금액 산출을 위한 간편법 적용 : 아래의 명세서상 금액 입력 가능

① 현금흐름표 상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_기계기구 취득 지출분을 입력

관	항	목	목	항	관
II. 현금유출액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2) 유형자산 취득지출			
		1) 기계기구 취득지출			

② 유형자산명세서 상 기계기구 계정과목의 당기 증가액 입력

과목	기초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기말잔액	감가상각누계액	미상각잔액	비고
기계기구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능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별지 제2-1호 서식

### 인건비 산출내역

- 작성일 : 201X년 월 일
- 작성자 : (인)
- 확인자 : (인)
- 소속기관 : (직인)

#### 2-1-1 학교(교비)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상세구분	부서	국가 R&D실적 판단	급여	법정부담금	퇴직급여	연구개발 능력 성과급 등	인건비 계
연구 지원 부문	대학소속 산학협력단 전담인력	연구기획팀						
		연구관리팀						
		소 계						
	대학 부속연구 기관 (연구소 등)	○○연구소						
		○○연구센터						
		소 계						
	학교회계 연구지원부문 합계							
공통 지원 부문	대학소속 산학협력단 전담인력	연구기획팀						
		연구관리팀						
		소 계						
	대학 부속연구 기관 (연구소 등)	○○연구소						
		○○연구센터						
		소 계						
	공통지원 인정부서	회계팀						
		구매팀						
		소 계						
	단대 및 대학원 등 행정지원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소 계						
	학교회계 연구지원부문 합계							
교육지원부문	교육지원부서							
합 계								

※ 참고

- 국가R&D실적 판단은 대학 알리미 공시자료 등 활용하여 연구과제수 및 연구비 총액 기재 (예, 5건/3.5억)
- 부서명은 소속 부서의 최소단위(과, 팀 등)까지 구분하고 반드시 기재하며, 교육지원부문은 일괄기재 가능
- 대학 알리미 공시자료 상세내역 전산파일(Excel) 별도 제출

## ■ 관련 산출기준

### 1 연구지원부문 및 공통지원부문의 인건비 기준 (①, ④)

#### (1) 연구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 및 교육지원부문 해당부서 구분

##### 1) 연구지원부문 해당부서

가. 정의 :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부서\*만을 지원하는 부서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부문만을 전업으로 지원하는 연구지원 전담부서

\* 연구부서 : 산학협력단 사업부서, △△연구소, OO연구센터, XX 연구단

나. 예시부서 : 산학협력단 지원부서,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 지원부서, 대학 부설 연구소 지원부서

##### 다. 분류기준

○ 산학협력단 지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산학협력단 자체임용직원\* 및 대학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산학협력단 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조교 등의 기타직원 및 한 개 또는 다수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으로 정산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연구행정지원인력 포함

- 산학협력단 지원부서 담당인력은 최근연도 대학 알리미에 공시된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 현황」에 반영된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학알리미 공시인원과 실제근무 인원과의 차이는 별도 자료 제출

• 산학협력단 지원부서는 산학협력단 연구기획, 연구관리, 산업체연계, 산학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창업보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부서를 말함

• 산학협력단 지원부서 구분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기준으로 분류하여 해당업무 담당자 인건비 (산단 운영계산서 상 “간접비사업비”로 회계처리 분)만 인정

- 산학협력단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대학 소속직원은 대학 전체 국가R&D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학만 적용되며, 10억원 미만인 대학의 경우 공통지원부문으로 분류

- 산학협력단 소속 대학 파견직원은 파견자의 실제 근무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가R&D실적이 연간과제수 5건 이상이고 연간 연구비 총액 3억원 이상인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공통지원부문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교육지원부문으로 분류

## 산학협력단 업무 및 인력구성

### 〈산학협력단 지원부서 범위〉

- 연구기획 : 산학협력·연구에 관한 기획, 산학협력·연구의 진흥, 각종 통계 및 성과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
- 연구관리 : 연구비/연구과제 관리, 교원 연구 수행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 산학협력단 내 연구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 산업체연계 : 산학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창업보육 등 산학협력단 내 산업체 연계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자
- 산학연계 : 산업자문(기술자문, 기업컨설팅), 교육운영(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현장실습지원 등), 설비자산(연구 및 실험·실습시설·장비)운영을 수행하는 직원
- 기술이전·사업화 : 특허관리(출원, 등록, 유지 관련 행정관리 업무), 기술정보관리, 연구자 상담, 기업상담(지재권 협상·계약 기술마케팅), 기술지주회사 및 학교기업 설립·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학생, 기술지주회사 및 학교기업 소속 직원 제외)
- 창업보육 : 창업보육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 기타 :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산학협력단 직원(국책사업단 또는 지방비사업단 소속의 연구원 및 직원은 제외)

### 〈산학협력단 고용주체별 인력 구분〉

- 겸직교원 : 산학협력단에 겸직으로 근무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산학협력단장, 부서장,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 대학 소속직원 : 대학 총장 명의로 임명된 직원(겸직교원 제외) 중 산학협력단 전담인력으로 발령받은 직원
- 산학협력단 자체임용직원 :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임명되어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는 직원(겸직교원 제외)
- 산학협력단 소속 대학 파견직원 :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임명되어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실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 〈산학협력단 고용형태별 인력 구분〉

- 정규직 : 총장 및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발령을 받은 직원으로 정규직으로 고용된 직원
- 계약직 : 총장 및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발령을 받은 직원으로 계약직으로 고용된 직원
  - 무기계약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지만 임금이나 복지수준은 정규직과 같거나 그보다 못한 수준에 유지되고 있는 직원(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총 근무기간 2년 초과한 자로서 매년 연봉계약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 기간제계약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으로서 계약 기간이 2년 이하인 직원
- 기타직원 : 산학협력단 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조교 등의 직원

(출처: 교육부 및 대학공시정보센터의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

- 대학 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의 지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부속연구기관별 국가R&D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연구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국가R&D실적은 있으나 연간 연구비 총액이 1억원 미만의 대학 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의 지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공통지원부문 분류
  - 국가R&D실적이 없는 대학 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의 지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교육지원부문으로 분류
- ※ 대학 부설 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 해당 대학의 유무 확인은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 상 「13-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자료 이용
- (\*) 대학알리미 ‘대학별검색’ 중 목록보기 ‘교육여건\_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자료 이용하며, 대학알리미에 공시되지 않은 연구소는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의 범위에서 제외

라. 국가R&D실적 판단

- 국가R&D실적 판단기준은 연구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 및 교육지원부문 해당부서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해당 대학의 실제 국가R&D 수행 규모와는 상이함
  - 국가R&D실적은 과학기술분야 및 사회인문분야 등을 포함한 정부수탁사업의 연구과제수 및 연구비 총액이며, 최근연도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연구비수혜실적(중앙정부 연구과제수 및 연구비)\* 활용을 원칙으로 함
  - (\*) 대학알리미 연구비수혜실적은 중앙정부, 교내연구비,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민간, 외국 및 대응자금 연구비로 구분됨
- 대학 전체,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지원인력에 대한 공통지원부문 해당여부
  - 교원의 소속기준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최근연도 대학알리미 공시 연구비수혜실적을 이용하여 판단
- 대학 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 지원부서 연구지원부문 해당여부는 대학 자체 통계기준 분류에 따른 연구비수혜실적을 별도로 확인하여 판단
  - 교원의 소속기준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최근연도 대학알리미 공시 연구비수혜실적 원시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학 자체적으로 부속연구기관별로 재분류하며, 교원의 부속연구기관 중복등록도 가능

## ■ 국가R&D실적 판단기준 참고사항

- 최근연도 대학알리미 공시 연구비수혜실적은 원가산출대상 당해년도에 공시된 자료로, 대학 알리미에 공시된 연구비 수혜실적과 원가산출대상 연간 연구비와 차이가 발생함에 유의
  - 대학알리미 연구비수혜실적 : 학과별 전임교원의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 산출
  - 간접비 원가산출기간 : 직전연도 3월 1일부터 당해년도 2월말까지 결산서 기준 산출
- 대학 전체,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지원인력 국가R&D 실적
  - 최근연도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만을 이용하여 연구과제수 및 연간 연구비 총액 조건을 판단
  -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이외 별도의 대학 자체 통계기준으로 재 산출된 자료를 근거로 국가R&D 실적 판단은 불허 (예를 들어 연구책임자가 전임교원이외인 경우에는 국가R&D실적 판단 대상에서 제외됨)
- 대학 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 국가R&D실적
  - 최근연도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연구비수혜실적 원시데이터를 기초로 부속연구기관별로 재분류된 대학 자체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함
  -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교원의 소속 학과 및 부속연구기관 겸직으로 인한 중복 집계 가능)
  - 연구협약서 상 부속연구기관이 명시된 경우 명시 기준으로 산출
  - 연구과제 전산 입력 시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정보에 과제실적 귀속연구소를 선택하는 등 대학 자체기준 통계기준을 이용하여 실적 집계 가능
- 국책사업단 또는 지방비사업단 소속 직원의 경우 부속연구기관의 직원으로 인정
  - 국책사업단 또는 지방비사업단 :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R&D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기간 설치·운영되는 사업단
- 대학알리미 연구비 수혜실적은 교내/ 교외(중앙정부/ 지자체/ 외국/ 민간)로 구분
  - 교내 : 대학자체(교내)에서 지원한 연구비
  - 중앙정부 : 중앙정부(지자체 제외) 및 각 부처 산하 기관에서 지원한 연구비
  -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기관에서 지원한 연구비
  - 외국 : 외국정부, 민간 관계없이 외국에서 지원한 연구비
  - 민간 : 정부 이외의 민간 사업체, 연구소 등에서 지원한 연구비

마.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활용

- 국가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최근연도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활용하며, 간접비 산출기간의 공시자료 이용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시기(자료기준일)
항목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가. 연구비 수혜 실적	8월(직전 1.1~12.31)
	12-자-2.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 현황	6월(당해년도 4.1)
항목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8월(당해년도 4.1)

-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는 연구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 및 교육지원부문 해당부서 구분을 위한 판단기준으로만 활용

■ (적용 사례 예시) 2019년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적용 ■

- 1) 2017년도 연구비 수혜실적의 자료기준일은 2017.1.1. ~ 2017.12.31.이며, 대학알리미에는 2018년 8월 중 공시  
2018년도 연구비 수혜실적의 자료기준일은 2018.1.1. ~ 2018.12.31.이며, 대학알리미에는 2019년 8월 중 공시
- 2) 2017년도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과 대학 부설연구소 현황은 2018.4.1.을 자료 기준으로 하며, 대학알리미에는 2018년 6월과 8월 중 공시  
2018년도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과 대학 부설연구소 현황은 2019.4.1.을 자료 기준으로 하며, 대학알리미에는 2019년 6월과 8월 중 공시  
(적용기준) 한국연구재단 조사시스템(KRI)을 통해 기 제출된 공시 전 대학 자체 공시자료 데이터를 기초로 2019년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적용하며, 자료 검증시에는 공시된 2018 및 2019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활용

2) 공통지원부문 해당부서

가. 정의 : 교육부서 및 연구부서를 함께 지원하는 공통지원부서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부문과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육부문을 동시에 지원하는 공통지원부서

나. 예시부서

-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로써 회계팀, 구매팀, 시설팀, 중앙도서관, 중앙전산원, 중앙기기센터
- 국가R&D 과제와 관련하여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실

다. 분류기준

- 대학 전체 국가R&D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대학의 산학협력단 전담인력으로 발령받은 대학 소속직원(겸직교원 제외)
  - 대학 전체 국가R&D실적이 없으나 민간R&D실적 등이 있는 대학의 대학 파견 산학협력단 전담인력도 공통지원부문으로 분류

- 국가R&D실적을 보유한 대학 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 중 국가 R&D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이 1억원 미만인 지원 부서 인력
  - 국가R&D실적이 없는 대학 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 지원부서 인력은 교육지원부문으로 분류
- 대학 전체 국가R&D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학의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 인력
  - 대학 전체 국가R&D실적 연간 연구비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대학의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 행정 지원인력은 교육지원부문으로 분류
  -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와 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업무 기준으로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 여부 판단
- 국가R&D실적 연구과제수가 5건 이상이고 연간 연구비 총액이 3억원 이상인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행정지원인력(조교 포함), 산학협력단 소속 대학 파견직원
  - 국가R&D실적 연구과제수 혹은 연간 연구비 총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지원부문으로 분류
  - 교양과목 교육을 위한 학부대학 행정지원인력은 전체를 교육지원부문으로 분류
  - ※ 의과대학 소속 XX교실은 최근연도 대학 알리미 공시자료 상 교원소속기준으로 분류된 의과대학으로 합산 공시된 연구비수혜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분화된 자료로 구분하여 분류할 필요 없음

## ■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 참고사항

###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 담당업무〉

- 회계팀 : 대학의 수입 및 지출 등을 관리
- 구매팀 : 대학의 각종 물품계약 및 구매, 검수, 집행 등을 관리
- 시설팀 : 대학의 시설 유지보수 등을 관리(관재업무 포함)
- 중앙도서관 : 대학의 도서관 업무를 수행
- 중앙전산원 : 대학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관리
- 중앙기기센터 : 대학의 연구기기 등 취득·운용(기계공작실 포함)

### 〈참고사항〉

-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는 해당부서 인원의 별도 업무분장을 확인할 필요는 없으나, 명백히 교육지원만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면 동 직원 인건비는 제외
-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별 업무
  - 교무, 인사, 기획, 예산, 홍보, 학사운영, 학생지원, 입학, 총무, 국제교류, 평가 등 업무
  - 총무업무는 교직원 인사, 교육, 후생복지, 노동단체, 각종 행사에 관한 업무로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에서 제외
  - 시설관리업무는 대학회계에서 용역비로 지출됨에 따라 공통지원부문 인정부서에서 제외

3) 교육지원부문 해당부서

- (정의) 연구지원부문 및 공통지원부문 해당부서로 인정되는 부서 이외의 부서

■ 국가R&D실적 판단 사례

(사례)

- ○대학은 교학 행정팀 직원들이 산학협력단 업무를 겸직하며 연구기획, 계약, 관리, 집행, 결산을 수행하고 있으며
  - 지원인력 인건비는 대학 교비 재원으로만 지급
  - 산학협력단 업무 겸직에 따른 수당 및 성과급 등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미지급
  -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간접비 재원으로 지출된 공통지원인력 인건비 없음
  - 산학협력단 자체임용직원은 없음

(원가산출 적용)

- ○대학은 특수성으로 인해 산학협력단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다면
  - 해당 대학소속 직원(겸직인원)의 인건비는 대학 전체의 해당연도 국가R&D실적 연간 연구비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해당 대학소속 직원(겸직인원)의 인건비는 대학 전체의 해당연도 국가R&D실적 연간 연구비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단과대학 및 대학원별 국가R&D 실적 연구과제수가 5건 이상이고 연간 연구비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지원인력을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하나,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육지원부문 인건비로 분류
  - 산학협력단장은 통상 겸직교수가 담당하므로 교원인건비에 해당되어 불인정

(2) 인건비 산출 기준

1) 간접비 산출대상 지원인력인건비

가. 인정범위 : 결산서상 인건비로 회계처리한 금액 인정

- 국·공립대학은 대학회계 재정운영표상 직원인건비, 일용임금, 퇴직급여, 법정 고용부담금 및 교육·연구·학생지도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금액 중 공무원 신분이 아닌 대학회계직원(계약직원 포함)에 대한 인건비
  - 국·공립대학 구성원은 대학 소속 공무원(공무원인 교수, 공무원직원, 공무원조교), 대학회계직원(공무원 신분이 아닌 조교 포함) 및 기타 계약직원(임시직 포함)으로 분류
  - 국립대학회계·재정법에 따라 대학 소속 공무원(공무원인 교수 제외), 대학회계직원 및 기타 계약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도 인건비로 분류
  - 국립대학법인은 법인회계 운영계산서 상 직원인건비로 회계처리한 인건비
- 사립대학은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상 조교인건비 및 직원보수로 회계처리한 인건비
  -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상 교원보수로 분류되는 단과대학 소속 학과, 학부, 의과대학 소속 XX교실 등에서 근무하는 조교 인건비는 인건비 분류기준에 포함

- 산학협력단은 운영계산서상 간접비사업비 중 인력지원비(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로 회계처리한 인건비
  -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에서 간접비사업비 중 기관공통지원경비 및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인건비(퇴직급여 및 법률에 의해 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관련 부담금인 4대보험 해당액 포함)는 인건비 분류기준에서 제외

나. 공통 불인정범위

- 연구과제 참여인력 인건비는 간접비 원가산출대상에서 제외
  - 산학협력단 지원인력 중 결산서상 사업단(ACE사업단 등) 혹은 창업보육센터 직접비로 회계처리된 인건비
  -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의 퇴직급여 및 4대보험 기관부담분 직접비 미계상분을 간접비 재원으로 지급한 경우
  - 연구과제 참여 대학원생 등에게 지급한 장학금
  - 교원(전업강사, 비전업강사,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포함) 인건비
  - 산학협력단 간접비 재원으로 지출한 연구전임교원 및 리서치펠로우에 대한 인건비
- 기타 인건비 중 간접비 원가산출대상에서 제외
  - 산학협력단에 파견된 대학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보직수당 및 겸직수당
  - 학교기업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 연구지원 또는 공통지원부문 해당부서 인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금 또는 명예퇴직수당
  - 국립대학의 경우 대학회계 직원에 대한 퇴직금 부족액을 회계연도말 집행한 인건비

▣ 인건비 인정범위 판단 참고사항

- 대학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에서 연구지원부문 인건비와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인정
- 교수, 원어민강사 등 직접비 성격의 인건비는 간접비 비율 원가산출 대상에서 제외하며, 산학협력단장 등 교원에 대한 보직수당 및 직책수당도 제외
- 산학협력단 인력지원비에서 국책사업 준비 T/F팀의 교수 및 학생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직접비에 해당됨에 따라 공통지원부문 혹은 연구지원부문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음
- 국립대학 대학회계에서 지출된 지원인력 인건비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대학회계직원 및 기타 계약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지원부서 분류기준 판단(수입대체경비 또는 국가및지자체지원금 자원 구분 불필요)
- 사립대학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지원인력 인건비는 해당 지원부서의 연구지원부문 및 공통지원부문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판단(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 자원 구분 불필요)
- 회계연도 중 부서이동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무기간별로 집계하되, 결산일 기준으로 업무 담당자별 인건비를 산출하는 경우에도 허용

## 2) 간접비 산출대상 기타비용

### 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 대학 자체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 경우 인건비로 인정
    -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분류(지원인력 인건비이므로 국가R&D 간접비수익 재원 구분 없음)
    - 국가R&D(중앙정부 연구과제) 간접비수익 재원으로 연구자(교원)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분류
-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국가R&D(중앙정부 연구과제)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민간수탁과제 간접비 재원은 해당되지 않음

### 나. 산학협력보상금

- 지식재산권비용 중 산학협력보상금은 대학 자체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 알리미에 공시된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에 반영된 지원부서 인원에게 지급 시 연구지원부문 인건비 분류
  - 단, 연구자(교원)에게 지급한 산학협력보상금은 제외

## (3) 인건비 확인방법

### 가. 해당부서 구분 확인

- 연구지원부문 및 공통지원부문 해당여부 검토를 위해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에 따라 작성된 연구비 수혜실적 자료 및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 자료 제출 확인
  - 대학 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 지원부서 인건비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 자체 통계기준에 따른 연구비수혜실적을 각 연구과제명과 연간 연구비 내역을 별도 제출 확인
  - 대학 전체,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실 지원부서는 대학 알리미에 공시된 연구비 수혜실적 자료로 판단(대학알리미 공시된 연구과제명과 연간 연구비내역이 포함된 연구비수혜실적 전산자료 제출)

### 나. 인건비 산출 확인

- 인건비 산출 확인 관련 공통사항
  - 교육지원부문에 대한 상세내역 제출 생략 가능
  - 인건비 금액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경리팀의 확인증 등)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검증담당자의 검증 확인절차로 같음하며 별도 자료 미제출
- 인건비 산출 확인을 위한 결산서 활용방안
  - 국공립대학은 대학회계 재정운영표 상 관·항·목 분류에 따른 인건비 등과 부서별 연구지원부문, 교육 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으로 구분한 금액간의 검증 확인(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및 관련 서류 확인

- 사립대학은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상 관·항·목 분류에 따른 직원보수 등과 부서별 연구지원부문, 교육 지원부문, 공통지원부문으로 구분한 금액간의 검증 확인(별지 제2-1호 서식 참조) 및 관련 서류 확인
- 산학협력단 회계의 인건비는 운영계산서 상 간접비사업비 중 인력지원비(인건비 항목)와 차이 발생 시 소명자료 확인

## 회계별 인건비 분류

### 국립대학 재정운영표 상 인건비

- 직원인건비: 공무원직원, 공무원조교, 대학회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일용임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퇴직급여: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시 발생하는 비용
- 법정고용부담금: 법률에 의해 대학이 부담하여야 할 고용관련 부담금(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국립대학회계·재정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교직원(공무원인 교수 제외)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비용)

### 사립대학 재정운영표 상 인건비

- 조교인건비: 유급조교(장학조교는 제외)에게 지급하는 급여·상여금·각종 수당·법정부담금 및 퇴직금
- 직원보수: 직원급여(직원의 정액 급여), 직원상여금, 직원각종수당(정액수당·정근수당·식대보조비 등 직원의 각종 수당), 직원법정부담금(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등), 임시직인건비(임시직 직원의 급여·상여 및 각종 수당), 노임(일용 인부의 노임), 직원퇴직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외의 퇴직금)

###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간접비사업비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인건비: 간접비 재원으로 지급되는 지원인력급여, 지원인력상여금, 지원인력제수당(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지원인력법정부담금(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부담금), 지원인력퇴직급여(퇴직금 지급액 또는 퇴직적립금(퇴직연금)), 일용임금
- 연구개발능률성과금: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금(해당연도 간접비 총액 10% 범위 내에서 계상)

□ **검증사항**

【학교회계 연구지원부문 합계 중 인건비 계】: “2-1-3 재정운영표 및 운영계산서와의 검증” 대학회계 합계 중 연구지원부문과 일치해야 함

【학교회계 공통지원부문 합계 중 인건비 계】: “2-1-3 재정운영표 및 운영계산서와의 검증” 대학회계 합계 중 공통지원부문과 일치해야 함

【학교회계 교육지원부문 합계 중 인건비 계】: “2-1-3 재정운영표 및 운영계산서와의 검증” 대학회계 합계 중 교육지원부문과 일치해야 함

【학교회계 연구지원부문 합계】: 연구지원부문에 해당하는 대학소속 산학협력단 전담인력 소계와 대학 부속연구기관(연구소 등) 소계의 합을 기재

【학교회계 공통지원부문 합계】: 공통지원부문에 해당하는 대학소속 산학협력단 전문인력 소계, 대학 부속연구기관(연구소 등) 소계, 공통지원 인정부서 소계, 단대 및 대학원 등 행정지원 소계의 합을 기재

【교육지원부서】: 학교회계 인건비 중 연구지원부문과 공통지원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인건비를 기재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 **참고사항**

【인건비 대상】: 인건비 산출 시 대학회계 결산서상 인건비로 회계처리한 금액만 인정

관	항	목	법인회계	학교회계		해설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4100 보수	4110 교원보수		○	○	○	
			○	○	○	
		4111 교원급여	×	○	○	교원의 정액급여(인건비성 연구보조비를 포함하되, 정액수당은 제외한다)
		4112 교원상여금	×	○	○	교원의 상여금
		4113 교원각종수당	×	○	○	초과강의료·정액수당·정근수당·식대보조비·학생지도비 등 교원의 각종 수당
		4114 교원법정부담금	×	○	○	교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등
		4115 시간강의료	×	○	○	정규 교육과정의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각종 강의료
		4116				

관	항	목	법인 회계	학교회계		해설
				등록금 회계	비등록금 회계	
4120 직원보수		특별강의료	○	○	○	비정규 교육과정의 강의(강연)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4117 교원퇴직금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외의 퇴직금
		4118 조교인건비	×	○	○	유급조교(장학조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상여금·각종수당·법정부담금 및 퇴직금
		4121 직원급여	○	○	○	직원의 정액 급여
		4122 직원상여금	○	○	○	직원의 상여금
		4123 직원각종수당	○	○	○	정액수당·정근수당·식대보조비 등 직원의 각종 수당
		4124 직원법정부담금	○	○	○	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등
		4125 임시직인건비	○	○	○	임시직 직원의 급여·상여 및 각종 수당
		4126 노임	○	○	○	일용 인부의 노임
		4127 직원퇴직금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외의 퇴직금

(출처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인건비의 부문 구분】:**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지원인력 인건비는 해당 지원인력이 실질적으로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 해당 학과 지원인력이 연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교육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과대학의 국가 R&D 실적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지원부문으로 분류되어야 함. 즉, 연구지원/공통지원/교육지원으로 분류되는 상세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 인원이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지원부문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임

**【국가 R&D 실적 판단】:** 국가 R&D 실적은 단과대학, 연구소 등의 실적을 대학 알리미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마지막 행에는 학교 전체 실적을 입력

- 예시 : 3건/5억원, 7건/13억원 등
- 대학알리미상 「12-가. 연구비수혜 실적」 양식에는 학과 단위로 실적이 공시되고 있으나, 국가 R&D 실적은 각 단과대학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과대학 산하의 학과 단위 실적을 합산하여 「국가 R&D 실적판단」란에 기재하고, 해당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대학알리미 연구비수혜 실적 양식상 “교외연구비 지원\_중앙정부”에 해당되는 과제 및 연구비 실적을 사용하여 집계함
- 자료기준일은 간접비 심사대상 회계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임

- 단과대학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하되, 교육부분만을 전담하는 학과(교양학부, 공대 전문대학인 경우 경영학부 등 전체 대학 명칭 중 예외적인 학과)를 지원하는 행정인력에 대해서는 제외
- 공통지원부문 인건비 중 국가R&D 실적 5건, 3억 이상의 기준은 단과대 및 대학원 행정실 기준임

〈 대학알리미 상 연구비수혜 실적 양식 〉

(단위 : 건, 천원)

기준 연도	단과 대학	학과	전임 교원	연구비 지원												대응자금 (연구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계	교내		교외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외국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교내	교외	교내	교외

(출처: 대학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

**【인건비 재원】:** 인건비 분류기준에 포함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현행 산출기준에서는 재원별 구분(등록금회계 또는 비등록금회계)을 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해당 인원이 연구지원 혹은 공통지원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간편법】:** 대학회계 인원에 대한 공통지원부문 인건비 산출 시 원칙적으로는 개별 인원의 전입/전출도 모두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하지만, 산출의 편의성을 위해 2월 28일자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해당 인원이 연구지원/공통지원/교육지원으로 분류한 후에 연구지원과 공통지원 인력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 그러나, 대학회계 직원의 산단 전담 혹은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연구지원부문 인건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자료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실제 급여금액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함
- 산단 인력도 연말정산자료 등을 통해 간편법으로 산출할 수 없음
- 연말정산자료를 이용하여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를 산출한 경우 “1-1-3 혹은 2-1-3의 운영계산서 혹은 재정운영표와의 검증”은 작성의 편의성을 위해 연구지원부문과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를 산출하고 결산서상 금액에서 차감된 잔액을 교육지원부문 인건비로 기재함

**【대학회계 증빙】:** 대학회계 직원에 대한 업무분장표 및 조직도 등 해당 대학의 직원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 전화번호부 등을 제출하여 대학 인원의 분류 적정성을 검증 받아야 함.

- 다만 대학의 회계전산 파일을 통해 부서별 인건비가 관리되고 검증 가능한 경우는 전화번호부 등을 제출할 필요 없음. 회계전산 파일 상에서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제출 필요함

**【국책사업단】:** 국책사업단 또는 지방비사업단의 정의는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R&D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기간 설치 운영되는 사업단임. 동 정의에 충족하는 사업단 소속 직원이라면 부속연구기관 근무 직원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겸직발령의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실제 업무 분석 등을 고려하여 분류 가능함

**【교원 및 연구원 인건비】:** 교원 및 연구원은 직접비 성격의 인건비 분류대상이므로 연구지원부문에 포함되지 않음

【법정부담금】: 연구지원부문 인건비의 경우 결산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산출하여야 하고, 공통지원부문 인건비는 간편법에 따라 연말정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결산서상 퇴직급여 금액을 기재

【교육·연구·학생지도비】: 공통지원부문으로 분류되는 인원의 경우에는 공무원과 대학회계직원에게 지급된 교육·연구·학생지도비(교연비)는 모두 포함됨. 다만 재원이 대학회계재원이어야 함  
 - 교육·연구·학생지도비와 산학협력보상금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의 란에 기입

【장학금】: 장학금 비목으로 지출된 금액은 전액 불인정대상에 해당됨

□ 오류사항

- 국가 R&D 실적이 10억 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회계 인건비를 연구지원부문에 포함하여 공통지원 부문으로 수정함
- 국가 R&D 실적조건(5건/3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과대학 행정실 인건비를 공통지원부문에 포함하여 이를 교육지원부문으로 수정함
- 공통지원부문의 예시부서에 포함되지 않은 총무과, 인사처, 생활관 등을 공통지원부문에 포함하여 이를 교육지원부문으로 수정함

2-1-2 산학협력단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상세구분	부서	국가 R&D실적 판단	급여	법정부담금	퇴직급여	연구개발능력 성과금 등	인건비 계	
연구지원부문	산학협력단 자체 임용직원	연구기획팀	/						
		연구관리팀	/						
		연구행정전담 인력	/						
		소 계							
	산학협력단 부속연구 기관 (연구소 등)	○○연구소							
		○○연구센터							
		소 계							
	산단회계 연구지원부문 합계								
	공통지원부문	산학협력단 소속 대학 파견직원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소 계									
산학협력단 부속연구 기관 (연구소 등)		○○연구소							
		○○연구센터							
		소 계							
산단회계 공통지원부문 합계									
교육지원부문		교육지원부서	/						
합 계									

※ 참고

- 국가R&D실적 판단은 대학 알리미 공시자료 등 활용하여 연구과제수 및 연구비 총액 기재 (예, 5건/3.5억)
- 부서명은 소속 부서의 최소단위(과, 팀 등)까지 구분하고 반드시 기재하며, 교육지원부문은 일괄기재 가능

□ **검증사항**

【산단회계 연구지원부문 합계 중 인건비 계】: “2-1-3 재정운영표 및 운영계산서와의 검증” 산학협력단회계 합계 중 연구지원부문과 일치해야 함

【산단회계 공통지원부문 합계 중 인건비 계】: “2-1-3 재정운영표 및 운영계산서와의 검증” 산학협력단회계 합계 중 공통지원부문과 일치해야 함

【산단회계 교육지원부문 합계 중 인건비 계】: “2-1-3 재정운영표 및 운영계산서와의 검증” 산학협력단회계 합계 중 교육지원부문과 일치해야 함

【산단회계 연구지원부문 합계】: 연구지원부문에 해당하는 산학협력단 자체임용직원 소계와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 전담인력 소계와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등) 소계의 합을 기재

【산단회계 공통지원부문 합계】: 공통지원부문에 해당하는 산학협력단 소속 대학 파견직원 소계와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등) 소계의 합을 기재

【교육지원부서】: 산단회계 인건비 중 연구지원부문과 공통지원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인건비를 기재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비율(%)】: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시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입력)  
- 예시 : 계산내역 36.568% → 표시방법 36.56%

【인건비 대상】: 인건비 산출 시 결산서상 “Ⅲ.간접비사업비\_1.인력지원비”로 회계처리한 금액만 인정

과 목	해 설
관 항 목	
Ⅲ. 간접비사업비	간접비수익을 재원으로 지출하는 제비용
1. 인력지원비	
1) 인건비	연구지원인력 및 행정지원 전담요원의 인건비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자 및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출처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지침서)

【인건비의 부문 구분】: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지원인력 인건비는 해당 지원인력이 실질적으로 연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 해당 학과 지원인력이 연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교육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과대학의 국가 R&D 실적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지원부문으로 분류되어야 함.

즉, 연구지원/공통지원/교육지원으로 분류되는 상세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 인원이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지원부문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임

【국가 R&D 실적 판단】: 국가 R&D 실적은 단과대학, 연구소 등의 실적을 대학 알리미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마지막 행에는 학교 전체 실적을 입력

- 예시 : 3건/5억원, 7건/13억원 등
- 대학알리미상 「12-가. 연구비수혜 실적」 양식에는 학과 단위로 실적이 공시되고 있으나, 국가 R&D 실적은 각 단과대학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과대학 산하의 학과 단위 실적을 합산하여 「국가 R&D 실적판단」란에 기재하고, 해당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대학알리미 연구비수혜 실적 양식상 “교외연구비 지원\_중앙정부”에 해당되는 과제 및 연구비 실적을 사용하여 집계함
- 자료기준일은 간접비 심사대상 회계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임
- 단과대학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하되, 교육부분만을 전담하는 학과(교양학부, 공대 전문대학인 경우 경영학부 등 전체 대학 명칭 중 예외적인 학과)를 지원하는 행정인력에 대해서는 제외

〈 대학알리미 상 연구비수혜 실적 양식 〉

(단위 : 건, 천원)

기준 연도	단과 대학	학과	전임교원	연구비 지원												대응자금 (연구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계		교내		교외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외국		교내	교외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과제	연구비

(출처: 대학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

- 공통지원부문 인건비 중 국가R&D 실적 5건, 3억 이상의 기준은 단과대 및 대학원 행정실 기준임

【간편법】: 산단 인력은 연말정산자료 등을 통해 간편법으로 산출할 수 없음

【국책사업단】: 국책사업단 또는 지방비사업단의 정의는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R&D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기간 설치 운영되는 사업단임. 동 정의에 충족하는 사업단 소속 직원이라면 부속연구기관 근무 직원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겸직발령의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실제 업무 분석 등을 고려하여 분류 가능함

【교원 및 연구원 인건비】: 교원 및 연구원은 직접비 성격의 인건비 분류대상이므로 연구지원부문에 포함되지 않음

【대학알리미 자료】: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간접비사업비"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알리미에 공시된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에 반영된 인원이 아닌 경우 산단 자체 임용직원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해당 인원의 대학 알리미 공시 자료 등을 참고하여 판단 필요

【법정부담금】: 연구지원부문 인건비의 경우 결산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산출

- 과제 특성상 연구과제 연구원의 법정부담금 지출이 되지 않아 간접비사업비에서 연구과제 연구원의 법정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법정부담금은 불인정범위에 해당됨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결산서상 퇴직급여 금액을 기재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산학협력단에서 국가R&D(중앙정부 연구과제) 간접비수의 재원으로 지급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중 교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1-1-2 서식과 2-1-2 서식에서 산학협력단 부속연구기관(연구소 등)에 “교원지급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 별도 표시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국가R&D(중앙정부 연구과제)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민간수탁과제 간접비 재원은 해당되지 않음
- 교육, 연구, 학생지도비와 산학협력보상금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의 란에 기입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연구소 등)의 범위】:** 산학협력단 조직도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부속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대학알리미에 공시되지 않은 연구소는 부속연구기관(연구소, 연구센터 등)의 범위에서 제외

#### □ 오류사항

- 국가 R&D 실적이 10억 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회계 인건비를 연구지원부문에 포함하여 이를 공동지원부문으로 수정함
- 국가 R&D 실적조건(5건/3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단과대학 행정실 인건비를 공동지원부문에 포함하여 이를 교육지원부문으로 수정함
-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간접비사업비가 아닌 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한 인건비를 연구지원부문에 포함하여 교육지원부문으로 수정함

2-1-3 운영계산서와의 검증

(단위 : 원)

회계구분	관·항 구분	목 구분	연구지원부문	공동지원부문	교육지원부문	계	비고
학교 (교비) 회계	직원보수	직원급여					
		직원상여금					
		직원제수당					
		직원법정부담금					
		임시직인건비					
		노임					
		직원퇴직금					
	조교인건비						
학교(교비)회계 합계							
산학 협력단 회계	간접비사업 인력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력 성과급					
	산학협력단회계 합계						

※ 계정과목 구분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준용

□ 검증사항

【대학회계 합계\_연구지원부문】: “2-1-1 학교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 학교회계 연구지원부문 합계\_인건비 계와 일치해야 함

【대학회계 합계\_공동지원부문】: “2-1-1 학교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 학교회계 공동지원부문 합계\_인건비 계와 일치해야 함

【대학회계 합계\_교육지원부문】: “2-1-1 학교회계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 학교회계 교육지원부문 합계\_인건비 계와 일치해야 함

【대학회계\_직원인건비 계】: 대학회계 운영계산서 상 직원인건비와 일치해야 함

【대학회계\_일용임금 계】: 대학회계 운영계산서 상 일용임금과 일치해야 함

【대학회계\_퇴직급여 계】: 대학회계 운영계산서 상 퇴직급여와 일치해야 함

【대학회계\_법정고용부담금 계】: 대학회계 운영계산서 상 법정고용부담금과 일치해야 함

【대학회계\_교육·연구·학생지도비용 계】: 대학회계 운영계산서 상 교육·연구·학생지도비용과 일치해야 함

【산학협력단회계 합계\_연구지원부문】: “2-1-2 산학협력단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 산단회계 연구지원부문 합계\_인건비 계와 일치해야 함

【산학협력단회계 합계\_공동지원부문】: “2-1-2 산학협력단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 산단회계 공동지원부문 합계\_인건비 계와 일치해야 함

【산학협력단회계 합계\_교육지원부문】: “2-1-2 산학협력단 간접비대상 인건비 산출내역” 산단회계 교육지원부문 합계\_인건비 계와 일치해야 함

【산학협력단 회계\_지원인력인건비 계】: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지원인력인건비와 일치해야 함

【산학협력단 회계\_연구개발능력성과급 계】: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연구개발능력성과급과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2-1-4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현황

(단위 : 명)

소속구분	연구기획	연구관리	산학연계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보육	기타	합계
대학소속 직원							
산단자체 직원							

※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구분은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에 따름

□ 상세지침

【입력내용】: 국가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최근연도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항목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중 자-2. 산학협력단 담당업무별 인력 현황
- 공시시기(자료기준일)은 6월 (당해년도 4.1)

별지 제2-2호 서식

### 연구수익비율 산출내역

- 작성일 : 201X년 월 일
- 작성자 : (인)
- 확인자 : (인)
- 소속기관 : (직인)

#### 2-2-1 연구수익 산출내역

(단위 : 원)

회계구분	계정과목	연구수익 금액	비고
학교회계 (교비회계)	연구기부금 수입		
	학교회계 연구수익 계		
산학협력단 회계	산학협력수익 중 연구수익		
	지원금수익 중 연구수익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연구수익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연구수익		
	(가산) 교육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하단2-2-3 ②㉔ 상세내역 참조
	(차감)연구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하단2-2-3 ①㉔ 상세내역 참조
	(가산) 기타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하단2-2-3 ③㉔ 상세내역 참조
	산학협력단회계 연구수익 계		
연구수익 합계			

#### ■ 관련 산출기준

#### 4 연구수익비율 (6)

#### (3) 사립대학 연구수익비율

##### ● 연구수익

- (정의) 대학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결산서의 운영계산서 상 연구활동과 관련된 수익의 총계
- (인정항목) 대학회계의 연구기부금 수입 및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산학협력수익 중 연구수익, 지원금 수익 중 연구수익,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연구수익 및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연구수익
- (불인정항목) 기타산학협력수익과 기타지원금수익은 연구수익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으로 불인정

※ 산학협력단 결산서상 계정과목별 연구수익 및 교육수익 사업별 상세내역은 전산파일 확인(별지 제2-2호 서식 참조)

□ 검증사항

【(가산) 교육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2-2-3 R&D계수 적용사업 분류 세부산출내역” ②교육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연구수익금액(㉔) 소계와 일치해야 함

【(차감) 연구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2-2-3 R&D계수 적용사업 분류 세부산출내역” ①연구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교육수익금액(㉕) 소계와 일치해야 함

【(가산) 기타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2-2-3 R&D계수 적용사업 분류 세부산출내역” ③학교회계 혹은 기타산학협력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연구수익금액(㉖) 소계와 일치해야 함

【연구수익 합계】: 학교회계(대학/법인회계) 연구수익 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 연구수익 소계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연구기부금 수입】: 대학회계 재정운영표 또는 국립대학법인회계 운영계산서 상 연구기부금 수입으로 계상된 금액을 입력함

【산학협력수익 중 연구수익】: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Ⅰ. 산학협력수익\_1.연구수익’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함

【지원금수익 중 연구수익】: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Ⅱ. 지원금수익\_1.연구수익’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함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연구수익】: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Ⅲ. 간접비수익\_1. 산학협력수익\_1) 산학협력연구수익’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함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연구수익】: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Ⅲ. 간접비수익\_2. 지원금수익\_1) 지원금연구수익’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함

과목	해설
관향	목
Ⅰ. 산학협력수익	
1. 연구수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정부연구수익)과 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산업체연구수익)으로 구분
2. 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등 계약에 의한 교육운영수익
3. 기술이전수익	지식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지식재산권이전수익)과 노하우의 대여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노하우이전수익)으로 구분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설치된 연구 및 실험 실습시설·장비 등의 사용료(설비자산사용료수익)과 토지 및 건물 등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수입(임대료수익)으로 구분
5. 기타산학협력수익	기타의 산학협력사업수익(산업자문 등)
Ⅱ. 지원금수익	
1. 연구수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없는 연구용역수익(정부연구수익)과 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없는 연구용역수익(산업체연구수익)
2. 교육운영수익	교육운영수익 중 산학협력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운영수익
3. 기타지원금수익	기타의 지원금사업수익

과 목	해 설
<b>관 항 목</b>	
Ⅲ. 간접비수익	
1. 산학협력수익	
1) 산학협력연구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중 간접비수익
2) 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 중 간접비수익
3) 기타산학협력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 중 간접비수익
2. 지원금수익	
1) 지원금연구수익	지원금연구수익 중 간접비수익
2) 지원금교육운영수익	지원금교육운영수익 중 간접비수익
3) 기타지원금수익	기타지원금수익 중 간접비수익

(출처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지침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별 해설)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능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 연구기부금수익은 발전기금 등의 전입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대학회계에서 발생하는 계정으로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에서는 연구기부금수익이 발생될 수 없음에 유의

**□ 참고사항**

-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간접비 원가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간접비 원가 산출자료 제출 후에 원가 계산 검증담당자가 검증 확인절차 중 발견된 중대한 결산서상 오류 조치 절차
    - ① 수정 산학협력단 결산서를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의결 및 대학 총장 결재 후 수정 결산서 및 관련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에 보고한 공문 제출 시 인정
    - ② 미수정 산학협력단 결산서를 활용하여 간접비 원가 산출 시에는 간접비산출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적용하며, 중대한 오류로 인한 원가 산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접비 산출불가로 의견 피력 가능

**〈중대한 오류 발생 사례〉**

- 연구수익비율과 연간연구비에 영향을 주는 “지원금수익 중 연구수익 및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금액을 결산서와 다르게 간접비 원가계산 적용 : XX대에서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비 전액을 연구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해당 사업비 중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이 해당 산학협력단을 거쳐 프로젝트 시행 기관에 그대로 이체됨
-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지원금사업비 중 연구비는 5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연간연구비 항목에는 지원금 수익 중 연구수익 금액인 3억원으로 회계처리된 결산서를 이용하여 간접비 원가계산 적용

## (주의사항)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24조(운영계산서 작성기준) ①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수익은 동 수익이 실현된 시기를 기준으로, 비용은 동 비용이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히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 수익과 비용은 발생원천에 따라 대응 표시되어야 되며,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중대하게 어긋나는 경우에는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간접비 원가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음에 유의
- 간접비 원가계산은 원칙적으로 결산서를 기초로 산정되며 결산서상 중대한 오류 판단은 간접비산출 소위원회에서 결정

2-2-2 교육수익 산출내역

(단위 : 원)

회계구분	계정과목	교육수익 금액	비고
학교회계 (교비회계)	입학금수익		
	수업료수익		
	계절학기수강료수익		
	차감) 교내장학금		근로장학금 제외
	학교회계 교육수익 계		
산학협력단 회계	산학협력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지원금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가산) 연구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하단2-2-3 ①㉔ 상세내역 참조
	차감) 교육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하단2-2-3 ②㉔ 상세내역 참조
	가산) 기타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하단2-2-3 ③㉔ 상세내역 참조
	산학협력단회계 교육수익 계		
교육수익 합계			

■ 관련 산출기준

4 연구수익비율 (6)

(3) 사립대학 연구수익비율

● 교육수익

- (정의) 대학(교비)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결산서의 운영계산서 상 교육활동과 관련된 수익의 총계
- (인정항목)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3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상 등록금수입(입학금, 수업료)\*,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별표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상 산학협력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지원금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 및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 수강료수입 중에서 비등록금회계에서 발생하는 단기수강료는 교육수익에 포함하지 않음

- (불인정항목) 대학회계 운영계산서 상 등록금회계가 재원인 교내장학금\*, 교육부대수익(수수료 등)은 교육수익 산출 시 제외

\* 교내장학금 산출 시 근로장학금은 차감하되, 차감할 근로장학금 금액을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장학금 수혜 현황' 중 교내-근로장학금 금액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금액 산출도 허용

## ▣ 대학의 교육활동수익 구분

### 사립대학의 교육활동수익

- 등록금수입(입학금): 대학/대학원 신입생(편입생 포함)으로부터 받는 입학금
- 등록금수입(수업료): 대학생/대학원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계절학기 수업료 포함)
- 단기수강료: 특별강좌·평생교육강좌개설 등의 단기교육수강료(계절학기 수업료 제외)

#### □ 검증사항

【(가산) 연구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2-2-3 R&D계수 적용사업 분류 세부산출내역” ①연구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교육수익금액(㉔) 소계와 일치해야 함

【(차감) 교육수익 포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연구수익(R&D계수) 해당액】: “2-2-3 R&D계수 적용사업 분류 세부산출내역” ②교육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연구수익금액(㉓) 소계와 일치해야 함

【(가산) 기타 R&D계수 적용사업 중 교육수익(비R&D계수) 해당액】: “2-2-3 R&D계수 적용사업 분류 세부산출내역” ③학교회계 혹은 기타산학협력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교육수익금액(㉔) 소계와 일치해야 함

【교육수익 합계】: 학교회계(대학/법인회계) 교육수익 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 교육수익 소계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입학금수익】: 학교(교비)회계 운영계산서 상 '5100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_5111 학부입학금'과 '5100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_5112 대학원입학금'의 합을 입력함

【수업료수익】: 학교(교비)회계 운영계산서 상 '5100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_5113 학부수업료'와 '5100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_5114 대학원수업료'의 합을 입력함

【계절학기수강료수익】: 사립대학의 경우 계절학기 수업료를 학부수업료와 대학원수업료에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별도 구분하여 입력을 생략할 수 있음

- 비등록금회계에서 발생하는 단기수강료는 교육수익에 포함하지 않음에 유의



【산학협력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Ⅰ.산학협력수익\_2.교육운영수익’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함

【지원금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Ⅱ.지원금수익\_2.교육운영수익’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함

【간접비수익 중 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Ⅲ.간접비수익\_1.산학협력수익\_2)산학협력 교육운영수익’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함

【간접비수익 중 지원금 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상 ‘Ⅲ.간접비수익\_2.지원금수익\_2)지원금교육운영 수익’ 결산서상 금액을 입력함

과 목	해 설
관 향	목
Ⅰ. 산학협력수익	
1. 연구수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정부연구수익)과 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수익(산업체연구수익)으로 구분
2. 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등 계약에 의한 교육운영수익
3. 기술이전수익	지식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지식재산권이전수익)과 노하우의 대여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노하우이전수익)으로 구분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설치된 연구 및 실험 실습시설·장비 등의 사용료(설비자산사용료수익)과 토지 및 건물 등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 수입(임대료수익)으로 구분
5. 기타산학협력수익	기타의 산학협력사업수익(산업자문 등)
Ⅱ. 지원금수익	
1. 연구수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없는 연구용역수익(정부연구수익)과 산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성이 없는 연구용역수익(산업체연구수익)
2. 교육운영수익	교육운영수익 중 산학협력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운영수익
3. 기타지원금수익	기타의 지원금사업수익
Ⅲ. 간접비수익	
1. 산학협력수익	
1) 산학협력연구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중 간접비수익
2) 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	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 중 간접비수익
3) 기타산학협력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 중 간접비수익
2. 지원금수익	
1) 지원금연구수익	지원금연구수익 중 간접비수익
2) 지원금교육운영수익	지원금교육운영수익 중 간접비수익
3) 기타지원금수익	기타지원금수익 중 간접비수익

(출처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지침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별 해설)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능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 단기수강료 수입을 계절학기수강료수입으로 입력 오류 빈번하게 발생
- 교내장학금은 차감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차감하지 않고 가산항목으로 간접비 원가산출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수식 입력 등에 주의
- 근로장학금은 교내장학금 항목의 구성요소이므로 전체 교내장학금에서 근로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이 (차감)교내 장학금인데 가산하는 오류도 빈번하게 발생
- 교내장학금에 대한 금액 산정 시 대학알리미 상으로 분류된 본교, 분교 등 세분화된 분류에 따라 분산된 공시 금액을 합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교 수치만 입력하는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

□ 참고사항

- Q. 교비로 지급된 장학금액 입력 시 최근연도 공시된 수치[예를 들어 2017년 8월 간접비 원가산출 시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수치]를 이용해도 되는지 여부(대학알리미 공시는 8월 말 이후이며 장학재단 입력자료 등의 수정 가능)
- A. 교육수익 산출 시 차감되는 교내장학금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장학금 수혜 현황' 중 교내장학금에서 근로장학금을 차감한 금액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금액 산출도 허용됨.  
또한 대학알리미에 공시되는 자료는 8월말 기준으로 공시되나, 대학알리미 공시 전 대학 측에서 사전적인 자료 취합은 상반기 중에 이루어짐에 따라 대학 자체적인 사전적 수치를 이용하시고 검증 시에만 대학알리미 자료를 통해 확인 예정

2-2-3 R&D계수 적용사업 분류 세부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R&D계수 적용사업	㉠연구/교육 수익금액	㉢R&D 계수	㉡연구 수익금액 (㉠*㉢)	㉣교육 수익금액 (㉠*(1-㉢))	
①연구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BK21플러스사업		50%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		50%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0%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		0%			
	지방대학육성사업		0%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25%			
	소 계					
②교육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BK21플러스사업		50%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		50%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0%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		0%			
	지방대학육성사업		0%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25%			
	소 계					
③학교회계 혹은 기타산학협력 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BK21플러스사업		50%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		50%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0%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		0%			
	지방대학육성사업		0%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25%			
	소 계					

■ 관련 산출기준

(4) R&D계수 적용사업의 연구수익 및 교육수익 계상기준(국·사립대학 공통)

- (R&D계수 적용사업 예시) BK21플러스사업(0.5),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0.5),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0.5),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0.5), 지방대학육성사업(0.5),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0.25)

※ 괄호는 사업별 R&D계수이나 간접비수익이 전혀 없는 대상 사업의 경우 0%로 적용됨

- R&D계수 적용사업이란 사업특성상 연구사업과 교육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으로써 기획재정부 예산분류 R&D계수를 활용하여 R&D계수를 적용한 연구사업과 비R&D계수를 적용한 교육사업으로 구분 반영
- 단, R&D계수 적용사업 중 간접비수익이 전혀 없는 대상 사업은 교육수익으로 분류하며, 상기 예시된 사업 이외의 인력양성사업(HRD)는 교육수익 분류

(연구/교육수익 산정) 사업별 R&D계수에 따라 연구수익과 교육수익에 각각 반영

- 대학별 교육수익 또는 연구수익에 반영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을 교육수익 또는 연구수익에서 제외하고 R&D 계수에 따라 재분배

※ (예시) R&D계수가 0.5인 사업은 총 연구비 중 연구수익 50%, 교육수익 50%로 각각 반영하고, 0.25인 사업은 연구수익 25% 반영

- 대학회계 재정운영표 또는 운영계산서에 반영된 R&D계수 적용사업 관련 수익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을 R&D계수에 따라 교육수익 및 연구수익에 재분배
- 산학협력단회계 운영계산서에서 연구수익 또는 교육운영수익 외의 수익 계정과목(예: 기타산학협력수익 등)에 반영된 R&D계수 적용사업 관련 수익이 있는 경우 R&D계수에 따라 교육수익 및 연구수익에 재분배

■ (적용 사례 예시) 산학협력고도화지원사업 (R&D계수 0.5) ■

- 1) 전체금액을 연구수익에 계상했을 경우  
교육수익 해당액(100%×50%)을 연구수익에서 제외하고 교육수익에 포함
- 2) 전체금액을 교육수익에 계상했을 경우  
연구수익 해당액(100%×50%)을 교육수익에서 제외하고 연구수익에 포함
- 3) 연구수익(40%)과 교육수익(60%)에 동시 계상했을 경우
  - 연구수익에서 교육수익 해당액(20%=40%×50%)을 제외하고 교육수익에 포함
  - 교육수익에서 연구수익 해당액(30%=60%×50%)을 제외하고 연구수익에 포함
- 4) 전체금액을 대학회계 운영계산서 반영 혹은 산학협력단회계 운영계산서에서 연구수익 또는 교육운영수익 외의 수익 계정과목(예: 기타산학협력수익 등)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연구수익에서 연구수익 해당액(100%×50%)을 연구수익에 포함
  - 교육수익에서 교육수익 해당액(100%×50%)을 교육수익에 포함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연구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소계】: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산학협력수익 중 연구수익 및 지원금 수익 중 연구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수익금액을 입력함

【교육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소계】: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산학협력수익 중 교육운영수익 및 지원금수익 중 교육운영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수익금액을 입력함

【학교회계 혹은 기타산학협력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소계】: 대학회계 재정운용표 혹은 법인 회계 운영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수익 금액을 입력하고,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 기타산학협력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 수익금액을 입력함

【R&D계수 적용사업 중 간접비수익이 전혀 없는 대상 사업】: 교육수익으로 분류

사업명	근거규정
□ 사회수요맞춤형인재양성사업	
-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WE-UP)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5조 (간접비 계상 불가)
-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사업비 관리 및 운영지침 (간접비 별도 계상 불가)
-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PRIME)	PRIME 사업 사업비 집행 기준 6조 (간접비 편성 불가)
-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CK- II)	대학 특성화사업 사업비 집행 기준 6. 사업비 지원(간접비 편성 불가)
□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	
-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 FAQ(간접비 사업편성 불가)
□ 지방대학육성사업	
-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 I)	대학 특성화사업 사업비 집행 기준 6. 사업비 지원 (간접비 편성 불가)
-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대학 특성화사업 사업비 집행 기준 6. 사업비 지원 (간접비 편성 불가)

(주의)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SCK)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33조 1항에 따라 간접비 계상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간접비수익이 전혀 없는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간접비 계상이 없는 것이 입증될 경우 교육수익으로 분류 가능

※ 간접비 비율 산출양식 조정방법 : “2-2-3 R&D계수 적용사업 분류 세부산출내역”에서 ⑥R&D계수를 0%로 조정하여 해당 사업의 수익금액이 교육수익금액으로만 분류되도록 조정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 학교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R&D계수 적용사업을 누락하여 간접비 원가 계산 사례 빈번

□ 참고사항

- R&D계수 적용사업은 산출기준에서 언급한 사업만 조정되며 HRD사업(교육관련 사업)은 교육수익으로 분류가 원칙임. 결산서상 금액 중 연구수익에 HRD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상 금액이라 하더라도 검증과정에서 재분류될 수 있음

**2-2-4 연구수의 세부산출내역(결산서상 계정과목별 연구수의 상세내역 기재)**

(1) 산학협력 연구수익 및 교육운영수익 명세

(단위 : 원)

회계계정과목	교부처	내역	수익금액	당기현금수령액	비고
합 계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별지 제4호의1서식]에 따른 산학협력 연구 및 교육운영수익 명세서 기재

(2) 지원금 수익 명세

(단위 : 원)

회계계정과목	교부처	내역	수익금액	당기현금수령액	비고
합 계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지원금수익 명세서 기재

(3) 간접비 수익 명세

(단위 : 원)

회계계정과목	교부처	내역	수익금액	비고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합 계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간접비수익 명세서 기재

□ 상세지침

【금액단위】: 산출금액은 원칙적으로 원단위로 표시

【결산서상 계정과목별 연구수익 상세내역 기재】: 산학협력수익 중 연구수익, 교육운영수익 및 지원금수익 중 연구수익, 교육운영수익, 기타지원금수익은 결산서 작성 시 각각 [별지 제4호의1서식] 산학협력 연구 및 교육운영 수익명세서 및 [별지 제4호의3서식] 지원금수익명세서를 교부처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교부처가 중앙정부기관 및 산하 기관일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기관이 경우에는 ‘지자체’, 중소기업, 대기업 등 기업을 경우에는 ‘산업체’, 민간재단·협회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일 경우에는 ‘기타’로 기재

[별지 제4호의1서식]

산학협력 연구 및 교육운영 수익명세서

(단위: 원)

과목	교부처	내역	금액	당기현금수령액	비고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과목은 운영계산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교부처는 산업체, 국가, 지자체, 기타로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기재한다.
  - 민간재단·협회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일 경우에는 기타로 기재한다.
3. 내역은 사업명을 간략히 기재한다.
4.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출처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지침)

[별지 제4호의3서식]

지원금수익명세서

(단위: 원)

과목	교부처	내역	금액	당기현금수령액	비고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과목은 운영계산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교부처는 산업체, 국가, 지자체, 기타로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기재한다.
  - 민간재단·협회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일 경우에는 기타로 기재한다.
3. 내역은 지원금 사업명을 간략히 기재한다.
4.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출처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지침)

[별지 제4호의5서식]

**간접비수익명세서**

(단위: 원)

과목	교부처	내역	금액	비고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합계				

※ 기재상의 주의

1. 과목은 운영계산서에 기재한 과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교부처는 산업체, 국가, 지자체, 기타로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기재한다.
  - 민간재단·협회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일 경우에는 기타로 기재한다.
3. 내역은 사업명을 간략히 기재한다.
4. 각 대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출처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지침)

□ 오류사례

- 엑셀 값 복사 등 양식 상호간의 연결기능 삭제로 인해 계산검증 불가능한 경우 발생
- 검증사항 미숙지로 인해 양식 표간 연결 불능 발생
- 명세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고 간편법에 따라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에 따라 동 명세서에 대한 충실한 작성이 요구됨

□ 참고사항

- Q. 2-2호 서식 "연구수익 세부 산출내역"에서 당기현금수령액이 결산서 명세서 상 미기재된 경우
- A. 2-2-4호 서식은 작성의 편의를 위해 결산서상 계정과목별 상세내역을 참고한 것으로 만약 산학협력단의 결산서상 금액이 2-2-4 서식과 상이한 경우에는 동 서식에 맞도록 명세서를 재작성하여 제출 필요하며, 당기현금수령액은 해당 과제에서 당해년도에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말하며, 현금흐름표 상 금액과 일치해야 함